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FTA TRADE REPORT

Vol.03 September 2016

FTA 무역 리포트

FTA TRADE REPORT

Vol.03 September 2016

FTA 무역 리포트

CONTENTS

FTA FOCUS

- 006 자동차산업의 FTA 활용 확대 방안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FTA 최근 동향

- 012 관세청 FTA 동향
038 우리나라 FTA 동향
052 해외 FTA 동향
056 한-이스라엘 FTA 미리보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060 국제원산지정보원 제8회 FTA 전문가 포럼

FTA ANALYSIS

- 064 추석 성수품의 FTA 수입 동향과 시사점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094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권민경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FTA EXPERT

- 114 한-남미 3개국(칠레,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 FTA 의미와
체결국 거시경제 운영 현황과 변화 전망: 2015년-2016년을 중심으로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124 [한-콜롬비아 FTA 발효 기념] 중남미 경제환경 분석과 한-콜롬비아 FTA 시사점
오성주 포스코 경영연구원 글로벌 연구센터 수석연구원
131 FTA를 활용한 기계산업의 중남미지역 진출 확대
박성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진흥본부/통상팀 과장

FTA와 품목분류

- 156 HS 2017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육수진 사무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임교수



	FTA 활용 성공사례
182	누적기준 활용 모델
188	한-중 FTA 활용 모델 I
194	한-중 FTA 활용 모델 II
201	2016 FTA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208	자동차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원산지 관리사 정익근 제17회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210	FTA 전문가로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 원산지 관리사 이창엽 울산세관 관세행정관
212	새벽과 주말시간을 활용해 합격한 원산지 관리사 김덕중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통관팀장
	활용하기 쉬운 FTA-PASS
216	FTA-PASS 둘러보기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100% 활용하기
220	콜롬비아 통상환경 (개정된 관세법을 중심으로) Sandra Mora Pardo&Associates(Colombia) 개인 컨설턴트
	FTA 지도
230	지도로 보는 2016 상반기 일반수출입실적(1-6월)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FOCUS

자동차산업의 FTA 활용 확대 방안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FTA FOCUS]

자동차산업의 FTA 활용 확대 방안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우리나라는 OECD국 중 FTA를 가장 활발하게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미국, EU, 중국, ASEAN 등 거대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은 자동차 수출의 76%가 이들 FTA 체결국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경제영토가 그만큼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영토의 확대가 바로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런데 FTA는 결국 경쟁력 여하에 따라 상대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상당한 효과의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이다.

특히 자동차 생산국과의 FTA는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와의 FTA는 수출보다 수입증가에 보다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과의 FTA는 2012년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관세가 즉시 절반(8%→4%)으로 인하되어 당해 연도 미국산 승용차 수입이 98.0% 증가하였고 2015년까지 248.7% 늘었다. 국산 승용차의 수출도 같은 기간 101% 늘어났지만 관세(2.5%)철폐가 2016년 이루어져서 그 증가분은 FTA 효과라고는 볼 수 없다.

EU와의 FTA는 2011년 발효되면서 양측이 동일한 기간(3-5년)에 걸쳐 승용차 관세(한국 8%, EU 10%)가 철폐되었지만 우리의 승용차 수출은 지난 5년간 47.9% 증가한 반면, 수입은 300.7%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EU와의 자동차 교역은 2014년 8월을 기점으로 무역역조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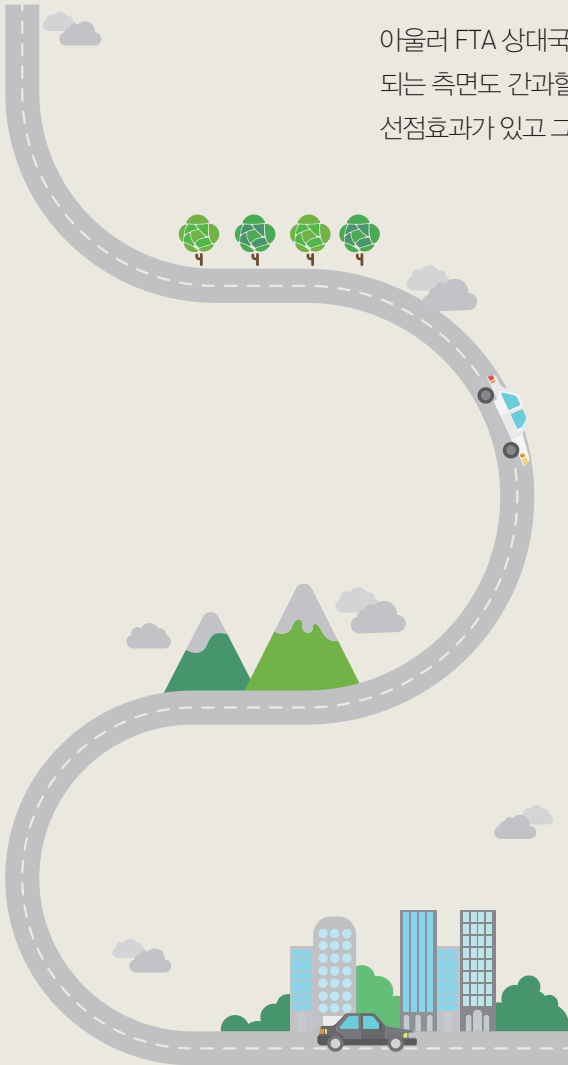
이와 달리, 자동차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일방적인 수혜가 가능하였다. 칠레, EFTA, 페루,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등은 자국 자동차산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율 인하에 따라 수출증대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최근 이들 국가로의 수출감소는 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라고 하겠다.

반면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을 높일 경우 FTA 효과는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ASEAN의 경우 일부 국가(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였지만 최대 125%에 달하는 내국세를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과하면서 관세인하를 무색케 하였다.

아울러 FTA 상대국이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FTA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FTA는 경쟁국 보다 앞서서 체결함으로써 시장 선점효과가 있고 그 효과는 경쟁국이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할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바로 뒤이어 FTA를 체결하고 있다.

자동차업계가 희망하는 향후 FTA 추진 대상국은 남미와 아프리카의 중소규모 자동차 수요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관세율(27~135%)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다, 일본업체가 현지생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고 EU는 이들과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의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 발효된 FTA 중 자동차부문의 개방도가 매우 낮은 인도, 중국 및 일부 ASEAN 개별국가에 대해서는 FTA 협정내용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멕시코, GCC 등과는 중단된 FTA 협상을 조속 재개하여 우리의 수출확대 기회를 더욱 넓혀야 하겠다.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최근 동향

01. 관세청 FTA 동향
02. 우리나라 FTA 동향
03. 해외 FTA 동향
04. 한-이스라엘 FTA 미리보기
05. 국제원산지정보원 제8회 FTA 전문가 포럼

01

[FTA 최근동향]

관세청 FTA 동향



FTA활용과 품목분류, 실무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으세요 (2016.06.17.)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과 함께 6월 24일 오후 2시,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실무자,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세번'(이하 'HS')을 정하는 행위로서, 이번 설명회는 수출물품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인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 강사로는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분야 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인 김성채 관세행정관을 비롯하여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업무 담당자 등 실무 전문가들이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년부터 적용될 HS관련 주요 개정사항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제도, 시스템 활용방법 등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우선,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소개되었다.

또한, 품목분류 국내외 사례 등 정보 활용을 위한 '세계 HS정보시스템' 활용 방법과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법도 안내되었다.

설명회 후에는 사전에 신청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분류와 FTA활용에 대한 맞춤형 현장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에는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 '원산지조사(검증대비)', 'FTA 활용'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세관직원이 배치되었다.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업들의 품목분류와 FTA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인천 등 주요 세관에서 현장 상담을 겸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잡한 중국 관세율,
한눈에 확인하세요!
(2016.06.21.)**

FTA세율? ITA II 세율?
어떻게 유리한지 '중국 관세율 일람표'에서 확인

관세청은 6월 21일 여기저기 흩어져 제공되던 중국 관세율 정보를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관세율 일람표'를 제작해 공개했다.

지난해 타결된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이하 ITA II) * 이 발효되면,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내에 완전 철폐된다.

※ 발효일은 7월 1일 예측되고 있으나 중국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유동적임

ITA II가 발효되면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내에 완전 철폐되나, 중국 수입시장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기대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복잡한 중국 관세율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 정보기술협정(ITA): 세계무역기구(WTO) 주도로 정보통신제품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정(訖년 ITA I 발효)

→ ITA II 타결(2015년)로 HS 6단위 기준 총 201개 품목 관세 즉시철폐 또는 최장 9년간 균등 철폐

한국산 수입물품에 적용 가능한 중국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MFN)세율·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세율·잠정세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세율이고, 여기에 ITA II 세율이 추가되면, 이 가운데 시기별 최저세율이 무엇이고, 적용가능한 최저세율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세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하단 '적용 세율'참조)

실제 관세청과 세관에는 앞으로 적용될 중국 관세율과 유리한 세율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하단 '문의 사례'참조)

일람표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5년차이며, 정보기술협정(ITA) 발효 4년차인 2019년까지의 세율 비교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 표를 전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하여 민원상담에 활용토록 하고,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도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II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반면, 한-중 FTA와 APTA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특혜를 볼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사례1]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C기업은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았으나, 세관직원과의 상담 결과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낮은 FTA 세율(13%)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울상이었다.

- 하지만 FTA보다 더 낮은 정보기술협정(ITA II) 세율(11.3%)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ITA II 세율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따질 필요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는 세관 직원의 안내에 안심했다.

[문의사례2]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K기업은 ITA II 가 7월 1일에 발효된다는 소식에 다양한 중국의 수입관세율 중 어떤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청에 자문을 요청했다.

- 관세청은 편광판의 경우 시기별로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주문했다.
-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 II 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 II 세율(4.0%)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 적용 세율

- 최혜국대우(MFN) 세율: WTO 회원국 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율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따른 관세율
- 잠정세율: 중국에서 787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적용하는 관세율

「중국 관세율 일람표」

【예시】 주요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율

중국측 HS CODE	품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MFN	APTA (1)	APTA (2)	잠정 세율	잠정 세율 [EX]	FTA_2 [16.1~]	FTA_3 [17.1~]
85272100	카스테레오	15.0					13.0	12.0
84145990	기체펌프	8.0	7.2	5.2			4.8	3.2
90012000	편광판	8.0	7.6	7.6	6.0	EX	6.4	5.6

중국측 HS CODE	품명	⑧	⑨	⑩	⑪	⑫	⑬	⑭
		FTA_4 [18.1~]	FTA_5 [19.1~]	ITA_1 [16.7 예정]	ITA [EX]	ITA_2 [17.7~]	ITA_3 [18.7~]	ITA_4 [19.7~]
85272100	카스테레오	11.0	10.0	11.3	EX	7.5	3.8	0.0
84145990	기체펌프	1.6	0.0	6.7	EX	5.3	4.0	2.7
90012000	편광판	4.8	4.0	6.7		5.3	4.0	2.7

※ ①,②,④,⑥번은 현재 적용 세율

① 최혜국대우 세율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따른 세율

③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제4라운드 타결에 따른 세율(발효시 적용)

④ 중국에서 787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적용하는 세율

⑤ 특정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잠정세율 적용

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세율(발효 2년차 세율)

⑦~⑨ 발효 연차별 FTA 세율(적용 예정)

⑩ '정보기술협정(ITA)'세율(7월 1일 발효시 적용 예정)

⑪ 특정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ITA세율 적용

⑫~⑭ 발효 연차별 ITA 세율(7월 1일 발효시 적용 예정)

원산지인증수출자, 한-중 자유무역협 정 수출이 빨라진다 (2016.06.23.)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이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 수는 올해 5월 기준 1만 개를 넘어섰고, 올해 1월~5월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 지정 기업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4배 증가(408개 → 987개) 했다.

이는 한-중 FTA 발효 2년차를 맞이하면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 업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 인증수출자 지정업체 987사 중 한-중 FTA와 관련된 업체는 886사 (89.8%)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다.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인증수출자 혜택은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방식(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채택한 협정에 적용되며,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이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한-EFTA의 경우는 수출자 서명 생략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신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FTA 활용 컨설팅·교육 등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인증수출자 인증 외에 FTA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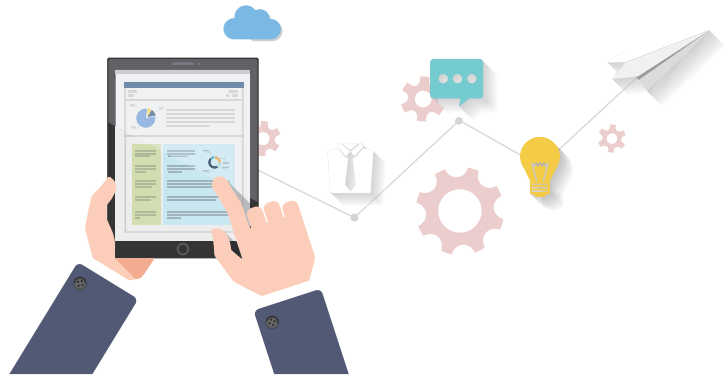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소재지: 인천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또한, 인증수출자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을 통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 · 관련 교재 등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협정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비교

협정	인증前	인증後
한·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의 서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쉽고·빠르게 (2016.07.01.)

정부 3.0 실현을 위한 '원산지 전자자료교환 시스템(EODES)' 운영

관세청은 한-중 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을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정관세 신청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O) 자료를 7월 1일부터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해,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FTA 수입심사 시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중국: 질검총국, 무역촉진위원회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12월부터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양국 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전면 생략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FTA 통관 애로의 원천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중국내 물류비용이 감소된다.

한-중 간 지리적 인접성 및 중국내 느린 특송화물 배송체계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해 통관이 지체되거나 불필요한 창고 보관료를 지출할 수 있었으나, 양국 간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이 전면 생략되는 12월부터는 화물 도착 즉시 FTA 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원산지 심사도 간소화된다.

중국해관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왔으나, 7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 자료가 사전에 교환되면 원산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원산지 검증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중국 측 원산지 검증이 대부분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확인하고 있어, 전자적으로 자료가 교환되면 검증 요청이 감소하여 수출기업의 검증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 이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 신고인은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관세청 공고 2016-49호)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다른 협정 신청서와 비교해 수입신고내역과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상호 연계하는 병지(丙紙)가 추가되었다.

병지는 원산지증명서별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상대국 세관당국으로 전송하고, 원산지증명서 사용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중점과제로 추진되어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통해 조만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도 한-중 간 공유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개요

1. EODE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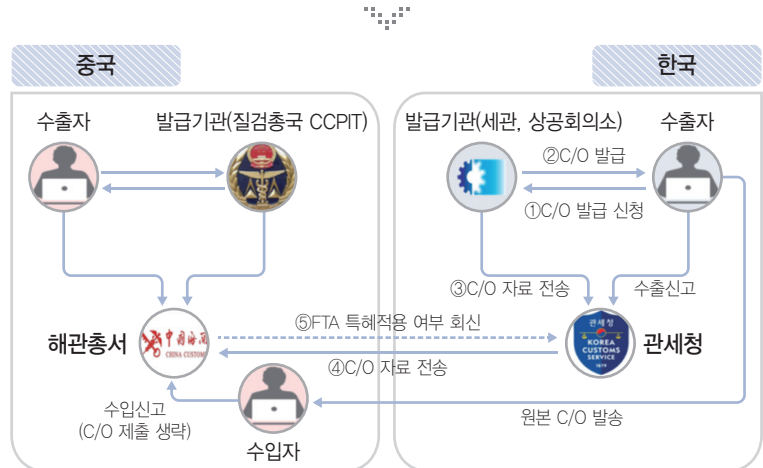
-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입국 FTA 특혜신청시 C/O 제출면제 및 신속한 FTA심사 제공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한-중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C/O) 발급내역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 ** 한-중 FTA 협정 (제3.27조 전자적 원산지 정보시스템) :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약정에 따른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협정 이행전 개발토록 노력한다'

2. 원산지 자료교환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원산지 증명정보 송부	원산지 증명정보 ⇔ 수출신고 내역 대사	원산지 증명 정보 수입국 세관 전송	원산지 증명정보 ⇔ 특혜관세 신청내역 대사	특혜관세 적용내역 수출국 세관 피드백
발급기관 ⇒ 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 ⇒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 수출국 세관



3. 기대효과

- (기업) 우리 수출물품의 물류비용 및 통관소요시간 절감
- (정부) 부정무역 방지 및 C/O 심사 행정비용 절감

**EU 수출기업, 원산지
인증번호 무단사용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2016.07.05.)**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의 제3국 기업 무단사용
사례 늘어

“어? 우리회사 인증수출자 번호가 왜 여기에 써있죠?”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 A는 최근 “프랑스 세관이 검증을 요청했다.”라며 한국 세관이 보여준 원산지증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제3국에 있는 B기업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A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관세청은 최근 유럽연합(이하 EU) 회원국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증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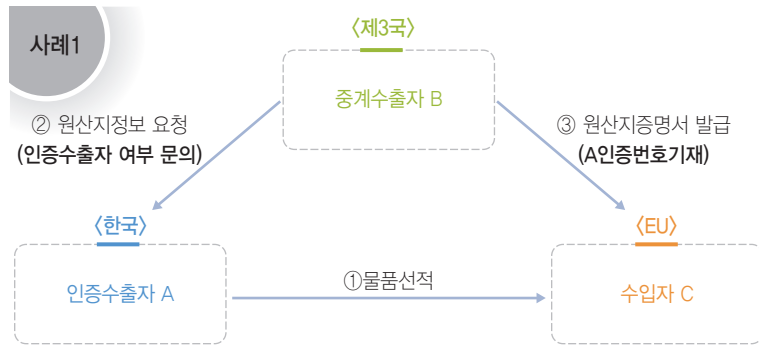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되었다고 판정된 이유는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르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에 소재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를 대리하여 발급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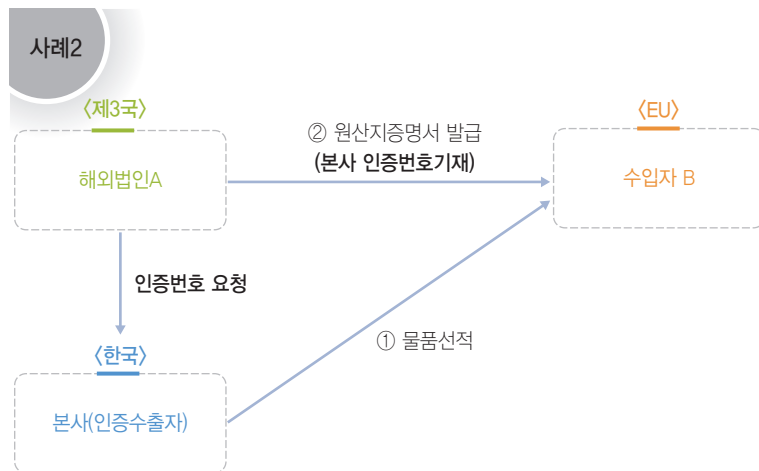
* 인증수출자: 관계당국(세관 등)에 의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본인의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르면, 제3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해외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확인된 부적정 발급 유형은 A사의 사례와 같이 제3국 중계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었다.(사례1)



또한, 국내기업의 제3국 소재 해외법인이 본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사례(사례2)도 다수 확인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적정 발급사례에 우리나라 인증수출기업의 잘못은 없지만, 계약상대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배제되고, 우범업체로 관리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증수출기업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지는 것이 우려된다.”라며 “인증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번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증수출기업은 중계수출자 등이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작성 권한은 인증수출기업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밝혀 인증수출자번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해외법인을 운영할 경우 해외법인 명의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도 생산자 등 다른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에도 공익관세사
적극 이용해 주세요
(2016.07.08.)**

정부 3.0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 운영하는
공익관세사 활약 눈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올해 초부터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운영 중인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이 맹활약 중이다.

한국관세사회 소속인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중소기업에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익관세사들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단계마다 원산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제조업체도 원산지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자금의 한계로 전문인력 채용·증빙서류 보관·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원산지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에서 활동중인 공익관세사 C씨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C씨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한-중 FTA를 활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해, 5년간 약 5억 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받도록 했다.

사례 요약

- 인천시에 위치한 A사는 유아용 신발, 모자 양말, 의류를 국내 제조사인 B사로부터 납품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영세 중소기업임.
- A사의 FTA활용을 위해서는 B사의 원산지증빙서류 제공이 필수적이었으나, B사는 원산지확인·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 문제 등으로 A사에 원산지증빙서류 제공을 꺼리는 상황
- A사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 세관직원과 공익관세사가 조사인 B사를 직접 방문하여 ① FTA 제도 및 혜택을 설명하고, ② 제조사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검증 대비 증빙자료 보관 방법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 보급·사용교육 등에 대해 종합상담을 해주어 B사의 협조를 이끌어 냄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실현방안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관세사 제도를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공익관세사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상반기 우수 공익관세사 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 ⇄ 문의처]



주요 지역「YES FTA 차이나센터」문의처

세관명	부서명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4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4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52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3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5
관세평가분류원 (Quick-HS 차이나센터)	품목분류1과	042-714-7535

※ 지역별 자세한 문의처는 '차이나-Info'(http://china-info.customs.go.kr) ⇒ Q&A ⇒ YES FTA 차이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16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우수직원
선정」
(2016.07.13.)**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우수직원 선정

관세청은 7월 1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2016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분야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은 일선세관의 원산지검증 우수직원에게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원산지검증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FTA특혜 부당적용, 원산지세탁을 위한 우회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예방 하기 위해 이루어 졌으며 2014년 상반기부터 실시해왔다.

이날 시상에서는 우수상 2팀과 우수직원 3명이 선정 되었으며, 최우수팀에는 해외 현지조사를 통한 원산지기준 불충족업체 적발에 공이 큰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과 4계(팀장 김지영)이 선정되었고, 우수팀에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정특혜업체를 적발한 평택세관 통과지원과 자유무역협정계(팀장 이병주)가 선정되었다.

개인 최우수상은 보세건설장 분할반입 부정특혜적용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고재연 관세행정관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부산세관 이경열 관세행정관과 서울세관 박현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를 악용하려는 원산지조작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 방지를 통해 우리 수출물품의 대외신인도를 높임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원산지 검증 업무의 중요성 및 시상식 개최 배경

- 2011년 관세청 원산지검증 조직이 신설된 이래 원산지검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 발효 등 FTA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원산지검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선세관 직원의 검증능력 향상이 요구됨.
- 특히, FTA 원산지검증 업무는 방대한 국제협정의 숙지, 품목분류의 이해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여타 관세업무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아 원산지검증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산지검증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직원의 검증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됨.
- 이러한 원산지검증을 통해 관세청은 지난해 FTA 불법특혜를 받은 업체를 적발하여 57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52개 FTA 체결국과
이행협력체제
구축 추진
(2016.07.14.)**

**세관당국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장애로사항
신속 해결 기대**

관세청은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2016.7.8 개최) 의결을 거쳐 세관당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5개 협정, 총 52개국과 FTA를 발효 중인데, “이제 중요한 과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유일호 경제부총리, 7.8. 대경장회의시)이기 때문이다.

실제 FTA가 집행되는 현장을 보면, 통관단계에서의 규정 미숙지 및 해석차이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과도한 서류요청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현장시정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한-중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2015.10.31)를 기본 모델로 하여, 세 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구축(7.1시행), 협력관 파견(천진·대련), 정기적 이행협력 회의 개최 등 발효 초기 이행 및 활용관련 애로사항 해소 성과

기본 방향

- ① 포괄적 이행협력 추진
 - 원산지정보 교환, 현지세관·기업 역량강화 등 협력사안 다각화
- ② 협력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 우선 추진
 - 교역규모, 비관세·통관애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③ FTA내 공식 협력체제와의 연계 강화
 - 협정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관세위 등 이행위 역할 보완

올 하반기부터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터키·태국 등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을 신규 추진하는 동시에 인니·말련·베트남과는 기 체결 양해각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양해각서 기대효과와 관련, FTA의 실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당국간 상시 협력채널 구축으로 현장애로를 신속 해결, 기업들이 FTA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에 이르지도록 하고, 향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Mega-FTA 이행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운영지침 시행
(2016.07.14.)**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롬비아 FTA”)이 7월15일 0시 부터 발효되었다.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의 교역액(수입금액+수출금액)의 약 0.1%(15억불, '15년 기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하여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 중남미 4위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 등도 보유

관세청은 한-콜롬비아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보다 상세한 한-콜롬비아 FTA 이행지침, 관세양허율표,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YES-FTA포털(www.yesfta.customs.go.kr),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



한-콜롬비아 FTA 이행지침 주요 내용

- (상품양허)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99.9%이며 콜롬비아는 97.8% 수준

- (수입품) 커피, 철광, 흑연, 석탄 등은 발효 즉시 철폐, 화초류는 5년 철폐,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협정 제외

* 커피세율은 WTO 양허세율(54%)이나, 현행법상 실행세율은 기본세율(2%)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적용되는 커피의 관세율은 2% → 0%로 즉시 철폐됨

- (수출품) 의료기기·비알콜음료는 즉시 철폐,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타이어 및 섬유류는 5년 내 철폐

- (농산물) 포도는 계절관세(5월~10월까지)는 45% 적용)부과, 분유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 키토물량(100ton)까지는 무관세, 키토물량 초과시에는 176% 적용

- 쇠고기, 만다린은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ASG) 대상 품목으로 지정

- (원산지증명)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은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부터 1년간 유효

- 협정 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FTA 적용

- (특송화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100불 이하의 특송화물은 수입신고 생략과 관세면제 혜택
- (원산지검증) 간접검증 방식과 직접검증 모두 가능
 - 간접검증의 경우 수출국 세관은 150일 이내에 결과 회신 의무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서면자료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내에 세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1회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수출자·생산자를 직접 방문조사 하는 경우 수출국 세관직원이 참관인으로 참여 가능
- (직접운송)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아래 사항이 모두 증명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①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함
- ② 비 당사국 영역에서 세관 통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함
- ③ 비 당사국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함

- (자료보관기간) 5년

관세청, 「2016 자유 무역협정(FTA) 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 사례 발표대회」 개최 (2016.07.22.)

정부 3.0 협업을 통해 FTA 활용에 성공한 사례 등 8편 소개

관세청은 7월 22일(금) 14:00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세관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FTA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우수한 FTA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발표된 8편의 사례는 FTA 활용, 공익관세사 활동, 통관애로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된 81편의 사례 가운데 2차례의 사전 서면 심사를 거쳐 엄선된 사례들이다.

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및 우수상 5편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고, 영업전략을 수립하여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이오나노캠'의 사례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원산지입증이 까다로운 화학제품이지만 서울세관과 공익관세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사례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 동반 성장을 이루어낸 '보령메디앙스㈜'의 사례가 차지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체 교역 중 FTA를 활용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8.9%에 달하는 본격적인 FTA 시대에 돌입해, 우리 기업들이 체결된 FTA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오늘 발표대회에서 소개되는 성공 사례를 참고해,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가 수출 확대 및 일자리를 창출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신(新)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일선 세관 현장에서 FTA 활용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3.0의 일환인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발굴된 사례를 책자·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에도 전파해나갈 계획이다.

**FTA 차이나 협력관,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큰 힘
(2016.07.29.)**

관세청, KOTRA와 협업하여 차이나협력관 파견.
정부 3.0에 앞장서

관세청은 지난 3월 중국 텐진과 다롄으로 파견한 차이나 협력관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관과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협정 적용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통관애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FTA와 통관업무 경력이 20년이 넘는 관세분야 베테랑이자, 중국어에도 능통한 차이나협력관(4급 임창환 텐진, 5급 송기찬 다롄)을 선발하여 KOTRA 무역관으로 파견하였다.

관세청은 차이나 협력관들이 파견 후 6월까지 100건 이상의 통관애로 해소 및 중국측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42억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중소기업 N社は 2016년 2월 2억 4천만원 상당을 수출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텐진공항해관에 제출했지만 중국측 담당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용지에 아무런 문양이 없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협력관은 해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관세청 직원으로서 원산지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임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한-중 FTA가 양국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하여 통관 보류되었던 화물을 통관시킨 것은 물론 보통 환급받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과거 수출물품에 대한 담보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국 해관 입장에서도 차이나 협력관은 고마운 존재이다. 중국 통관 제도를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에 잘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최된 <톈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협력관의 노력으로 양국의 세관당국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포럼에 참여한 업체들은 양국의 FTA 통관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톈진해관은 한-중 FTA 활용과 기업소통을 위한 협력관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협력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천진해관에서는 한국의 원산지 증명서는 사본제출도 허용해 주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관세청은 차이나 협력관이 파견된 톈진과 다롄 말고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관세관이 활동하고 있음을 밝히며, 가까운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통관애로를 접수하면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향후 교역량 및 통관 애로건이 많은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차이나 협력관 파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내 관세관 미파견지역
중 통관수요가 많은 지역에
통관전문가를 파견, FTA 통
관애로 현장해결 추진
[16.3 다렌.텐진 각 1명씩
파견]

차이나협력관 개요

[배경] 한-중 FTA 100% 활용전략의 하나로 對中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를
현지에서 적기 해소하기 위해 FTA 차이나협력관 파견 추진

* BH 및 부총리 현안보고(2015.1월, 6월)시 FTA 협력관 파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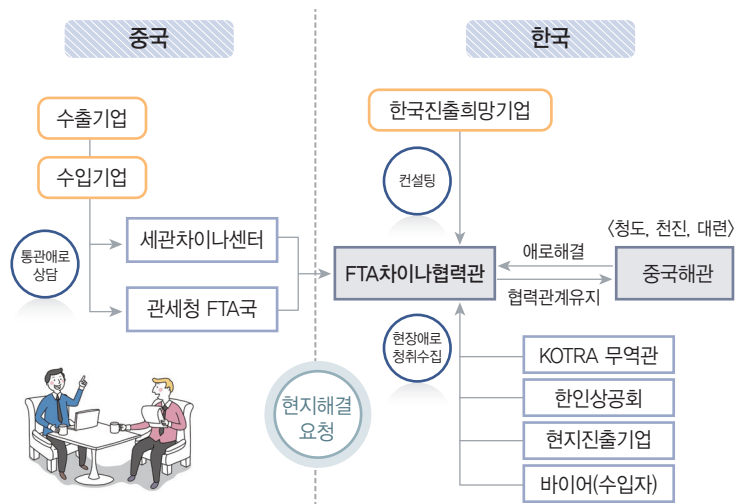
[운영방안] KOTRA와 협업을 통해 중국내 아국 기업의 물류·투자 진출 거점
인 텐진·다렌 무역관내 FTA 차이나협력관 선발·파견

[역할] 중국 현지에 상주하여 현장애로 청취, 한-중 FTA 활용 컨설팅 및 중국
해관과의 가교 역할* 등 FTA 이행 협력활동 전개

* 중국 통관제도상 수출입 화주가 해관 담당자에게 통관진행상황 등 직접문의 불가

- 필요한 경우 관세청 현장해결팀 파견시 협력지원 활동 수행

FTA차이나 협력관 개념도





차이나 협력관 주요 통관애로 해소 실적

(단위: 백만원)

지역	발급 일자	업체 명	통관애로 사항	금액
텐진	3.7	N社	• 텐진공항세관이 인천세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 관할세관 방문 설명으로 통관 및 기납부 담보 환급	244
	4.1	S社	• C/O 양식 내 'see overleaf instruction' 미기재로 불인정 ⇒ 단순 참고사항임을 설명 정상통관	635
	6.10	D社	• 운송장 번호가 7년전 번호와 중복되어 반송 조치 ⇒ 해관 방문, 발급체계 개선 약속 후 즉시통관	315
다롄	3.7	D社	• 중국 제조업체 비협조로 C/O 발급 신청 애로 ⇒ 자체 컨설팅을 통한 발급 지원	1,929
	4.22	J社	• 비행기 수리엔진 수출시 특별한 사유 없이 통관지체 ⇒ 관할 본부세관으로 동 사실 전달 후 해결	1,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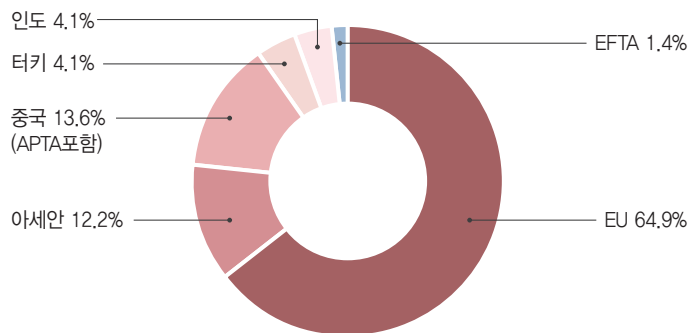
**관세청 2016년
제3호 FTA원산지검증
동향 제공
(2016.08.04.)**

2016년 상반기 수출물품 검증 현황 한눈에

관세청은 지난 8월 4일 관세청 2016년 제3호 FTA원산지검증동향을 발표하였다. 'Verification Statistics'에서는 검증 동향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2016년 상반기 수출물품 검증 현황에서는 협정별과 품목별로 나누었고, 2016년 상반기 수입물품 검증 현황은 협정별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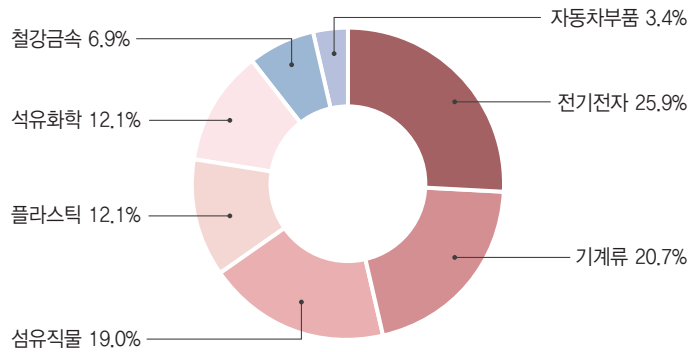
2016년 상반기 협정별 수출물품 검증의 결과, 슬로바키아,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에서 활발이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은 한-중 FTA 뿐만 아니라 APTA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충족이 미흡한 경우 검증을 요청하였다. 검증의 결과, 제3국 소재 기업의 국내 기업 인증번호 무단 사용, 인증 자격이 없는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발행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협정별 수출검증 요청 업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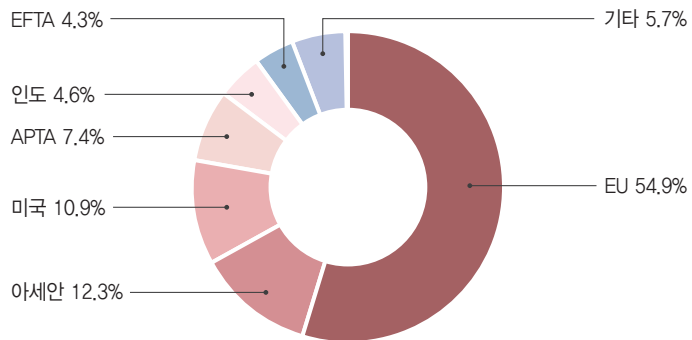
또한 2016년 상반기 품목별 수출물품 검증의 결과, 전기·전자, 섬유·직물, 기계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의심에 따른 요청뿐만 아니라 무작위 선별에 의한 검증요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 품목별 수출검증 요청 업체수 비율(%)



마지막으로 2016년 상반기 수입물품 검증 현황을 살펴보면, EU, 아세안, 미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증 결과, 비당사국 소재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거래당사자 요건 불충족과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따른 FTA 특혜세율 적용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협정별 수입검증 완료 업체수 비율(%)



**관세청,
‘2016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공동 개최
(2016.08.29.)**

정부 3.0 목표인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

관세청은 8월 31일(수) 10:00~17:00 코엑스에서 '2016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관계기관과 공동주최하여,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전문인력과 기업 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였다.

* [공동주최기관] 고용노동부, 관세청,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MBN, 중소기업청(명칭 가나다순)

양질의 일자리에 고졸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능력중심 의 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기간 중 실제 채용계획을 가진 중소기업과 고졸 인력을 맺어주는 '채용관'과 진로상담을 해 주는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채용관에서는 관세법인, 물류업체 등 20여개 업체와 관세청이 실시한 FTA 교육 수료생, 현장면접신청자 등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들 간의 1:1 현장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홍보관에서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경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에 입사한 직원으로부터 진로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사 참가자들은 채용관에 전시된 이동형 FTA 상담버스('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관람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YES FTA: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브랜드명

앞으로도 관세청은 정부 3.0의 목표인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특성화고교생을 FTA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과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사진:
2015년도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관세청 홍보관)



02

[FTA 최근동향]

우리나라 FTA 동향



한-이스라엘 자유무역 협정(FTA) 제1차 협상 개최(6.27~30, 서울) (2016.06.27.)

창조경제 산실인 이스라엘과 상생협력형 FTA 논의시작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6.27(월)~30(목)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 6. 27.(월) 09:30 롯데호텔(2층 에메랄드 홀) 개최식 개최

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이스라엘측은 네타발엘Netta Bar-Eli 수석대표(경제산업부: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외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및 무역원활화, 원산지, 무역구제, 협력 등 주요 분과 협상이 개시되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간 교역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또한, 창조경제 산실인 이스라엘과 기술창업, 첨단산업, 농식품, 산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제10차 한-중-일 FTA 협상 수석대표회의 개최 (2016.06.24.)

제10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회의가 2016.6.27(월)~28(화) 서울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Wang Shouwen) 상무부 부부장, 일본측은 카타카미 케이치(Katakami Keiichi)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한-중-일 3국은 2013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원칙”하에 지금까지 10차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총 14개 작업반 및 소작업반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10차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 등 주요 분야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중·일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협상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7.1 FTA관세 특례법령(법·영·규 칙) 전부개정안 시행 (2016.06.28.)



1. 개정취지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이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분 개정되어 옴에 따라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추어 조문을 재구성하고,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권리보호 강화 및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였다.



2. 주요내용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조문 순서를 FTA 특혜관세의 적용절차에 맞추어 재배치하고(‘章’편제 도입),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별로 세분화하거나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간결하게 통합하였다.

* (법) 36개 조문 → 8章 45개 조문/ (시행령) 104개 조문 → 9章 54개 조문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권리보호 강화)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간동안 수입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음

또한, 가산세·과태료 감경제도의 합리적 운용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는데, 이는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내야 하지만,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 하도록 하였다.

* 예)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국이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금액은 유지하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하였다.

* 예)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종전)	250(1차)	500(2차)	1,000(3차 이상)	-
(개정)	200(1차)	500(2차)	800(3차)	1,000(4차 이상)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IT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을 법령에 규정하여 적극 지원하게 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시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 확대 촉진하게 된다.

* 원산지증명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보급,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취득에 관한 상담·교육,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대비한 상담·교육 등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의 혜택을 받으며,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FTA혜택을 받을 수 있음

*** HS(품목번호) 6단위 기준으로 심사하되, HS 4단위 전체품목에 대해 폭넓게 인증

(기타 사항)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의 법률근거 명확화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및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기관(상공회의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정화하였다.

그 외 협정의 충실한 반영, 주요서식 법정화·간소화 등 한-페루 FTA 원산지 증명방식의 변경*에 따른 규정·서식 정비하였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주요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였다.

* [현행] 기관증명·자율증명 병행 → ('16.8.1 이후) 자율증명으로 일원화



3.기대효과

FTA 발효국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교역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2/3*가 넘는 상황에서, FTA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입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게 된다.

*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24.7%('11) → 36.0%('13) → 67.3%('15)

특히, 상대적으로 인력, 정보 등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또한, FTA 교역의 특성상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구현하게 되었다.



FTA관세특례법령 연혁

- ①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한-칠레 FTA관세특례법」)」제정(2004.3.5.)
- ②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제정(2005.12.31.)
- ③ 위의 두 법을 'FTA관세특례법'으로 통합(2009.12.31)
- ④ 이후 FTA 발효시마다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FTA관세특례법령'수시 개정(2010년 이후 약 30여회)
- ⑤ 'FTA관세특례법령'전부개정(2016.7.1 시행 예정)

FTA 현황 : 총 15개 FTA (국가수 기준 총 52개국)

(2016. 8월 말 기준)

FTA	발효일
칠레	2004.04.01.
싱가포르	2006.03.02.
EFTA(4개국)	2006.09.01.
아세안(10개국)	2007.06.01.
인도	2010.01.01.
EU(28개국)	2011.07.01.
페루	2011.08.01.
미국	2012.03.15.
터키	2013.05.01.
호주	2014.12.12.
캐나다	2015.01.01.
뉴질랜드	2015.12.20.
중국	2015.12.20.
베트남	2015.12.20.
콜롬비아	2016.07.15.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차 한-캐나다 FTA 공동위원회 개최 (2016.06.29.)

제1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16.6.30(목)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다.

*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산하에 공동위원회(최고위급), 상품무역위원회,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원회, 표준관련 조치 위원회 등 총 14개 이행기구가 설치·운영 중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측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캐나다측 커스틴 힐만(Kirsten Hillman) 글로벌부(Global Affairs Canada) 통상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해 개최되었다.

'15.1.1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 개최되는 공동위에서는 그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 산하 이행기구* 활동을 평가 하였다.

* 표준관련 조치 위원회('15.7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15.11월), 원산지규정 및 관세 위원회('16.2월),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 위원회('16.2월) 등

특히, 1차 위원회 계기에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 작업반』을 설치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 체결을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해, 향후 관련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된다.

* 협정상 상호인정 가능 분야: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서비스(부속서 9-나)

그 밖에도 양국은 표준, 검역 등 분야 현안, 기업 수출 애로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제10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2016.07.08.)

제10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위원회가 칠레 아태지역 명전 권대사 프레이(Frei) 전 대통령 방한 계기에 '16.7.11(월) 서울에서 열려 12년차를 맞이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자유무역위원회는 우리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 칠레측 파블로 우리아(Pablo Urria)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는 '04년 발효된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효 직후 대(對)칠레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확대는 물론, 당초 한국-칠레 FTA가 목표한 바대로 중남미지역 수출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 양국교역(억불): ('03)15.7 →('04)26.4 →('13)71.1 →('14)68.9 →('15)61.5 →('16.4) 17.2

* '04년 이후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대(對)세계수출에서 중남미지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9%('03)에서 4.2%('15)로 증가

현재 발효 12년차를 맞이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는 96.2%, 칠레측은 96.5%의 관세를 철폐했고 2017년에는 철강,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칠레측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그러나, 지난 협정 발효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감안할 때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추가적인 이익 도모를 위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칠레는 중국('06), 일본('07) 등과 FT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도 페루('11), 콜롬비아('16년 발효예정)와 체결

이에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작년 7월에는 제9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에서 FTA개선의 추진방향에 대한 예비 협의가 있었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양국간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칠레 정상회담 합의사항('15.4) : 한-칠레FTA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양국간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 논의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보다 심화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의 틀을 다지고 양국 간 개선관련 입장과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였다.

향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의 비준 동향 등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며, 양측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입시 칠레 측의 협조와 지원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 FTA 발효 6개월, 對 중국 수산물 교역 증가세 (2016.07.18.)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對 중국 수산물 교역규모가 7.8% 증가하였으며, 수출이 수입보다 7~8%p 가량 높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수산물의 對 중국 수출액(1.7억불, 6.7만톤)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2% 증가한 반면 수입액(5.9억불, 38만톤)은 약 3.9% 증가하여, 수출에 비해 수입이 다소 적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액/물량: '13-'15년 상반기(1.5억불, 6.1만톤), '15년 상반기(1.51억불, 6.24만톤)

* 수입액/물량: '13-'15년 상반기(5.6억불, 42만톤), '15년 상반기(5.7억불, 37만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對 중국 수산물 무역적자(4.2억불)는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여 무역적자의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었다.

* 수산물 무역적자: '13-'15년 상반기(4.08억불), '15년 상반기(4.17억불)

주로 삼치(43.7% ↑, 0.18억불), 대구(17.3% ↑, 0.12억불), 김(17.2% ↑, 0.31억불) 등이 수출증가를 견인하였으며, 전복(신규, 0.03억불) 등의 신규수출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입이 증가한 갈치(29% ↑, 0.23억불), 까나리(90.8% ↑, 0.17억불), 오징어(60.5% ↑, 0.18억불), 문어(43.7% ↑, 0.11억불)를 제외한 조기(0.4%△, 0.55억불), 아귀(13.8%△, 0.42억불) 등 주요 수입품목 대부분이 전년과 유사하거나 감소하여 전체 수입액 증가율은 수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對 중국 수산물 수출이 증가한 것은 현지수요 증가와 우리 측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수입이 증가한 것은 갈치, 까나리, 문어 등 일부품목의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對 중국 수산물 주요품목 수출입 통계('16.1~6월)

주요 수출품목 분석

(단위: 천\$, 톤, %)

구분		어류		해조류		패류
		삼치	대구	김	미역	전복
전년도누적 (1~6월)	금액	12,660	10,081	26,265	2,805	1
	물량	4,133	3,096	1,002	7,366	0
'16년도누적 (1~6월)	금액	18,194	11,828	31,025	4,259	2,910
	물량	6,256	3,748	1,259	11,673	129
증가율	금액	43.7	17.3	17.2	51.8	233,418
	물량	51.4	21.1	25.6	58.5	127,763

주요 수입품목 분석

(단위: 천\$, 톤, %)

구분		어류			연체동물			패류
		아귀	갈치	까나리	낙지	오징어	문어	바지락
전년도누적 (1~6월)	금액	48,473	17,933	9,126	87,757	11,416	7,378	23,002
	물량	20,135	3,149	20,419	16,450	4,298	1,447	20,843
'16년도누적 (1~6월)	금액	41,793	23,129	17,415	92,578	18,324	10,602	24,931
	물량	16,269	3,941	40,537	17,546	7,171	2,222	20,047
증가율	금액	△13.8	29	90.8	5.5	60.5	43.7	8.4
	물량	△19.2	25.2	98.5	6.7	66.8	53.6	△3.8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 개최(8.8~12, 서울)
(2016.08.05.)

중미 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및 투자진출 확대

한국과 중미 6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8.8(월)~12.(금)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열렸다.

* (중미 6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중미는 헤수스 베르무데스(Jesus Bermudez)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중미측 수석대표 : 코스타리카(존 폰세카 대외무역부차관), 엘살바도르(루스에스 프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경제부차관), 과테말라(엔리크 락스 팔로모경제통합통상부차관), 온두라스(멜빈 E. 레돈도 경제통합통상차관), 파나마(다이애나 살라사스 산업통상부차관)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16.7월 까지 6차례 협상(본협상 4회, 회기간 회의 2회)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주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협상에서는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상 가속화를 위해 국가별 관심도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자동차, 섬유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방,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식재산권 및 공정한 시장 경쟁 규범 등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대(對)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중미 교역*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이 진출해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이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중미 6개국은 중남미에서 국내총생산(GDP)규모 5위(2,202억 달러), 인구규모 3위 (4,620만 명)의 시장('15년 기준)으로 향후 시장잠재력 매우 높음

- ('16년 경제성장 전망, 세계은행) 파나마 6.2%, 니카라과 4.2%, 코스타리카 4.0%, 과테말라 3.6%, 온두라스 3.4%, 엘살바도르 2.5%

** [대(對)중미 교역규모, 무역협회] '13년 56억 달러→'14년 50억 달러→'15년 41억 달러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브렉시트에 따른 중장 기 대응방안 마련 계획 (2016.08.11.)

브렉시트 투표(6.23일) 직후 나타난 급격한 시장불안은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에 힘입어 조기에 진정되었으나, 영-EU간 협상, 유럽내 여건 변화 등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유동적이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저성장* 심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 '16.7월 IMF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
['16년 3.2%→3.1%, '17년 3.5%→3.4%]

이에 우리 정부는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7.8일)를 통해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①대외리스크에 대한 경제안전판을 강화하고, ②국제공조 및 대외소통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③ 브렉시트 이후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지속 점검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① 브렉시트의 우리경제 및 세계경제에의 파급효과, 영-EU간 협상 전개 시 나리오별 글로벌 무역구조·통상환경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② 현재 구성중인 '국제금융발전 심의회'등을 활용하여 학계·업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상시 수렴할 것이다.

* 제1차 '국제금융발전 심의회'조속히 가동(8월 하순 이후) 등

③ 브렉시트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정책을 발표·추진할 예정이다.

* 필요시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TF 설치·운영

④ 한-EU간 경제대화(9월, 브뤼셀)·FTA 서비스 이행위(하반기, 서울), 한-영간 국제국장회의·고위급 면담* 등 한-EU, 한-영간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영·EU 등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

* 부총리와 영국대사(7.1일) 및 로드메이어(런던시티시장, 7.18일) 면담 旣 개최

이를 통해 브렉시트 가결 이후 보호무역주의 흐름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외부문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03

[FTA 최근동향]

해외 FTA 동향^①



중국-조지아 FTA
2차 협상 개최
(2016.05.23.)

중국 상무부는 5.9(월)~5.13(금) 조지아와 상품, 서비스, 지재권, 무역원활화
와 관련해서 제2차 FTA 협상을 개최하였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조지아의 3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서 조지아와는 지난해 12월 협상을 개시했으며 3차
협상은 조지아에서 7월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TPP와
RCEP 가입 추진
(2016.05.30.)

5.22(일) 차이잉원 대만 신임 총통은 미국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TPP 제2차 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TPP 가입이라는 목표
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5.20. 취임 연설에서도 TPP와 RCEP과 같은 다자간 및 양자간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① 관세청 「주간 FTA 동향」을 참조하여 따로 작성하였다.

EU-멕시코, 기존
FTA 갱신 협상 시작
(2016.06.07.)

5.30(월)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000년 발효된 협정이 더 많은 무역장벽을 허물고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기존 협정을 갱신한 새 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U와 멕시코는 1997년 무역자유화를 포함한 협력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은 2000년 발효되었으며, 첫 번째 공식 협상은 6월 중순 예정이다.

英 캐머런 총리, 브렉시트(Brexit) 반대
(2016.06.13.)

6.7(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TV토론에서 EU 잔류가 “영국적인일”이라며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를 호소하였다.

캐머런 총리는 2015년 5월 브렉시트를 총선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하고 재선 후 입장을 바꿔 잔류 주장(찬반 국민투표 6.23.) 하고 있다.

인도, EFTA와
FTA 협상 재개 위
해 이슈 논의 합의
(2016.06.20.)

6.10(금) 인도와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재개를 위해 주요 이슈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08년 10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13년 11월까지 13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측의 지재권 관련 이슈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이다.

태국, 인도측에 FTA
협상 조속 타결 요구
(2016.06.27.)

6.17(금) 태국 프라윗 찬 오차 총리는 인도와 진행 중인 협상이 조속 타결 될 수 있도록 인도측에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측의 대표는 2021년까지 양국 교역량 목표를 160억불로 설정하고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북미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TPP 가속화 합의
(2016.07.04.)

6.29(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국 정상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회담을 갖고 TPP 가속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3개국 TPP 비준을 확인하고 영국의 EU탈퇴 결정 등 '고립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EU위원회, EU-
캐나다 CETA* 10
월 정식서명 제안
(2016.07.11.)

7.6(수) EU 위원회는 EU와 캐나다 간 CETA가 10월에 개최될 EU-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정식 서명될 것을 제안하였다.

EU와 캐나다는 '09.10월 1차 협상 개최 후 '11.11월까지 9차 협상 후 '13.8월 잠정타결 후 제약분야 등 일부 의견차이로 협정문 서명이 지연상태이다.

*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 포괄적 경제와 무역 협정

EU, "공정한 시장 접근 보장 없으면 중국과 FTA 협상 불가"(2016.07.18.)

7.11(일) 세실리아 말리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이 EU와 FTA 협상을 시작하려면 유럽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중국 시장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말리트롬 집행위원은 EU의 장기 목표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지만 투자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호주, 영국측에
FTA 협상 개시 요구
(2016.07.25.)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7.16(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영국-호주 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요구하였다.

또한, 메이 총리는 영국이 아직은 EU 회원국이며 독자적인 무역협상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협정체결을 강하게 원한다고 밝혔다.

영국, 브렉시트 한달
만에 중국과 FTA 추
진 (2016.08.01.)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부 장관은 7.24(일) BBC와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곧 중국과 FTA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먼드 장관은 단기적으로 영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최대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브렉시트가 영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 강조했다.

페루, 페루-온두
라스 FTA 비준
(2016.08.08.)

페루 무역관광부는 7.24 페루-온두라스 FTA를 비준하였다고 밝혔다. 양국 간 FTA는 '15.5.29. 타결되었으며 '15. 9. 온두라스의 비준에 이어 이번 페루의 비준으로 발효시 페루산 물품의 약 80%가 특혜관세 대상이 된다.

미국 하원의회, “오
바마 임기 내 승
인 곤란”입장 표명
(2016.08.16.)

8.4(목)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TPP에 대한 지지가 충분하지 못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승인이 어려우며, 반대가 강한 몇몇 항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의회 승인을 얻을 것이라 밝혔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라이언 의장의 발언에 따라 임기 내 발효가 불투명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04

[FTA 최근동향]

한-이스라엘 FTA 미리보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개요

우리나라만큼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가 있다. 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국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1985년 최초로 미국과 FTA를 맺은 이후 EU, 캐나다, 멕시코, 터키 등 41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1962년 수교한 이래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완성품을 수출하고 이스라엘은 반도체 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해 주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의 對이스라엘 수출 확대 역시 기대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품목

이스라엘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13%, 중국 9.3%, 스위스 7.1%이며, 수입품목은 원재료, 군용 제품, 다이아몬드, 연료, 공산품 등이다. 주요 수출 국가 역시 미국 27.5%, 홍콩 8%, 영국 6.1%이며 기계류, 소프트웨어, 화학제품 등을 수출한다.^①

①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s.html>(CIA World FactBook 2015)

② 무역협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수출 교역국 중 '15년 기준 19위(577백만달러)이며, 수입은 15위(1,138백만달러)로 교역규모는 낮은 수준이다.^② 앞으로 양국간 자

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두 국가의 교역은 좀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의 주요 교역품목은 수출품목의 경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등이며 자동차가 43.5%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수입품목의 비중은 5대 품목이 유사한 비중을 나타낸다. 개별 품목을 보면 무기류, 반도체 제조용장비, 무선통신기기, 항공기 및 부품, 전자응용기기가 각각 9.9%, 9.9%, 9.7%, 8.5%, 7.4%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對이스라엘 10대 교역품목 현황 ('16.7월 기준)

[단위: 천달러, %]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자동차	333,467	43.5	무기류	54,205	9.9
무선통신기기	57,814	7.5	반도체 제조용장비	54,089	9.9
합성수지	51,842	6.8	무선통신기기	53,003	9.7
정밀화학원료	27,374	3.6	항공기 및 부품	46,591	8.5
영상기기	25,831	3.4	전자응용기기	40,750	7.4
건설광산기계	24,450	3.2	공구	28,379	5.2
자동차부품	20,582	2.7	반도체	27,359	5.0
반도체제조용장비	17,532	2.3	계측제어분석기	18,452	3.4
플라스틱 제품	13,972	1.8	유선통신기기	17,758	3.2
기호식품	10,880	1.4	컴퓨터	14,173	2.6
소계	583,744	76.1		354,759	64.8
전체	766,900	100		547,255	100

자료: 무역협회
주: MTI 3단위 기준

이스라엘 세율 및 수입규제 제도

이스라엘의 산업구조는 주로 금융·상업서비스, 정부서비스,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높은 임금과 천연자원의 부재로 인해 공업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한편, 관세율의 경우는 WTO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관세율은 2.8%('13년 가중평균한 수입액)수준이며, 한국의 경우 8.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이스라엘 MFN 실행관세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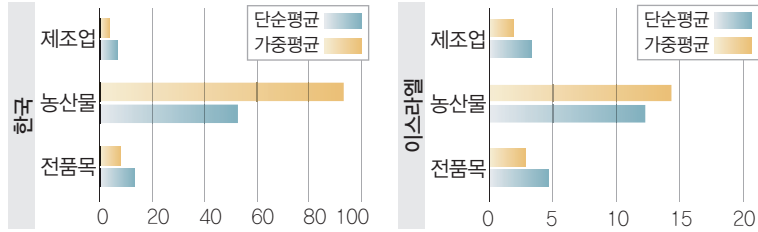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이스라엘			한국		
	전품목	농산물	제조업	전품목	농산물	제조업
단순평균	4.6	12.3	3.3	13.3	52.7	6.8
가중평균	2.8	14.3	1.9	8.0	93.2	3.7

주: 단순평균은 2014년 HS 코드 기준 가중평균은 2013년 수입액 기준
자료: WTO

한-이스라엘 MFN 실행관세율 현황

[단위: %]



주: 단순평균은 2014년 HS 코드 기준, 가중평균은 2013년 수입액 기준
자료: WTO

●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주요 제품별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직물, 의류, 신발, 자동차 등은 개별허가이지만 상품 수입은 자유로운 편이다. 다만, 농산물에 대해 쿼터없이 무관세를 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TRQ[●]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 등에 대해 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스라엘로 수출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스라엘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한 국가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제한된 경지면적과 농업용수 등 불리한 여건에도 농업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첨단농업기술 및 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발달한 이스라엘의 선진농업기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업은 전자부품,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양국의 상호보완적 무역구조, 첨단산업, 농식품, 서비스 등 협력에 초점을 맞춘 한-이스라엘 FTA는 양국에 서로 상생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이스라엘 FTA에 관한 민간공동연구가 '09년 진행된 이후로 양국간 협상 개시 합의가 올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FTA가 체결되면 이스라엘이 아시아권 국가와 체결한 FTA 중 최초가 될 것이다. 두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창출된 교역과 이스라엘이라는 신시장은 우리나라에 기회와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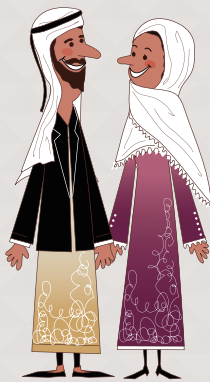
ISRAEL

- 수 도 : 예루살렘(Jerusalem)
- 인 구 : 835만명('15.4)
- 면 적 : 20,770km²(한반도 1/10배), 점령지역 제외
- 언 어 : 히브리어(공용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 종 교 : 유대교(75%), 이슬람교(17.7%), 기독교(2.0%), 드루즈(1.6%), 기타(3.9%)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의회구성 : 단원제(120석)
- 주요인사
 - 대통령 : Reuven Rivlin(루벤 리블린)
 - 총 리 : Benjamin Netanyahu(네타냐후)

- GDP : 3,206억불('15)
- 1인당 GDP : 38,166불('15)
- 교역규모('14)
 - 수 출 : 997억불(하이테크 산업, 방산품)
 - 수 입 : 933억불(투자재, 원자재, 소비재)
- 화폐단위 : Shekel(1\$=3.95)('16.1)

- 수교일자 : 1962.4.10
- 상주공관 개설
 - 1993.12.27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 개설
 - ※ '14.11 이견태 대사 부임
 - 1992.1.9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개설
 - ※ '13.8월 Uri Gutman 대사 부임
- 교역량 : 20.9억불('15)
 - 수 출 : 11.7억불(자동차, 선박, 합성수지)
 - 수 입 : 8.7억불(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 투자현황 : 총28건 4,777만불(누적)('16.3월)
- 교민현황 : 약800명('16)



자료:외교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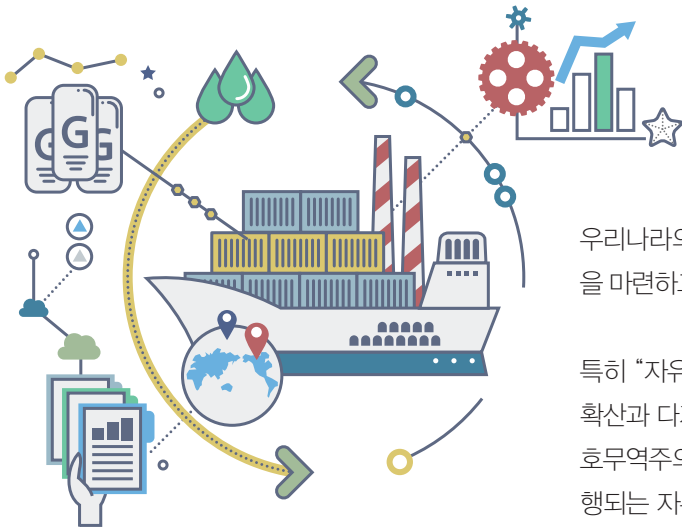
05

[FTA 최근동향]

국제원산지정보원 제8회 FTA 전문가 포럼



국제원산지정보원 제8회 FTA 전문가 포럼이 지난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브렉시트 및 미국의 FTA 재협상 등 자유무역 동향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 개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된 FTA 이행현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탈 자유무역 동향 대비 FTA 정책 방향과 활용사례를 주제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의장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을 비롯해서 한국관세사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도 참가했다.



발표는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손성수 관세청 과장, 박병길 대구텍 전무가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1주제 발표자인 최원목 교수는 브렉시트의 출현에 따른 국내외 FTA 정세의 변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FTA 중심 경제통상정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유 무역 대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민주주의 확산과 다자주의에 따른 개별국가의 영향력 감소 등 신보호무역주의에 기인한다”며, “추가로 진행되거나 새롭게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상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양국 중심의 FTA 활용 모델을 다국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제2주제 발표자인 손성수 과장은 FTA 이행지원 우수정책 사례 발표를 하였다. FTA 원산지 전문교육(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제도), 인증수출자 제도(인증지원 포함),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관세사 FTA 컨설팅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원산지관리전담제(원산지관리사)가 효율적인 원산지정보관리로 원산지검증 대응에 성공한 사례 등도 제시 하였다.

제3주제 발표자인 박병길 대구텍 전무가 FTA 활용 우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참고로 대구텍은 초정밀 절삭공구 제조사로 워렌 버핏이 투자한 바 있는 업체다.

이에 대해 지명토론자인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연구실장, 유종민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관세사가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여야의 주요 당직자들은 토론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FTA를 활용한 경제 재도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천홍욱 관세청장은 “국내 유일의 FTA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써 FTA 활용 지원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ANALYSIS

추석 성수품의 FTA 수입 동향과 시사점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
권민경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01

[FTA ANALYSIS]

추석 성수품의 FTA 수입 동향과 시사점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풍성한 추석, 문화가 있는 추석, 다함께 행복한 추석, 안전한 추석' 등 네 개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생활물가 안정 속에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건전한 명절문화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관세청은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는 물론,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기·덤·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을 통해 추석 전 2주간 농산품 공급 확대 및 알뜰구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등 추석을 맞이하여 다각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① (새한국물가협회, 「2016년 추석 차례용품 가격 동향」, 보도자료(2016.8.30.)
- ② 박미성 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KREI 농정포커스 제13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③ 쇠고기는 2015년 1억 달러 이상, 이하 품목은 100만달러 이상의 실적에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 함

한편 2016년 추석의 차례상 비용은 2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① 올 여름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 무, 사과 등의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220%, 150%,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② 이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추석 물가는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성수품의 시장 동향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제수 및 선물 용품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의 FTA 수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추석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수용품

본 글에서 제수용품은 육류, 나물류, 견과류, 수산물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수입 실적^③이 높은 다음의 12개 세번을 분석 하였다. 추석 성수품 중 주요 품목으로 꼽히는 사과, 배 등 과실류의 경우 연간 수입실적이 20만 달러 이하로 저조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추석 성수품 분석대상 목록 : 제수용품

구분		HSK	품목명
육류	쇠고기	0201.30-0000	신선 또는 냉장 쇠고기(뼈 없는 것)
		0202.20-1000	냉동 쇠고기 갈비
		0202.30-0000	냉동 쇠고기(뼈 없는 것)
		0206.29-9000	소의 설육(기타)
나물류	도라지	0706.90-4000	신선 도라지
	고사리	0712.90-2010	건조 고사리
견과류	밤 밤	0802.41-0000	신선 밤(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11.90-1000	냉동 밤
수산물	명 태	0303.67-0000	냉동 명태
		0304.75-0000	냉동 명태 어육
		0305.59-3000	명태(북어)
	조 기	0303.89-5000	냉동 조기

1) 육류

쇠고기는 우리 차례상 및 명절음식에 필수로 사용되는 식재료이며, 그 외에도 선물 등의 목적으로 명절 대목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품목이다. 우리나라에서 쇠고기의 주요 수입 형태는 냉동 쇠고기(뼈가 없는 것)(HSK 0202.30-0000), 냉동 쇠고기 갈비(HSK 0202.20-1000), 냉장 쇠고기(뼈가 없는 것)(HSK 0201.30-0000), 소의 설육(HSK 0206.29-9000) 등이다.

분석에 앞서 국내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국내 축산업은 한우 사육마릿수가 2012년을 314만 마리를 정점으로 생산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쇠고기 자급률은 2015년 46.2%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어 2019년에는 38.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 국내 쇠고기 소비 시장은 국산 한우의 수급차질 및 육류 소비확대로 수입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하겠다.

2015년 수입액은 냉동 쇠고기(뼈가 없는 것) 872,501천 달러, 냉동 쇠고기 갈비 477,526천 달러, 냉장 쇠고기(뼈가 없는 것) 395,929천 달러, 소의 설육 130,463천 달러이며, 수입량은 각각 146,558톤, 86,480톤, 43,022톤, 27,563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6년 7월 기준 수입금액은 냉동 쇠고기(뼈가 없는 것) 578,525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였고, 중량은 106,464톤으로 22.4% 증가하였다. 냉동 쇠고기 갈비는 309,546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하였고, 중량도 61,994톤으로 36.2% 증가하였다. 냉장 쇠고기(뼈가 없는 것)는 270,617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하였고, 중량도 28,607톤으로 22.7%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의 설육은 82,487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하였고, 중량은 17,333톤으로 증감이 없었다.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호주, 미국, 뉴질랜드 순으로 호주의 수입 점유율이 우세하다.

⁴⁾ 우병준 외 쇠고기 자급률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5.3.)

[표 2] 냉장 쇠고기(뼈가 없는 것)(HSK 0201.30-0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395,929	16.1	270,617	26.0
1	호주	263,847	9.4	174,557	21.5
2	미국	131,159	34.8	94,909	34.9
3	뉴질랜드	498	-51.6	1,072	205.6

[표 3] 냉동 쇠고기 갈비(HSK 0202.20-1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477,526	-5.7	309,546	17.0
1	미국	317,381	-2.8	222,558	33.2
2	호주	112,514	-2.9	53,720	-17.5
3	뉴질랜드	43,147	-21.8	26,511	-7.2

[표 4] 쇠고기(뼈가 없는 것)(HSK 0202.30-0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872,501	16.1	578,525	8.5
1	호주	551,062	26.3	350,385	5.0
2	미국	277,997	5.1	191,270	12.9
3	뉴질랜드	33,345	-24.4	28,718	24.0

[표 5] 소의 설육(HSK 0206.29-9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130,463	3.5	82,487	-3.3
1	호주	75,782	22.1	38,454	-23.6
2	미국	33,831	-26.7	30,283	42.9
3	뉴질랜드	19,978	19.7	12,734	-2.5

2016년 기준 냉장 쇠고기(뼈가 없는 것)(HSK 0201.30-0000), 냉동 쇠고기 갈비(HSK 0202.20-1000), 냉동 쇠고기(뼈가 없는 것)(HSK 0202.30-0000)는 수입시 기본세율이 30%, WTO농림축산물양허관세(W2)가 40%이며⁵⁾, FTA 협정국의 경우 호주는 FTA특혜세율이 32%, 미국은 26.6%, 캐나다-뉴질랜드는 34.6%로 FTA를 활용하여 수입할 경우 일반 수입 대비 각각 8%, 13.4%, 5.4%의 세율절감 효과가 있다. 소의 설육(HSK 0206.29-9000)은 수입시 기본세율 및 WTO 협정세율은 18%로 동일하며, FTA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호주는 14.4%, 미국 12%, 뉴질랜드 15.6%, 캐나다 14.7%, 칠레 0%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세율상으로는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對칠레수입시 특혜세율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칠레가 세계 시장에서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수입은 주요 쇠고기 생산 및 수출국인 호주와 미국에 수입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세율차가 크게 나는 미국산 쇠고기가 설육을 제외한 3개 품목에서 수입액 및 수입량 등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⁵⁾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 의해 WTO 양허세율이 우선 적용됨

[표 6] 냉동 쇠고기(뼈가 없는 것)(HSK 0202.30-000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천 달러, %)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532,969	506,802	500,210	98.7
	2016. 7	578,525	573,739	567,876	99.0
호주	2015. 7	333,730	333,730	328,077	98.3
	2016. 7	350,385	350,385	348,344	99.4
미국	2015. 7	169,437	169,437	169,391	100.0
	2016. 7	191,270	191,270	190,955	99.8
뉴질랜드*	2015. 7	23,159	-	-	-
	2016. 7	28,718	28,718	26,070	90.8

* 한-뉴질랜드 FTA는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2015년 7월에는 특혜수입 실적이 없음. 이하 같음

** 활용률은 FTA 특혜대상인 되는 품목 중 실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통해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품목의 비중임. 이하 같음

쇠고기 가운데 수입 실적이 가장 높은 품목부터 살펴보자. 먼저 냉동 쇠고기(뼈가 없는 것)(HSK 0202.30-0000)의 특혜수입실적은 <표 6>과 같다.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전체 수입이 모두 포함된 578,525천 달러이며, 99.0%가 FTA를 활용하여 수입하였다. 국가별로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로부터의 특혜수입 실적이 각각 348,344천 달러, 190,955천 달러, 26,070천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FTA 수입활용률은 호주, 미국, 뉴질랜드 모두 99.8~100.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수입비중은 작지만 2015년 12월말 FTA를 신규 발효한 뉴질랜드로부터의 특혜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24.0%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혜세율이 가장 낮은 미국산도 12.9% 증가하였다.

[표 7] 냉동 쇠고기 갈비(HSK 0202.20-100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천 달러, %]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264,626	235,856	234,784	99.5
	2016. 7	309,546	309,448	308,674	99.7
호주	2015. 7	167,031	167,031	167,031	100.0
	2016. 7	222,558	222,558	222,558	100.0
미국	2015. 7	65,143	65,143	64,611	99.2
	2016. 7	53,720	53,720	53,704	100.0
뉴질랜드	2015. 7	28,564	-	-	-
	2016. 7	26,511	26,511	25,831	97.4

다음으로 냉동 쇠고기 갈비(HSK 0202.20-1000)의 특혜수입실적은 <표 7>과 같다.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전체 수입이 대부분 포함된 309,448천 달러이며, 99.7%가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특혜수입 실적이 각각 308,674천 달러, 53,704천 달러, 25,831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FTA 수입활용률은 미국, 호주는 100%, 뉴질랜드는 97.4%로 도출되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특혜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33.2%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호주로부터의 특혜수입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 쇠고기의 경우 특혜세율혜택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가장 우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8] 냉장 쇠고기(뼈가 없는 것)(HSK 0201.30-000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천 달러, %)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214,789	214,438	214,253	99.9
	2016. 7	270,617	270,617	270,587	100.0
호주	2015. 7	143,653	143,653	143,468	99.9
	2016. 7	174,557	174,557	174,536	100.0
미국	2015. 7	70,360	70,360	70,360	100.0
	2016. 7	94,909	94,909	94,899	100.0
뉴질랜드	2015. 7	351	-	-	-
	2016. 7	1,072	1,072	1,072	100.0
캐나다	2015. 7	425	425	425	100.0
	2016. 7	80	80	80	100.0

냉장 쇠고기(뼈가 없는 것)(HSK 0201.30-0000)는 실제 국내 한우와 대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품목이다. 냉장 쇠고기(뼈가 없는 것)의 특혜수입실적은 <표 8>과 같다.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전체 수입이 모두 포함된 270,617천 달러이며, 전부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로부터의 특혜수입 실적이 각각 174,557천 달러, 94,909천 달러, 1,072천 달러 순이었다.

FTA 수입활용률은 호주, 미국, 뉴질랜드 모두 100%로 도출되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특혜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34.9%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는 전반적으로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표 9] 소의 설육(HSK 0206.29-900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천 달러, %)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85,287	72,229	71,917	99.6
	2016. 7	82,487	82,485	82,444	100.0
호주	2015. 7	50,346	50,346	50,209	99.7
	2016. 7	38,454	38,454	38,453	100.0
미국	2015. 7	21,190	21,190	21,190	100.0
	2016. 7	30,283	30,283	30,283	100.0
뉴질랜드	2015. 7	13,055	-	-	-
	2016. 7	12,734	12,734	12,695	99.7

마지막으로 소의 설육(HSK 0206.29-9000)의 특혜수입실적은 <표 9>와 같다.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전체 수입이 대부분 포함된 82,485천 달러이며, 전부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로부터의 특혜수입 실적이 각각 38,453천 달러, 30,283천 달러, 12,695천 달러 순이었다. FTA 수입활용률은 호주, 미국은 100%, 뉴질랜드는 99.7%로 도출되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특혜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42.9%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호주는 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호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수입 쇠고기 소비시장이, FTA 관세혜택이 가장 높은 미국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세가 반영되어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쇠고기의 수입 물량의 최근 5년간 실적은 냉동 쇠고기(뼈가 없는 것)은 2012년 123,122톤에서 2015년 146,558톤으로 약 19.0% 증가, 냉동 쇠고기 갈비(HSK 0202.20-1000)는 2012년 78,505톤에서 2015년 86,480톤으로 10.2% 증가, 직접적인 냉장 한우와 소비 대체관계가 있는 냉장 쇠고기는 2012년 31,704톤에서 43,022톤으로 무려 35.7% 증가하는 등 수입 쇠고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의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2년 9월 최대 314만 마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3월 260만 마리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과 FTA를 맺고 있으며 특혜관세는 연차별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쇠고기 시장은 특혜관세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가격 하락으로 가격경쟁력도 더하게 되어 국내 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높이는 등 수입 대체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나물류

① 도라지

도라지(HSK 0706.90-4000)는 신선 도라지가 분류되는 세번이다. 2015년 총 수입금액은 22,524천 달러, 수입량은 12,200톤에 달하였다. 2016년 7월 기준 수입금액은 14,450천 달러로 전년대비 12.3%증가하였고, 중량은 1.6% 감소하였다. 도라지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거의 전량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표 10] 도라지(HSK 0706.90-4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22,524	-13.7	14,450	12.3
1	중국	22,524	-13.7	14,450	12.3

2016년 신선 도라지는 수입시 기본세율이 27%, 한-중 FTA 특혜관세율은 2년차 적용세율인 24.3%로 2.7%의 관세 혜택이 가능하다. 다른 FTA 협정에서 신선 도라지는 특혜관세대상이나 수입 실적은 거의 없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혜수입실적은 <표 11>과 같다. 2015년 7월은 한-중 FTA 발효 이전시기로 FTA 특혜 실적이 없다. 2016년의 경우 7월말 기준 현재 전체 수입의 99%인 14,299천 달러를 FTA 활용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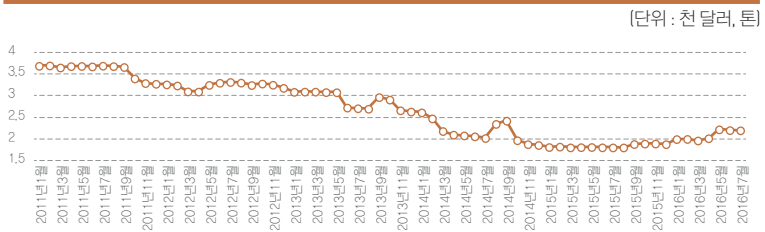
[표 11] 도라지(HSK 0706.90-400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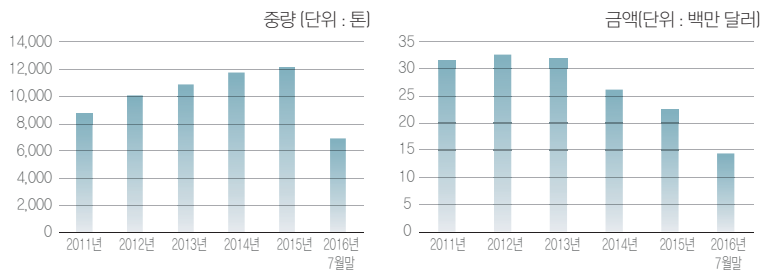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12,868	12,868	-	-
	2016. 7	14,450	14,450	14,299	99.0
중국	2015. 7	12,868	12,868	-	-
	2016. 7	14,450	14,450	14,299	99.0
미국	2015. 7	-	-	-	-
	2016. 7	0.1	0.1	0	0

신선 도라지의 전체 수입 중량의 최근 5년간 실적은, 2011년 8,763톤에서 2015년 12,220톤으로 약 39%가량 증가하였으나, 수입금액은 31.5백만 달러에서 2015년 22.5백만 달러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도라지 생산량은 2011년 6,909.9톤에서 2014년^⑥ 5,406톤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수입량이 현재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국내 수급에서 수입산의 의존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도라지(HSK 0706.90-4000)의 월별 수입단가(2011~2016.7)



[그림 2] 도라지(HSK 0706.90-4000)의 수입 중량 및 금액(2011~2016.7)



⑥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년도

향후 도라지 수입시장은 한-중 FTA에 따라, 중국의 작황이 부진 등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충격이 없을 경우 연차별 관세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단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된다.

② 건조 고사리

고사리(HSK 0712.90-2010)는 건조 고사리가 분류되는 세번이다. 2015년 총수입금액은 15,476천 달러, 수입량은 2,314톤에 달하였다. 2016년 7월 기준 수입금액은 7,616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하였고, 중량은 1,191톤으로 21.6% 감소하였다. 고사리의 주요 수입국은 도라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거의 전량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표 12] 고사리(HSK 0712.90-201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15,476	-15.9	7,616	-23.5
1	중국	15,429	-15.9	7,609	-23.2
2	마다가스카르	35	2,573.2	3	-90.3
3	미국	5	25.9	3	18.4

2016년 기준 건조 고사리는 수입시 기본세율이 30% 또는 1,807원/kg, 양자 중 고액(율)로, 한-중 FTA 특혜관세율은 2년차 적용세율인 27% 또는 1,626원/kg, 양자 중 고액(율)로 3%의 관세 혜택이 가능하다. 한-ASEAN 특혜관세율은 24% 또는 1,446원/kg, 양자 중 고액(율)로 6%의 관세혜택이 가능하다. 이외 다른 FTA 협정에 건조 고사리는 인도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특혜관세대상이나, 수입 실적은 거의 없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혜수입실적은 <표 13>과 같다. 2015년 7월은 한-중 FTA 발효 이전시기로 중국으로부터의 FTA 특혜 실적이 없으며, 미국, ASEAN(라오스), 호주, 캐나다, EU(영국) 등으로부터 소량의 수입실적이 있으나 FTA 협정관세를 활용하여 수입한 실적은 없다.

2016년의 경우 7월말 기준 현재 특혜대상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99.9% 수준인 7,613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79.9%인 6,086천 달러가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ASEAN(미얀마)로부터의 특혜수입 실적이 각각 6,085천 달러, 0.4천 달러, FTA 수입활용률은 중국이 80.0%, ASEAN이 100%로 도출되었다.

[표 13] 고사리(HSK 0712.90-201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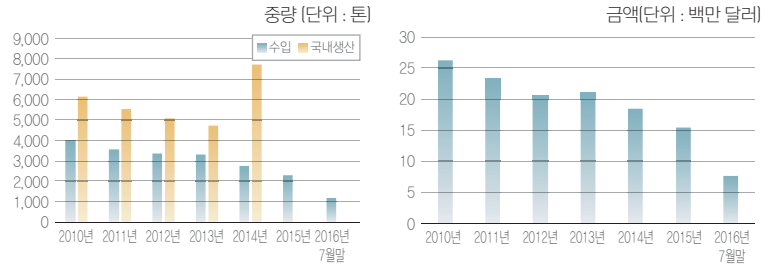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9,956	10	0	0.0
	2016. 7	7,616	7,613	6,086	79.9
중국	2015. 7	9,912	-	-	-
	2016. 7	7,609	7,609	6,085	80.0
ASEAN	2015. 7	6	6	0	0
	2016. 7	0.4	0.4	0.4	100.0

건조 고사리 전체 수입 중량의 최근 5년간 실적은 2011년 3,575톤에서 2015년 2,314톤으로 약 33.9%가량 감소하였고, 수입금액 역시 23.4백만 달러에서 2015년 15.5백만 달러로 약 35.3%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사리 생산량은 2011년 5,517톤에서 2014년 7,703톤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량이 1차적으로 소비되고, 부족량에 대해 수입이 이를 보완하는 것을 알수있다.

고사리는 산에서 채취되는 임산물로 냉해, 가뭄 등 기상여건의 영향에 따라 작황이 좌우되는 품목이다. 공식적인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황이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추석에도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입물량인 중국산 제품의 FTA에 의한 관세하락 효과로 향후 국내 고사리 가격 하락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⑥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3] 고사리(HSK071290-2010)의 수입 및 국내생산량, 수입금액(2010-2016.7)



3) 견과류, 밤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견과류 밤은 수입 형태에 따라 신선 밤(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은 HSK 0802.41-0000호에, 냉동밤^㉔은 HSK 0811.90-1000호에 분류된다. 2015년 총수입금액은 신선 밤은 2.9백만 달러, 냉동 밤은 6.4백만 달러이며, 수입량은 각각 1,619톤, 2,785톤에 달하였다. 또한 2016년 7월 기준 수입금액은 신선 밤이 1,689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하였고, 중량은 964톤으로 38.9% 증가하였다. 냉동 밤의 경우 4656천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7% 증가, 중량은 1,992톤으로 전년보다 33.7%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2016년 밤에 대한 수입은 전년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밤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거의 전량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표 14] 신선 밤(HSK 0802.41-0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2,948	-16.9	1,689	27.2
1	중국	2,948	-16.9	1,689	27.2

㉔ 냉동한 제품으로 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2016 관세율표).

[표 15] 냉동 밤(HSK 0811.90-1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6,491	-24.5	4,656	31.7
1	중국	6,491	-24.5	4,656	31.7

2016년 신선 밤의 수입시 적용세율은 WTO의 농림축산물 양허 추천물량^⑩은 50% 그리고 미추천물량은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며, 한-중 FTA에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인 2012년 MFN 세율을 유지한다. 따라서 WTO 추천물량의 관세가 더 낮기 때문에, 우선 수입자는 추천물량을 배정받는 게 유리하다. 냉동 밤 수입시 적용세율은 30%이며 역시 양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FTA로 인한 추가적인 혜택 수혜는 사실상 없다.

한편 신선 밤, 냉동 밤의 최근 수입 실적은 중량기준으로 신선 밤은 2012년 2,024톤에서 2015년 1,620톤으로 약 20.0%가량 감소하였고, 냉동 밤은 2012년 4,271톤에서 2,785톤으로 무려 34.8%가 감소하였다.^⑪ 수입금액 역시 신선 밤은 2012년 3.4백만 달러에서 2015년 2.9백만 달러로 약 14.5% 감소, 냉동 밤 역시 2012년 10.3백만 달러에서 2015년 6.5백만 달러로 3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밤 생산량은 동기간 2012년 62,345톤에서 2014년^⑫ 59,765톤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 대비 수입량이 평균 국내 생산량의 9.7%에 불과하고,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에서 해당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밤의 경우 FTA 발효가 해당 소비 및 생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하겠다. 다만 올해의 경우 햇밤의 출연 지연과 저장물량 부족으로, 추석 성수기 소비자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⑬

⑩ 2016년도 물량은 2170톤이며, 신선 밤만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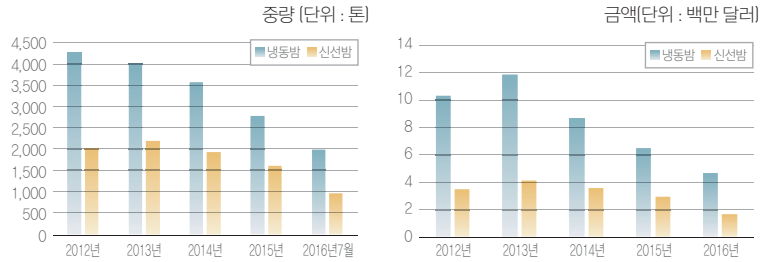
품목구분	HS 코드	품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
밤	0802-41-0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수입관공매/ 실수요자배정	산림조합중앙회
	0802-42-0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⑪ 2012년 HS 개편에 따라 새로 부여된 세번으로 분석기간을 2012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⑫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년도

⑬ 박미성 외, 전계서와 같음.

[그림 4] 신선 밤, 냉동 밤의 수입중량 및 수입금액(2010~2016.7)



4) 수산물

① 명태

명태는 우리 차례 상에 필수로 올라가는 생선으로, 명태전, 북어 등의 주요 식재료로 사용되어 명절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품목이다. 우리나라에서 명태의 주요 수입 형태는 냉동(HSK 0303.67-0000), 냉동 어육(HSK 0304.75-0000), 북어(HSK 0305.59-3000) 등이다.

2015년 수입액은 냉동 명태 224,637천 달러, 냉동 어육 49,939천 달러, 북어 62,330천 달러이며, 수입량은 냉동명태 180,771톤, 냉동어육 17,958톤, 북어 5,754톤을 기록하였다. 2016년 7월 기준 수입금액은 냉동명태 106,188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하였으나, 중량은 97,396톤으로 8.4% 증가하였다. 냉동 어육은 26,774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였고, 중량도 10,113톤으로 7.6% 증가하였다. 북어는 39,312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하였고, 중량도 3,896톤으로 21.0% 증가하였다. 명태의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미국, 중국 순으로 러시아의 수입 점유율이 우세하다.

[표 16] 냉동 명태(HSK 0303.67-0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224,637	1.2	106,188	-8.9
1	러시아	212,927	-0.4	94,665	-13.7
2	미국	10,887	57.3	11,418	85.1
3	일본	562	-38.2	50	-89
4	중국	0	-100	47	0
5	캐나다	261	-0.4	8	-96.5

[표 17] 냉동 명태 어육(0304.75-0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49,939	11.9	26,774	3.9
1	러시아	46,246	8.9	25,189	4.2
2	미국	3,566	73.8	1,324	-16.8
3	중국	127	55.9	261	0.0

[표 18] 북어(0305.59-3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62,330	13.3	39,312	12.6
1	러시아	59,440	18.4	36,743	14.1
2	중국	2,868	-40.6	2,375	-12.4
3	미국	22	742,233.3	194	779.8

2016년 기준 냉동 명태(HSK 0303.67-0000)는 수입시 기본세율이 10%, 조 정관세^㉔ 22%이며, FTA 협정국의 경우 중국은 미양허 품목, 미국은 TRQ^㉕ 품목으로 5,646 메트릭톤^㉖ 이하에 대해서는 0%,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30%

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對미 수입시 협정에서 정하는 연차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의 경우 특혜 수입이 아닌 일반수입세율(MFN)을 적용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캐나다의 경우 FTA특혜세율이 25%로 마찬가지로 일반수입세율(MFN)을 적용이 더 합리적이다.^⑤

냉동 어육(HSK 0304.75-0000)은 수입시 기본세율이 10%이며, 對미 FTA특혜세율은 6.9%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양허 품목이다. 마지막으로 북어(HSK 0305.59-3000)는 수입시 기본세율이 20%, 對미 FTA특혜세율은 2014년부터 0%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양허 품목이다. 이외 다른 FTA 협정에서 명태는 중국 이외의 모든 협정에서 특혜관세대상이 되나 생산의 한계로, 수입 실적은 거의 없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냉동 명태(HSK 0303.67-000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 천 달러, %)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116,527	6,390	4,465	69.9
	2016. 7	106,188	11,426	5,908	51.7
미국	2015. 7	6,170	6,170	4,465	72.4
	2016. 7	11,418	11,418	5,908	51.7
캐나다	2015. 7	220	220	-	0
	2016. 7	8	8	-	0

⑤ 조경관세는 관세법상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세율을 인상하여 수입 억제에 유도하는 관세율이다. 특히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이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적용하고 있다. 현재 활돔, 활농어, 냉동공치, 냉동명태, 활뱀장어, 냉동오징어, 새우젓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⑥ 관세할당(tariff-tate Quota : TRQ)제도는 수준이 다른 두 개의 관세율과 사전에 양허된 수입물량인 쿼터가 합성된 수입방식으로 쿼터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in-quota rate)를 적용하지만,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인 "쿼터밖 관세(over-quota rate)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에 해당된다.

⑦ 명태의 TRQ 물량의 배정방식은 최초 물량 4000톤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증량되는 방식이다.

품목명	협정문상의 HS	HS 2016	품목명	최초물량
명태	0303.79.1000	0303.67.0000	명태(냉동)	4000
	0303.79.1000	0303.69.9000	기타(냉동)	

⑧ 이와 같이 FTA 협정세율이 일반수입세율을 초과하는 것은 발생가능한 일이다. 조경관세가 매년 발표되어 매년 세율 하락 가능성이 있는 반면, FTA의 양허의 기준세율은 협정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 미국의 경우 2006년 1월 1일 발효중인 대한민국 최혜국 관세율을, 한-캐나다 FTA의 경우 부속서 2-라에 2011년 1월 1일에 적용된 최혜국 관세율을 기준관세율로 하고 있다.

냉동 명태(HSK 0303.67-0000)의 특혜수입실적은 <표 19>와 같다.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10.8% 수준인 106,188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51.7%인 5,908천 달러가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로부터의 특혜수입 실적이 각각 5,908천 달러, 0달러, FTA 수입활용률은 미국이 51.7%, 캐나다가 0%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냉동 명태가 TRQ 적용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쿼터 내 물량의 경우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쿼터 밖 물량은 일반수입이 특혜수입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TRQ 물량 소진이 다 이루어졌을 경우, FTA를 100% 활용한 것과 다름없다.^⑦ 캐나다 역시 적용세율 면에서 FTA 특혜 수입보다 일반수입이 더 유리하므로, FTA 활용률이 낮은 것이 오히려 수입시장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냉동 명태어육(0304.75-0000) 및 북어(0305.59-300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천 달러, %]

구분	냉동명태어육		북어	
	2015. 7	2016. 7	2015. 7	2016. 7
총수입	25,772	26,774	34,927	39,312
FTA 대상수입(A)	1,591	1,324	22	189
FTA 특혜 수입(B)	257	0	-	-
활용률(A/B[%])	16.2	0.0	0.0	0.0

냉동 어육(HSK 0304.75-0000)의 특혜수입실적은 <표 20>과 같다.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4.9% 수준인 26,774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것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FTA 활용률 16.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북어(HSK 0305.59-3000)의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0.5% 수준인 189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2015년 한-미 FTA에 의한 TRQ 쿼터 물량은 5,180톤이며, 2015년 총 수입실적은 5,885톤으로 쿼터를 소진하였다.

한편 냉동 명태의 전체 수입 중량의 최근 5년간 실적은 2012년 214,137톤에서 2015년 180,771톤으로 약 15.6%가량 감소하였고, 수입금액 역시 231.5백만 달러에서 2015년 224.6백만 달러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명태 생산량은 동기간 2012년 39,026톤에서 2015년 20,015톤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㉔ 우리나라의 명태의 생산은 주로 원양어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소비물량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고 있다. 게다가 2위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 물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TRQ 대상 품목으로 FTA의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6,000톤 이하로 우리나라의 소비 물량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FTA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조기

조기는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조기가 주로 수입되는 형태는 냉동품으로, 관세율표상 HSK 0303.89-5000호에 냉동 조기가 분류되고 있다. 2015년 냉동조기의 총수입금액은 119,492천 달러, 수입량은 24,723톤에 달하였다. 2016년 7월 기준 수입금액은 63,458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였고, 중량은 14,832톤으로 18.9% 증가하였다. 조기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거의 전량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표 21] 냉동조기(HSK 0303.89-5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119,492	2.0	63,458	5.1
1	중국	119,485	2.0	63,458	5.1

㉔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2016년 기준 냉동 조기는 수입시 기본세율이 10%로, 한-중 FTA에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세율인 2012년 MFN 세율을 유지한다. 이외 다른 FTA 협정에 냉동 조기는 ASEAN, 인도, 터키 등을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특혜관세대상이 되나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실적은 거의 없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냉동 조기의 최근 수입 실적은 중량기준으로 2012년 27,555톤에서 2015년 24,273톤으로 약 10.3%가량 감소하였다. 수입금액 역시 2012년 124백만 달러에서 2015년 119백만 달러로 약 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기 생산량은 동기간 2012년 37,752톤에서 2015년 33,326톤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㉞ 국내 생산량 대비 수입량은 최근 4년 평균 기준 국내 생산량의 75.8%에 달해 중국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에서 해당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기의 경우 견과류인 밤과 마찬가지로 FTA 발효가 해당 소비 및 생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하겠다.

3. 선물용품

본 글에서 추석 선물용품은 수입 실적이 높은 다음의 주류, 건강식품 등 2개 품목군 4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22] 추석 성수품 분석대상 목록 : 선물용품

구분		HSK	품목명
주류	위스키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포도주	2204.21-1000	붉은 포도주
건강식품	천연꿀	0409.00-0000	천연꿀
	로열젤리, 벌꿀 조제품	2106.90-9099	기타(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㉞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1) 주류

① 위스키

위스키는 맥아를 주원료로 하여 이것을 당화·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만든 술이다. 그리고 스카시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제조되는 위스키의 총칭이다. 스카시 위스키는 시장에서 대체로 고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선물용으로 구매된다.

스카시 위스키는 관세율표상 HSK 2208.30-1000에 분류된다. 2015년 스카시 위스키 수입액은 174,968천 달러이며, 수입량은 18,637톤을 기록하였다. 2016년 7월 기준 수입금액은 80,573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하였고, 중량은 8,858톤으로 13.2%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경기 하락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사치적 소비재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다. 스카시 위스키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영국이 독보적이다.

[표 23] 스카시 위스키(HSK 2208.30-1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174,968	-8.9	80,573	-17.0
1	영국	174,749	-8.9	79,665	-17.9
2	캐나다	43	-12.4	631	3436.2

2016년 스카시 위스키는 수입시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30%, 국제협력관세는 20%이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시, 칠레, EU, 미국^㉔은 0%, 캐나다는 12%로 FTA에 의해 수입관세가 대폭 하락하는 주요 품목이다. 이외 FTA 협정에서 스카시 위스키는 특혜관세대상이나 수입 실적은 거의 없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㉔ FTA 특혜세율로 0% 적용 시점은 칠레는 2009년, EU는 2014년 7월 1일, 미국은 2016년부터이다.

[표 24] 스카치 위스키(HSK 2208.30-100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 천 달러, %]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97,100	97,099	71,757	73.9
	2016. 7	80,573	80,502	58,913	73.2
EU(영국)	2015. 7	97,005	97,005	71,743	74.0
	2016. 7	79,665	79,665	58,858	73.9
캐나다	2015. 7	18	18	0	0
	2016. 7	631	631	0	0

특혜수입실적은 <표 24>와 같다.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80,502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58,913천 달러, 약 73.2%가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수입 국가는 영국으로 98.9%를 점유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수입액이 전년 동기보다 약 35.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FTA 특혜를 활용하여 수입한 금액은 없다.

이는 한-EU FTA에서 “스카치 위스키”등 약 700여 가지의 제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 (GI)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그 명칭 사용이 가능한 것에 의한다.

한편, 2016년 7월 스카치 위스키의 對영 특혜수입 실적은 전년보다 13.3% 감소하는 등 관세여건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 수요 감소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포도주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의 당분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로, 한-칠레 및 한-EU FTA 발효 이후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포도주는 보급형 저가에서 고급형 고가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평소 소비량으로도 많이 판매되지만 명절 대목에는 선물용으로도 선호되는 대표적 품목이다.

포도주는 관세율표상 HS 2204호^㉑에 분류되며, 붉은 포도주의 경우 HSK 2204.21-1000호에 분류된다. 2015년 붉은 포도주의 수입액은 127,682천 달러이며, 수입량은 21,761톤을 기록하였다. 2016년 7월 기준 수입금액은 70,955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하였고, 중량은 11,635톤으로 5.2% 감소하였다. 붉은 포도주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칠레,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붉은 포도주(HSK 2204.21-1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127,682	2.5	70,955	-3
1	칠레	37,702	10.4	20,089	-8.7
2	프랑스	34,735	-6.2	19,233	-2.6
3	미국	17,642	4.6	9,584	-2.7
4	이탈리아	14,307	-4.6	8,642	7.8
5	스페인	9,739	8.9	5,350	3.6
6	호주	6,870	2212.9	4,549	1.5
7	아르헨티나	3,898	16.7	2,101	-5.9

2016년 붉은 포도주는 수입시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30%, 국제협력 관세는 15%로 실행 관세율은 15%가 적용된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칠레, EU, 미국, 호주는 0%로 FTA에 의해 수입관세가 대폭 하락하는 품목이다. FTA 특혜세율로 0% 적용 시점은 칠레는 2009년, EU는 2011년 7월 1일, 미국은 2012년 3월, 호주 2014년 12월부터이다.^㉒

㉑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㉒ 붉은 포도주는 FTA 협정에 의해 EU, 미국, 호주의 경우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다.

[표 26] 붉은 포도주(HSK 2204.21-100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 천 달러, %]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73,141	70,093	96.0
	2016. 7	70,955	68,258	96.5
칠레	2015. 7	22,010	22,010	97.4
	2016. 7	20,089	20,089	96.6
프랑스	2015. 7	19,748	19,748	96.8
	2016. 7	19,233	19,233	98.6

특혜수입실적은 <표 26>과 같다.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68,258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65,868천 달러, 약 96.5%가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수입 국가는 칠레, 프랑스로 각각 29.4%, 28.2%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2016년 7월 붉은 포도주의 對칠레 특혜수입실적은 전년보다 9.3%, 對프랑스는 0.8% 감소하는 등 스카시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관세여건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 수요 감소가 시장에 더 큰 영향 미치고 있다. 또한 한-칠레, 한-EU FTA 발효 이후 매년 급성장해 온 포도주 수입시장이 포화상태를 이루어 정체기에 접어 든 것도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2) 건강식품

① 천연꿀

천연꿀은 관세율표상 HSK 0409.00-0000호에 분류된다. 2015년 천연꿀의 수입액은 19,310천 달러이며, 수입량은 900톤을 기록하였다. 2016년 7월 기준 수입금액은 3,581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하였고, 중량은 345톤으로 14.8% 감소하였다. 천연꿀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순으로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이다.

[표 27] 천연꿀(HSK 0409.00-0000)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9,310	13.4	3,581	-18.5
1	미국	4,236	22.0	1,477	-31.7
2	뉴질랜드	2,091	41.5	936	12.1
3	캐나다	580	2,507.9	422	209.9

2016년 천연꿀은 수입시 기본세율 20%,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 물량은 20%,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물량은 243%로 추천물량이 아닌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국내 산업보호 품목이다.^㉔ 단,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 TRQ 대상 품목으로 이중 관세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쿼터 내 물량인 225톤과 105톤까지는 0%, 이후의 쿼터 밖 물량에 대해서는 243%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천연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천연꿀의 경우 2016년 기준 WTO의 시장접근물량 420톤과 미국 TRQ 225톤, EU 56톤, 캐나다 105톤으로 총 806톤에 대해 0% 또는 20%의 저율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입수요의 약 89% 수준에 달한다. 한-미 FTA, 한-캐나다 FTA 등의 TRQ 설정 물량은 매년 증량이 되고, 한-베트남 FTA는 해당 관세가 연차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FTA가 국내 수입수요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㉔ 2013년 시장접근물량은 420톤으로 이행률은 09-13년 평균 94%에 달하고 있다(농림수산물부 사전정보 공개자료 참고).

품목구분	HS 코드	품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
천연꿀	0409-00-0000	천연 꿀	지정기관배정/수입권공매/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

[표 28] 천연꿀(HSK 0409.00-0000)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 천 달러, %]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4,395	4,182	765	18.3
	2016. 7	3,581	3,557	1,363	38.3
미국	2015. 7	2,164	2,164	255	11.8
	2016. 7	1,477	1,477	654	44.3
캐나다	2015. 7	422	422	393	93.3
	2016. 7	136	136	120	88.5
뉴질랜드	2015. 7	835	0	0	-
	2016. 7	936	0	0	-

천연꿀의 특혜수입실적은 <표 28>과 같다.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3,557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1,363천 달러, 약 38.3%가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對미 특혜수입은 2016년 7월말 기준 FTA 활용률이 44.3%로 상대적으로 타 품목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對미 수입의 경우 쿼터 밖 물량의 경우 FTA 적용여부가 크게 관세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TRQ 물량이 모두 소진되었으면 사실상 FTA 특혜 적용 대상에 대해서 100%를 활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7월 對뉴질랜드 천연꿀 수입은 전년보다 약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對뉴질랜드 수입 천연꿀은 2016년 양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수요 증가라고 분석된다. 최근 마누카 꿀, 플로폴리스 등 호주, 뉴질랜드의 특산물인 웰빙 건강 보조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추세가 FTA와는 별개로 수입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② 로열젤리

로열젤리는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에 분류되나 수입실적이 저조하고, 원물보다는 가공품으로 주로 수입되기 때문에, 로열젤리 및 벌꿀조제품 등 조제식품이 분류된 HSK 2106.90-9099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5년 로열젤리, 벌꿀 조제품의 수입액은 701,727천 달러이며, 수입량은

48,874톤을 기록하였다. 2016년 7월 기준 수입금액은 469,449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하였고, 중량은 28,990톤으로 1.9% 감소하였다. 로열젤리, 벌꿀 조제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로열젤리, 벌꿀 조제품(HSK 2106.90-9099)의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701,727	6.1	469,449	16.5
1	미국	523,507	8.9	347,908	16.0
2	캐나다	37,843	31.6	24,362	17.0
3	일본	14,004	2.2	14,391	83.9
4	호주	19,176	-3.9	11,669	0.6
5	뉴질랜드	10,267	9.8	9,057	59.8
6	독일	10,989	-27.3	7,678	26.9
7	태국	11,934	-7.3	7,533	8.8

2016년 로열젤리, 벌꿀 조제품은 수입시 기본세율 8%, WTO 협정세율 54%로 대부분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시, 미국 0%, 캐나다 5.7%, 호주 3.2%로 FTA 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하나, FTA에 의해 수입관세가 하락하는 품목이다.

[표 30] 로열젤리, 벌꿀 조제품(HSK 2106.90-9099)의 특혜수입액 및 활용률

(단위: 천 달러, %)

구분		총수입	FTA대상 수입(A)	FTA 특혜 수입(B)	활용률 (A/B(%))
총계	2015. 7	402,856	392,463	202,118	51.5
	2016. 7	469,449	463,663	195,834	42.2
미국	2015. 7	299,761	299,761	144,399	48.2
	2016. 7	347,337	347,337	133,158	38.3
캐나다	2015. 7	20,818	20,818	16,770	80.6
	2016. 7	24,362	24,362	19,315	79.3

로열젤리, 벌꿀 조제품의 특혜수입실적은 <표 30>과 같다. 2016년 7월말 기준 특혜대상 수입은 463,663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195,834천 달러, 약 42.2%가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對미 특혜수입은 2016년 7월말 기준 FTA 활용률이 38.3%로 상대적으로 전년보다 약 9.9% 가량 활용률이 하락하였다. 특혜수입도 전년 동기보다 약 7.8% 감소하였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로열젤리, 벌꿀 조제품의 특혜활용수입은 전년보다 약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활용률도 79.3%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한-미 FTA의 활용 저조 원인으로 해당 품목의 까다로운 원산지결정기준 등 특혜협정 이행에 어려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이상에서 주요 추석 성수품의 FTA 특혜 수입과 활용률 동향을 살펴보았다. 대상은 추석 제수용품으로 육류, 나물류, 견과류, 수산물과 선물용품으로 주류와 건강식품 등 10개 품목 16개 세번이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육류(쇠고기)의 경우 주요 수입국이 호주, 미국, 뉴질랜드 FTA 체결국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관세 혜택 폭은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 캐나다 순으로 설육을 제외한 3개 품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한우 축산업계의 최근 생산 부진으로 수입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나물류의 경우 도라지, 고사리 모두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FTA 활용 또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해서 연차별 관세하락이 양허스케줄에 따라 실행될 경우 국내 시장가격 하락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FTA 이행과는 별개로 수입산과 국내산이 국내 시장내에서 혼재되지 않도록 구별법 및 원산지 표기 등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수산물의 경우 명태는 수입 물량의 약 93%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제한적 물량에만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TRQ를 설정하고 있는 품목이다. 따라서 FTA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냉동 조기 역시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경우 FTA에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역시 FTA가 직접적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선물용품의 경우 주류와 포도주 등은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수입수요 역시 동반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건강식품 중 하나인 꿀 역시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호주, 뉴질랜드 산 생산품이 FTA 특혜활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입액과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하여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추석 명절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전국 6대 주요 도시 8개 전통시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추석 명절에 차례를 준비하는 소비자는 74.4%로, 그 가운데 추석 차례음식을 예법에 따라 차리는 소비자의 비중은 47.6%로 응답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차례상에 수입과일을 올리는 소비자는 23.8%로 조사되었다.²⁾ 명절 음식, 제수용품, 선물 등 추석에 발생하는 대량의 소비 행태 역시 글로벌, 다시 말해 국제 무역의 테두리 속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FTA에 의해 관세가 하락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입가격 하락 및 안정화, 국내 소비 시장 가격하락 기여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② 박미성 외, 앞의 자료

02

[FTA ANALYSIS]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



권민경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1. 한-콜롬비아 FTA 체결의 의의

콜롬비아의 FTA 체결 및 교역현황

콜롬비아는 남미 서북부, 태평양 대서양 연해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 4,600만 명의 중남미 3위 시장이다. 2015년 기준 총 교역액은 1,452백만불이며 무역수지는 806백만불에 달한다. 콜롬비아는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주요 신흥시장국 “시베트(CIVETS)^①”의 일원이며 중남미의 유망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부국으로 중남미 국가 중 주요 교역국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FTA 확대 정책을 통해 국제무역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2011년 EFTA 4개국과 캐나다, 2012년 미국, 2013년 EU와의 FTA를 차례로 발효하며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17.7%(2011년), 48.2%(2012년), 62.4%(2013년)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①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 등을 일컫는 말임.

미국, EU 양대 경제권과의 FTA는 지난 2년간 콜롬비아의 FTA 교역비중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곧 발효를 앞둔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을 포함할 경우 FTA 교역비중은 6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협상중인 일본, 터키, 중국 등과의 FTA가 향후 발효되면 교역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콜롬비아가 FTA를 통해 확보한 경제영토는 2011년 전 세계 GDP의 9.9%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주요 경제권인 미국, EU와의 FTA 발효로 2년 만에 무려 45.6%가 증가하여 양국의 FTA 발효 직후인 2013년에 세계 GDP의 55.5%를 차지하였다. 현재 협상 진행중인 일본, 터키,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 콜롬비아의 GDP 성장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콜롬비아 FTA 체결현황

체결협정	체결국가	발효 국가
안데안공동체(CAN)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발효
G3 협정	멕시코	
콜롬비아-CARICOM	카리브공동체 가입국	
CAN-MERCOSUR	메르코수르 가입국	
콜롬비아-칠레 FTA	칠레	
콜롬비아-중남미 3개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캐나다 FTA	캐나다	
콜롬비아-미국 FTA	미국	
콜롬비아-EU	EU	
콜롬비아-태평양동맹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한국	한국	서명
콜롬비아-파나마	파나마	
콜롬비아-터키	터키	
콜롬비아-이스라엘	이스라엘	
콜롬비아-일본	일본	협상중
콜롬비아-터키	터키	
콜롬비아-중국	중국	

자료: 외교부 FTA 정책과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교역현황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교역실적은 2015년 기준 약14.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규모는 2006년 10억 달러에 진입한 이후 2014년 20억달러를 초과하는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15년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수출은 2011년 16.1억 달러로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나 이후 주력 수출품의 부진으로 점차 감소하다 2015년 11.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 2014년 6.1억달러로 최고실적을 경신한 이후 원유 및 기초 철강제와 금속류의 급감으로 2015년 수입실적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한-콜롬비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연도	수입	수출	무역수지
2011	380	1,614	1,234
2012	415	1,468	1,053
2013	207	1,342	1,135
2014	608	1,509	901
2015	323	1,129	806

자료: 무역협회

우리나라는 주로 콜롬비아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및 자원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수출실적 상위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으로 총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한국의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불, %]

품목	2014	2015	2016(1~6월)		
	금액	금액	금액	증감율	비중
승용차	389	330	109	-36.6	24.6
자동차부품	156	119	59	-11.3	13.3
합성수지	149	93	33	-36.2	7.4
타이어	83	48	21	-12.9	4.7

품목	2014	2015	2016(1~6월)		
	금액	금액	금액	증감율	비중
기타석유화학제품	57	56	20	-42.2	4.5
공기조절기	18	14	16	94.8	3.6
의약품	21	23	14	0.9	3.2
아연도강판	27	25	12	-17.1	2.7
섬유기계	29	19	9	-25.4	2.0
기타플라스틱제품	18	2	9	-3.7	2.0
소계	947	747	302	-25.6	68.2
총계	1,509	1,129	443	-24.9	100

자료: 무역협회

주: 품목은 MTI 4단위 기준,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임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주요 수입 품목은 커피류, 동괴 칩 스크랩, 합금철, 유연탄 등 1차 원재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수입 대비 수입 상위 5대 품목이 수입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품목의 원자재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한국의 對콜롬비아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불, %]

품목	2014	2015	2016(1~6월)		
	금액	금액	금액	증감율	비중
커피류	83	49	43	-11.3	37.0
동괴 및 스크랩	17	20	25	25.2	21.5
합금철	89	23	21	-8.6	18.1
유연탄	2	2	10	550.6	8.6
농약	10	7	5	-34.2	4.3
화초류	5	3	3	8.5	2.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1	4	3	-26.2	2.6
무선통신기기부품	1	0	1	132.9	0.9
당류	2	1	1	20.2	0.9
꿀 및 로얄제리	1	0	0	134.2	0.0
소계	221	217	112	2.7	96.6
총계	608	323	116	-26	100.0

주: 품목은 MTI 4단위 기준,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임

2.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과 수출유망 품목

한·콜롬비아 FTA 개요

한-콜롬비아 FTA는 2008년 11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2009년 12월 협상을 시작으로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2013년 2월 21일 자유무역협정을 정식으로 서명하면서 우리나라와의 10번째 FTA 체결국이 되었다.

한-콜롬비아 FTA 추진 경과

- 2009년 8월 한-콜롬비아 FTA 타당성 분석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시행
- 2012년 6월 25일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계기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
- 2013년 2월 21일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 2014년 4월 29일 한-콜롬비아 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 2016년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 발효

콜롬비아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걸쳐있는 지정학적 위치상 북중미와 남미 시장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특히 아시아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로서는 칠레, 페루에 이은 중남미와의 3번째 FTA 체결로 중남미 시장에서 교역규모 14.9%의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은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콜롬비아 측이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상적인 FTA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품양허의 주요내용과 FTA 활용 유망품목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양허 부분에서는 두 나라가 교역중인 품목에 대해 대부분 10년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내 양허철폐 수준은 품목수 기준 96.1%, 콜롬비아는 96.7%의 양허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발효 즉시 관세철폐의 수준은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82.5%, 콜롬비아는 60.6%로 우리측 철폐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콜롬비아의 즉시철폐 4,390개 품목 중에서 유관세 품목이 4,125개로 전체 품목수의 57%를 차지하여 유관세 즉시철폐의 비중이 높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5] 한-콜롬비아 FTA 전체 품목 양허수준

양허단계	우리 양허		콜측 양허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즉시철폐	9,787	82.38%	4,390	60.64%
무관세	1,932	16.26%	265	3.66%
3	268	2.26%	33	0.46%
5	670	5.64%	1,546	21.35%
5년 소계	10,725	90.27%	5,969	82.46%
7년	136	1.14%	503	6.95%
9년			1	0.01%
10년	558	4.70%	529	7.32%
10년 소계	11,419	96.11%	7,003	96.73%
10년 초과	304	2.56%	184	2.54%
TRQ	5	0.04%	6	0.08%
양허제외	153	1.29%	47	0.65%
계	11,881	100.00%	7,240	100.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0 10단위 기준, (콜롬비아) HTSC 2007 10단위 기준
(단, 농산물은 8단위)

** 수입액 : 2007-2009 3개년 평균

***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은 별도 표시 없이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또한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의 콜롬비아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하여 콜롬비아가 기체결한 FTA(미국, EU) 수준의 양허를 확보함으로써, 콜롬비아 시장 내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35%)의 경우 전체품목에 대하여 10년 철폐로 미국 및 EU FTA 발효 이후 수출감소 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콜롬비아 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중형 디젤 승용차(1,500-2,500cc, SUV)에 대하여 9년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미국(10년 철폐) 및 EU(7년 철폐)와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5년 철폐, 타이어 및 섬유 역시 5년 철폐를 확보하여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콜롬비아 FTA의 주요 품목별 양허유형은 [표6]와 같다.

[표 6] 한-콜롬비아 FTA 주요 품목별 양허 유형

한국 양허		양허유형	콜롬비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커피원두, 볶은 커피, 철광, 동/알루미늄/아연 괴 및 제품, 금, 은, 비금속광물, 흑연, 석탄, 운 활유, 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타이어,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섬유사, 직물 류, 의류(모피, 양복, 언더셔츠 등), 판유리, 손목 시계, 완구류 등	9,787	즉시 철폐 (0)	4,390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도 금강판, 전자레인지, 자동차부품(기어박스, 방 열기), 정밀화학원료, 기타고무제품, 식물류(재 생직물, 편직물 등),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전동기, 변압기, 밸브, 베어링, 커피, 라면, 음료, 비스킷 등
커피조제품, 연어, 밀, 코코아조제품, 원유, 자 동차부품 등	268	3년 철폐 (3)	33	카네이션, 기타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등
페로니켈, 우황, 열대어, 어육, 장미, 국화, 백합, 매니옥, 바나나, 애버카도우, 효모류, 빙과류, 위스키, 제재목, 단판 등	670	5년 철폐 (5)	1,547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컬러TV, 에어컨, 의류, 섬유류(폴리에스터, 나일론, 화섬 필라멘트사 등), 장미, 국화, 바나나 등
	10,725	5년 철폐 소계	5,970	
참다랑어, 골뱅이, 뱀장어, 기타절화, 파인애플, 망고, 수박, 두리언, 과일주스, 스위트, 남성바 지 등	136	7년 철폐 (7)	503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 폴리 에스터 직물, 화장품, 안전유리, 산업용 차량 타 이어, 기타 화초, 딸기, 당근 등
-	-	9년 철폐	1	중형 디젤 승용차(4X4)
냉동감자, 돼지고기, 양고기, 오징어, 요구르트, 조란, 건조포도, 멜론, 살구, 자두, 옥수수, 소시 지, 소스류, 잎담배, 제조담배, 니켈괴, 합판, 건 축용 목제품 등	558	10년 철폐 (10)	363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일부 세탁기, 브라 운관, TV,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신발, 완구 류, 두류, 감, 과일주스 등
	11,419	10년 철폐 소계	7,003	
-	-	10년 철폐 (APB)	15	돼지고기, 소시지, 사료 등
닭고기, 오리고기, 표고버섯, 감, 조제저장 송 로, 파티클보드, 섬유판, 일부 합판	29	12년 철폐 (12)	18	냉동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사료용첨가제, 냉 장고, 냉방기, 세탁기 등
난황, 계란	4	12년 철폐 (2년 유예) (12-A)		
냉동 닭가슴, 냉동 닭날개	2	13년 철폐 (13)		
건조 표고버섯, 필터담배 등	4	15년 철폐 (15)	35	요구르트, 콩, 사탕수수당, 잎담배 등
		15년 철폐 (APB)	70	사료, 옥수수가루, 참기름, 돈지름

한국 양허		양허유형	콜롬비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닭고기(다리, 날개, 가슴), 치즈, 복숭아, 단감, 딸기, 생강, 꿀 등	256	16년 철폐 (16)	38	버터, 치즈, 과일주스, 인조꿀, 만다린 등
병동잣,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2	16년 철폐 (2년 유예) (16-A)		
신선포도	1	16년 철폐 (계절관세) (16-S)		
만다린	1	16년 철폐 (ASG)		
		18년 철폐	1	미절단 닭고기(병동)
		18년 철폐 (5년 유예)	2	닭고기 절단육 및 설육(신선, 냉장, 병동)
소 식용설육	3	19년 철폐 (19)	1	소 식용설육
정육	2	19년 철폐 (ASG)	2	정육
		20년 철폐 (APB)	2	미절단 닭고기(신선, 냉장) 등
탈·전지분유	5	TRQ	6	탈·전지분유
쇠고기, 밀크·크림, 연유, 감자, 마늘, 양파, 고추, 오렌지, 감귤, 사과, 배 인삼류, 냉동명태, 냉동민어 등	137	양허제외 (E)	42	쌀, 쇠고기, 우유, 분유, 고추, 마늘, 양파, 녹두, 팥, 오렌지, 감귤류, 정당 등
		양허제외 (APB)	5	밀크·크림, 버터, 전분, 사탕수수
쌀 및 쌀 관련 품목	16	협정제외 (X)		
	11,881	총계	7,24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APB(Andean Price Band System): 콜롬비아측 안데스가격밴드 적용유지 품목, 고정관세만 관세철폐기간에 걸쳐 균 등 철폐(변동관세는 유지)

* ASG(Agricultural Safeguard):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품목

* 유예: 관세철폐기간 초기 해당 유예기간 동안 관세철폐 의무 배제(잔여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 양허제외: 양허표상 기준세율 유지

* 협정제외: FTA 협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품목(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그리고 양측은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액 기준으로 현재 교역중인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0년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9.9% 수준이며 콜롬비아측은 100%의 관세가 철폐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농산물 분야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농산물 세이프가드·관세율할당·계절관세·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예를 들어, 쌀(협정에서 배제되는 품목)·쇠고기·분유·고추·마늘·양파·인삼류 등 151개(전체 농산물 대비 10% 차지) 품목을 양허 제외한다. 이와 함께 720개 주요품목(품목비중 36.9%)에 대해서도 10년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토록 하였다.

콜롬비아측의 주요 관심품목인 커피류는 즉시철폐 또는 3년내 관세가 철폐되고, 절화는 3년에서 7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콜롬비아로의 수출실적이 있거나, 앞으로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라면, 음료, 비스킷 등 24개 품목은 즉시철폐를 확보하였다.

주의할 것은 콜롬비아의 2010년 MFN 관세 대폭 인하조치로 FT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협상을 통해 FTA 특혜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였다. 따라서 FT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MFN 세율보다 0.5%p 낮은 세율을 FTA 특혜세율로 산정하기로 합의 하여 이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1년에서 최대 4년간 FTA 특혜를 상실하는 총 2,232개 비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FTA 세율보다 MFN 세율이 높은 기간동안 MFN 세율보다 0.5%p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표 7] 승용차용 타이어(HS 4011101000)의 특혜세율 적용 사례

	발효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MFN 세율	10	10	10	10	10	10
FTA 세율	15	12	9	6	3	0
특혜세율 적용	-	(10-0.5)=9.5	9	6	3	0

- ② 쇠고기중 뼈없는 쇠고기 2개, 설육 3개 등 5개 세번은 19년 관세철폐로 양허하였으며, 뼈있는 쇠고기 2개 세번에 대해서는 19년간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
- ③ 탈·전지 분유 5개 세번에 대해서는 연간 100톤의 관세율할당 제공(쿼터 내 물량 무관세 수입 / 증량 없음 / 콜측도 우리와 동등한 조건으로 TRQ제공)

3.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의 구성과 특징

일반규정의 구성

상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된다.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대체로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이나 광산물 등 1차 상품이 주로 해당되며, 역내산 원재료만 사용하여 가공한 물품도 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실질적 변형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외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국내 원재료를 혼용하여 물품을 가공·생산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가공생산품이 이에 해당된다.

실질적 변형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으로 세분할 수 있다. 원재료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이와 같은 세가지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실질적 변형기준의 하나인 세번변경기준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품 세번이 상품의 세번과 일정수준 상이한 경우 상품이 생산된 국가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수준은 품목에 따라 HS 2단위, 4단위, 6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FTA에 따라 각기 다르다.

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누적조항 등이 있다. 예를들어 누적조항^④은 상대국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 최종제품 생산국의 원산지 물품 또는 재료로 인정하여 원산지상품의 가능성을 넓혀 준다.

④ 누적조항은 크게 3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회원국간에 수입된 부품 사용을 허용되는 양자누적, 일정비율 이하의 제3국산 부품 사용을 인정하는 유사누적, FTA에 의해 창설된 전체 특혜지역이 단일 영토로 인정되어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공정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완전누적 조항이다.

[표 8]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규정

구분	주요 내용		
완전생산 기준 (제 3.2조)	해당 제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부가 가치기준 (제3.3조)	공제법	역내가치비율	$\frac{\text{조정가치}-\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집적법	역내가치비율	$\frac{\text{순원가}-\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순원가}} \times 100$
중간재 조항 (제3.5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A가 다른 제품B의 재료로 사용된 경우, B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A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원산지 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인정		
누적조항 (제 3.6조)	상대국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 최종제품 생산국의 원산지 물품 또는 재료로 인정		
최소허용 기준 (제3.7조)	<p>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의한 세번변경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의 가치가 제품가치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p> <p>단, 농수산물(HS 1-24류)의 경우 최종제품과 비원산지 재료의 6단위 세번이 다른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일부 동식물성 유지생산물(HS 15류)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이 비적용</p> <p>*섬유(HS 50-63류)는 제품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직물 또는 원사의 중량이 최종제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재료 중량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p>		
대체가능 상품 (제3.8조)	석유·고철 등과 같이 대체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 및 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인정		
세트물품 (제 3.10조)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전체 세트가격의 15%이하인 경우에는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간접재료 (제 3.13조)	제품 생산시 사용되었으나, 최종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연료, 도구, 장비 등의 간접재료는 원산지 판정시 고려		
직접운송 (제 3.15조)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 당사국간에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를 인정 단, 제3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① 제3국에서 운송상 이유로 하역·분할, 재선적 또는 물품상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상의 추가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②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③ 제3국에서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소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		

한-콜롬비아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의 특징은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표 9] 주요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	선택기준(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30~45% 등)으로 규정하거나 보다 완화된 기준(6단위 세번변경)으로 규정함.
(완성차)	한·미 FTA와 동일하게 순위기법을 선택기준으로 수용하되, 공제법에 대해 한·미 FTA 보다 낮은 비율로 규정함.
(육류·낙농품·곡물)	엄격한 원산지기준(완전생산)으로 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함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중에서 원자재 해외 조달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계류·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는 선택기준(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30~45% 등)으로 규정하거나 보다 완화된 기준(6단위 세번변경)으로 규정 하였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승용차는 역내가치비율이 35~45%이며, 전기·전자·기계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들이 4~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비율 30~45%이다. 그리고 정밀·석유화학의 경우 4~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비율 30~50%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섬유 및 의류의 경우 대부분 원사기준을 적용하여 다소 엄격한 원산지결정 기준을 채택하였다. 농·수·축산물 역시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하도록 유도하였다. 주요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10] 한-콜롬비아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	HS 2단위	원산지 기준
자동차	87	완성차 RVC 35%(집적법)/45%(공제법)/35%(순원가법)이상 자동차 부품 등은 CTH 또는 RVC 30-40%이상
전기·전자	85	진공청소기, 면도기, 헤어드라이기 등 대부분이 CTH 또는 RVC 45%(공제법) 이상 전화기, 스피커, 이어폰, 축전지 등은 CTSH
기계	84	컴퓨터, 에어컨, 건설중장비, 베어링 등: CTH(CTSH) 또는 RVC
섬유 및 의류	50-60 61-63	대부분 원사기준 적용(또는 CC/CTH를 적용하되 사직물은 역내 산물 사용하도록 규정) *포켓,지퍼 등 약세사리의 경우 비적용 견,면,모, 마 등의 사 및 직물:CTH/인조 섬유:대부분 CC 또는 CTH/의류:CC
신발	64	기본적으로 CTH, 일부 품목에서는 RVC 60%을 선택 적용 단, 역외산 갑피를 재료로 사용한 세번변경은 불인정
정밀화학	28-38	무기·유기화학물 등: 대부분 CTH(일부 CTSH) 비료:CTH 또는 RVC 50%(공제법) 이상 비타민·호르몬 등:CTH 또는 RVC 30%(집적법)/40%(공제법) 이상 의약품, 화장품류: 대부분 CTH 또는 RVC 40%(공제법) 이상
석유화학	27,39,40	석유, 광물, 플라스틱, 고무 등: 대부분 CTH 플라스틱 판·필름 등 일부 플라스틱 제품:CTH 또는 RVC 35%(집적법)/45%(공제법)이상
철강	72-73	철강, 철강제품: 대부분 CTH 단, 스테인레스강 평판압연제품은 CTH 또는 RVC 40%(공 제법) 이상, 일부 철강제 방열기는 CTH 또는 RVC 30%(집적 법)/40%(공제법) 이상
비철금속	74-81	동·니켈·알루미늄·아연·주석 등:CTH 기타 비금속:CTSH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의구성

한-콜롬비아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협정들과 비교할 때 가공공정기준이나 특수형태의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세번변경 기준을 중심으로 간단한 형태의 규정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HS 6단위 기준 총 5,205개 세번 중 세번변경기준이 전체의 66.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택기준 24.96%, 부가가치기준이 0.56% 순으로 한·콜롬비아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콜롬비아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으로 결합기준을 택하지 않고 선택기준만 채택하고 있어 여타의 FTA와 비교할 때 상당히 완화된수준의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표 11]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산업별 분포도

[단위: 개수, %]

구분	HS 분류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합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1차상품	01-14	361	6.94	189	3.63	-	-	-	-	550	10.57
가공1차상품	11-24	48	0.92	296	5.69	1	0.02	4	0.08	349	6.71
가공광물	25-28	-	-	301	5.78	-	-	12	0.23	313	6.01
고무화학	29-40	-	-	644	12.37	-	-	188	3.61	832	15.98
가죽제품	41-43	-	-	69	1.33	-	-	-	-	69	1.33
종이·목재	44-49	-	-	223	4.28	-	-	12	0.23	235	4.51
의류·직물	50-67	-	-	842	16.18	-	-	1	0.02	843	16.20
비금속광물	68-71	-	-	189	3.63	-	-	7	0.13	196	3.77
금속제품	72-83	-	-	432	8.30	-	-	131	2.52	563	10.82
일반기계	84	-	-	220	4.23	-	-	287	5.51	507	9.74
전기기계	85	-	-	35	0.67	-	-	229	4.40	264	5.07
운송기기	87	-	-	1	0.02	28	0.54	45	0.86	74	1.42
기타운송기기	86,88-89	-	-	-	0.00	-	-	56	1.08	56	1.08
정밀기계	90-91	-	-	4	0.08	-	-	190	3.65	194	3.73
기타 제조품	92-97	-	-	23	0.44	-	-	137	2.63	160	3.07
합계		409	7.9	3468	66.6	29	0.6	1,299	25	5,205	100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기초농축산물(제1류~제14류)의 경우 HS 6단위 기준 550개 품목중 361개 품목이 완전생산기준을 택하여 비체약국 재료의 유입을 원천차단하고 189개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가공농수축산물(제15류~제24류)의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공농축수산물의 세번변경기준은 대부분 엄격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거나 주요원재료는 원산지재료일 것을 제한하는 제외규정을 포함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원산지기준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등이 분류되는 제87류는 한-콜롬비아FTA에서 유일하게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⁵⁾ 한-콜롬비아 FTA는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정 방식으로 직접법·공제법·순원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직접법과 공제법의 경우 품목에 따라 30%~50%범위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중남미국가의 여타협정과 달리 한-미 FTA처럼 순원가법을 도입한 특징을 가진다.

한-콜롬비아 FTA는 세번변경기준이 품목별원산지기준 구성의 6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품목이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게 된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HS 2단위, 4단위, 6단위의 세번변동을 요하는 경우와 이러한 변동내에서 재료 중 일부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외세번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한-콜롬비아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3,468개로 이 중에서 투입원재료 중에서 일부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24%(839개)를 차지한다.

이는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원산결정기준을 구성하되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세번변경기준의 비중을 다소 높게 설정하여 비원산지재료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섬유 및 의류의 제외세번 비중이 높아 사실상 원사기준을 택한것과 동일한 결과로 원산지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⁵⁾ 다만 제21류에서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이 1건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표 12] 한-콜롬비아 FTA 세번변경기준의분포

(단위: 개, %)

구분	2단위 세번변경		4단위 세번변경		6단위 세번변경		소계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기초농축산(1-14)	203	28	-	-	-	-	203	28
가공농축산(15-24)	153	44	42	8	6	1	201	53
광물성 생산품(25-27)	-	-	135	-	-	-	135	0
화학공업 생산품(28-40)	14	12	461	-	323	-	798	12
가죽제품(41-43)	-	-	69	-	-	-	69	0
나무제품(44-49)	75	-	143	5	-	-	218	5
섬유 및 의류(50-63)	76	428	-	292	-	-	76	720
신발류 등(64-67)	-	-	25	21	-	-	25	21
석재와 귀금속제품(68-71)	29	-	160	-	-	-	189	0
비금속제품(72-83)	-	-	384	-	48	-	432	0
기계류등(84-85)	-	-	8	-	247	-	255	0
운송기기(86-89)	-	-	-	-	1	-	1	0
기타제품(90-97)	-	-	27	-	-	-	27	0
소계	550	512	1454	326	625	1	2629	839
비중	21	61	55	39	24	0.1	100	100

주: 구분란의 불포함과 포함은 제외세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의미

또한 한-콜롬비아 FTA는 동일 세번에 규정된 복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엄격한 조합기준은 채택하지 않고 복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가 부여되는 선택기준만 규정하였다. 여타의 FTA가 대체로 조합기준과 선택기준을 모두 규정하는 것과 달리 한-콜롬비아 FTA는 선택기준만 규정하여 원산지기준을 완화하고 간결하게 하였다.

아울러 한-콜롬비아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택기준의 종류는 5가지로 2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6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단위 세번변경 또는 가공공정, 6단위 세번변경 또는 가공공정이 그것이다.

선택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1299개로 이중 92%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공공정기준을 선택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제27류가 유일하고, 선택기준을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품목은 제84류, 제85류, 제90류로 나타난다.

[표 13] 한-콜롬비아 FTA 선택기준의 분포

(단위: 개, %)

구분	CC or RVC	CTH or RVC	CTSH or RVC	CTH or 가공공정	CTSH or 가공공정	소계
16류	4					4
27류				5	7	12
29류		45				45
30류		31				31
31류		23				23
32류			18			18
33류		21				21
34류		1				1
35류		2				2
37류		3				3
38류		1				1
39류		1	19			20
40류		23				23
48류	12					12
64류		1				1
68류		4				4
70류		3				3
72류		18				18
73류	13					13
82류		64				64
83류		36				36
84류		278	9			287
85류		213	16			229
86류		23				23
87류		45				45
88류		15				15
89류		18				18
90류		141				141
91류		49				49
92류		17				17
93류		18				18
94류		25	3			28
95류		28				28
96류		39				39
97류		7				7
소계	29	1,193	65	5	7	1,299
비중	2.2	91.8	5.0	0.4	0.5	100.0

주: 세번변경기준에 있어 제외세번의 포함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2단위, 4단위, 6단위만 고려

용어설명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① HS 2단위 변경 기준(ICC, change of chapter):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② HS 4단위 변경 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③ HS 6단위 변경 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역내 부가가치기준

[RVC,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합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산방법에는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이 주로 사용된다.

가공공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중 한 종류로서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생산공정을 거쳐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번 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는 좁은 편이며, 어류·식물성 생산품·석유제품·화학제품·플라스틱·섬유제품 등에 채택하고 있다.

4. 한-콜롬비아 FTA 활용방안

지난 몇 년간 콜롬비아의 내수시장은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기류에도 불구하고 내수소비는 활기를 잃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EU 등과의 FTA 발효 이후 안정적 내수성장세에 지속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투자도 본격화되고 있어 신흥 수출시장으로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한-콜롬비아 FTA는 양국간 교역구조를 반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FTA 상품양허를 협상하였다. 따라서 콜롬비아로부터는 커피, 원유 등의 1차산품을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저렴하게 수입하고 고관세가 부과되었던 공산품은 콜롬비아측의 관세철폐에 따라 우리상품의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1차산품이 풍부한 콜롬비아 시장환경을 우리의 자본력 및 기술력과 결합하여 global value chain을 형성함으로써 우리상품의 세계화와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콜롬비아 FTA가 여타의 FTA와 달리 대부분 단순한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이 복잡하지 않고 엄격하지 않게 구성된 특징을 십분 활용하여 아직 협상단계에 있는 일본 및 중국 상품과의 시장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 FTA 활용전략이 요구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콜롬비아 수입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미국 및 중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한-미 FTA 및 한-중 FTA 등 기체결 FTA 활용하여 3국간의 FTA를 통한 콜롬비아 시장 진출 전략도 고려할 수 있겠다.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EXPERT

한-남미 3개국(칠레,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 FTA 의미와
체결국 거시경제 운영 현황과 변화 전망:

2015년-2016년을 중심으로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한-콜롬비아 FTA 발효 기념]

중남미 경제환경 분석과 한-콜롬비아 FTA 시사점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수석연구원

FTA를 활용한 기계산업의 중남미지역 진출확대

박성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진흥본부/통상팀 과장

01

[FTA EXPERT]

한-남미 3개국

(칠레,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

FTA 의미와 체결국 거시경제

운영 현황과 변화 전망

- 2015년~2016년을 중심으로 -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2016년 7월 중순, 유일하게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비준 완료로 계기로 드디어 우리나라는 대중남미(총33개국) 지역에서 경제영토를 3개국으로 확대하였다. 칠레, 페루를 이어 3번째로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국가가 되면서 한국의 대중남미 FTA 역사는 점차 자신감을 얻고 있으며 이는 현재 협상 중인 한-에콰도르, 한-중미(SICA: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그리고 한-멕시코 FTA 협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점차 태평양 유역을 따라 남미-중미-북미 지역으로 확대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태평양 중심 중남미를 넘어,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회원국)가 참여하는 대서양 중심 중남미로의 방향 전환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전망과 경제 영토 확대에 대한 기대는 한-콜롬비아를 통해 가능하다(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해양영토로 포함한 국가 특징). 특히 경제연구 및 세

계무역 관련 분석을 전담하는 다양한 국제기구들(ECLAC)의 이들 남미 3개국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분석은 향후 한-중남미 3개국 FTA를 통한 시장 진출에 많은 안정감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안정감과 관계 확대에 대한 자신감은 이들 남미 3개국이 우리나라와는 오랜 우방국으로서 각자 근50년이 넘는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근래에는 이들 국가들 모두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지역을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로 받아들이면서 태평양-아시아 시장을 향한 무역과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는 흐름도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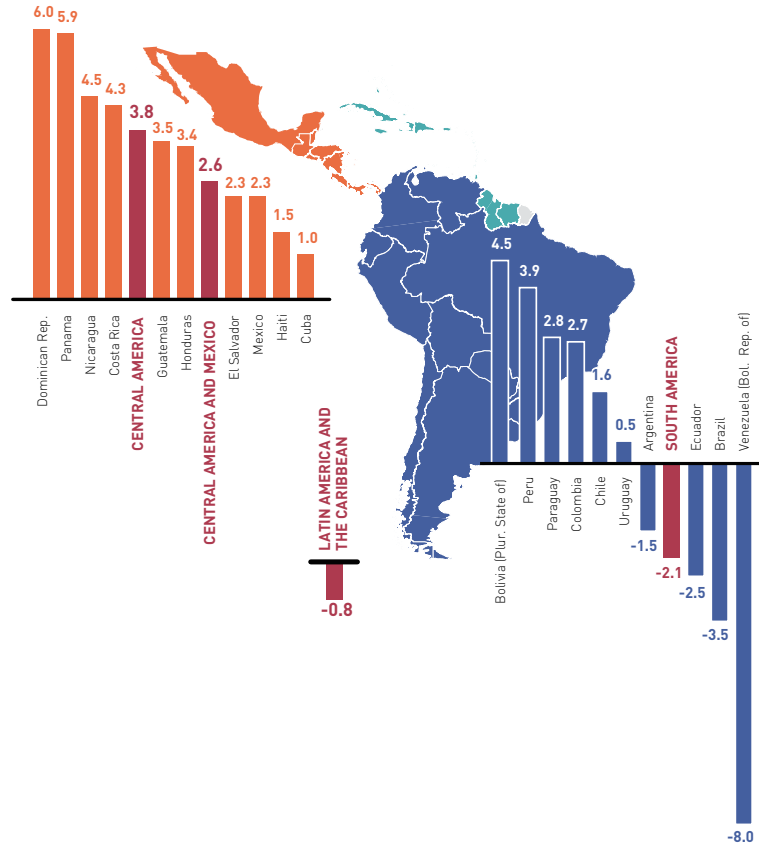
중남미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남미 3개국은 200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 여진과 경제 불안정, 다양한 경제적 악조건(원자재 가격 하락, 농산물 수출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그림 1 참고)이나 시장의 안정,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 등에서 양호한 성적들을 내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중남미 내에서도 건설한 중견국가들이자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부국들이며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이들 3개국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 회원국인 멕시코와 더불어, 중남미-태평양 지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을 리드하는 국가들로서 미래 지역통합을 통한 성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나라가 다자협정 성격을 지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칠레, 페루는 이미 회원국이며 콜롬비아는 가입 희망국)'가 입을 희망한다면 실질 협상 과정에서 협상 대상국들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긍정적 역할을 해 줄 '지렛대'국가들이기도 하다.

2016년 ECLAC(유엔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는 이들 3개국에 대한 거시경제(macro economics) 분석과 전망 및 평가에서 여타 다른 중남미 대서양 국가들(대표적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과 비교해 태평양 유역의 남미 3개국은 중남미지역 경제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대외경제 취약성(e.g. 원자재 가격하락과 경제 성장 하락 비례 구조 등) 상황에서도 다소 양호한 경제지표를 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림 1>

중남미 국가들의 GDP 성장 예상 비율(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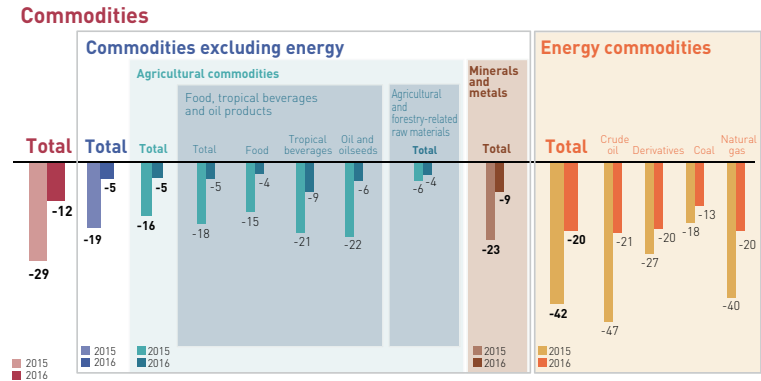


출처: ECLAC 2016, p. 46. 선택 인용함.

위의 <그림 1>에서 보듯이 에너지(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나 1차 농작물 상품 포함 원자재 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브라질(-3.5% 예상),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8% 하락 예상)와는 달리, 페루(약 4%), 콜롬비아(약 3%), 칠레(약 2%)의 경우는 +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15년 수준에서 하락했던 주요 수출 상품들에 대한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 가겠지만 2016년 다소 반등될 수 있다는 전망과 분석은 이들 자원에너지 부국인 3개국 입장에서 보면 이전과 달리 에너지 부문과 수출에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자원개발 및 이의 해외투자 증가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고).

〈그림 2〉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수출상품 가격지수 연간 변화율(2015 기준 2016년 예상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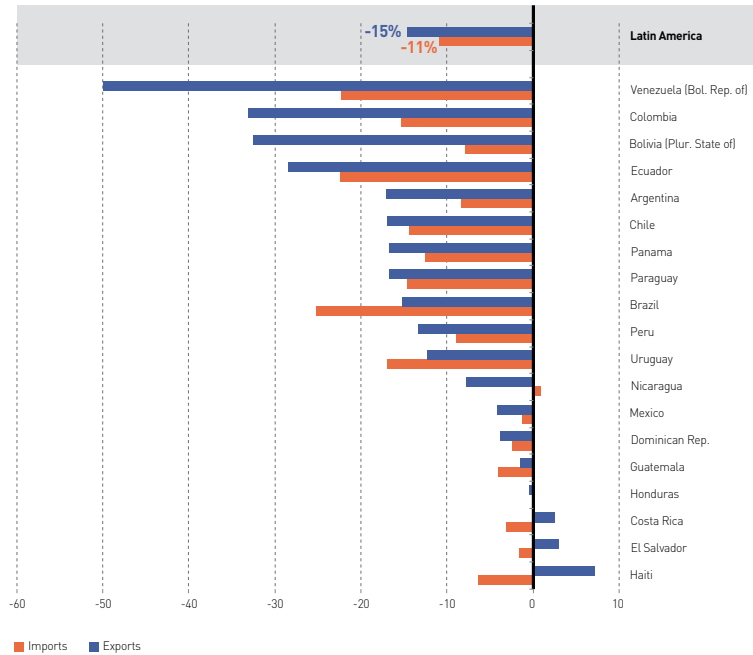


출처: ECLAC 2016, p. 26 인용함.

〈그림 2〉를 해석해 보면, 2015년-2016년 사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농산품, 광물, 에너지 부문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점차 그 폭은 줄어들 것(총 -29%에서 -12%로 적자폭 감소 예상)으로 예상되며 비록 부문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적자폭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약 22% 적자 감소)이 있다. 부문별로 보면 2015년보다 다소 양호하겠지만, 2016년 올해에도 3개국의 농산물, 광물, 에너지 수출 관련 무역수지는 악화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특히 광물자원 수출 비중이 큰 칠레와 페루는 2015년 -5% 적자에서 다소 회복된 -2% 적자 국면으로 예상이며, 농산품 수출 비중이 큰 콜롬비아의 경우 2015년 -3% 무역수지 적자에서 다소 회복한 -2% 적자 국면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ECLAC 2016: 29).

2015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무역 규모, 특히 일반상품(goods) 수출입의 경우 수출은 거의 -15%, 수입은 -11%를 기록하며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최대로 하락해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ECLAC은 이러한 추세는 비록 수치는 다소 감소하겠지만 2016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p. 30).

〈그림 3〉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상품 수출과 수입 연간 변화
(2014년 대비, 2015년 변화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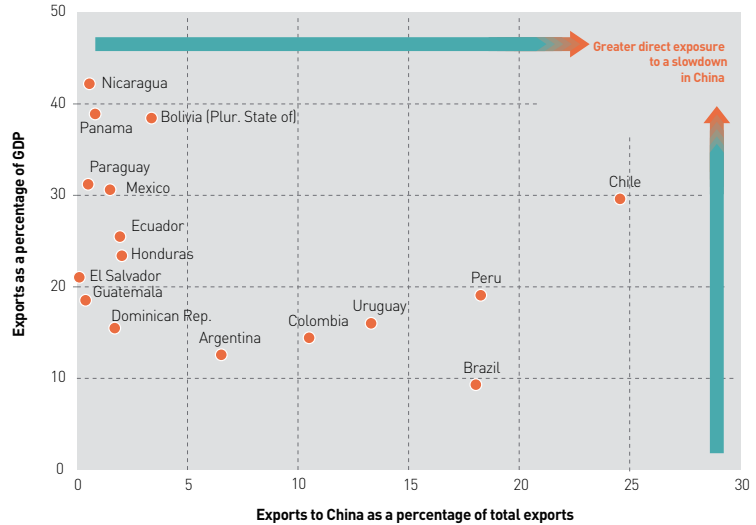
출처: ECLAC 2016, p. 30 인용함.

위 〈그림 3〉을 보면, 2015년 상품수출 마이너스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들은 베네수엘라로 거의 -40%에 달했다. 특히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의 경우 상품 수입 적자보다 상품 수출에 대한 적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브라질 예외).

콜롬비아, 칠레, 페루의 경우 국가별로 수출입 적자 폭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3개국 모두 상품 수출 부문에서 더 많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 콜롬비아 경우는 비록 수출과 수입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칠레, 페루와는 달리 상품 수출과 수입 간 불균형이 더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3개국의 수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집중 현상은 이들 국가들의 또 다른 대외무역취약 요소로 등장해 있다.

〈그림 4〉

라틴아메리카/카리브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
 (2015, 총수출 및 총GDP에서 %)



출처: ECLAC 2016, p. 33 인용함.

〈그림 4〉에서 보듯이, 남미 3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총수출 %에서 중국 수출이 낮은 국가 순서대로 하면, 콜롬비아는 약11%, 페루는 약18% 그리고 가장 중국으로 많은 수출을 하는 칠레는 거의 25%에 달함)은 이들 국가들의 대외 취약성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변수 혹은 취약 구조들의 변화에 따라 2016년 이들 3개국은 다소 나아지겠지만, 2016년에도 이들 국가들에서 경상수지적자는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여타 다른 거시경제(외채, 해외자본유입)에도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와 같은 대외적 변수들과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이들 남미 3개국 시장 진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경제 요소는 이들 국가들의 국내경제 변화 특히 물가, 인플레이션 부문에 대한 분석들과 전망일 것이다. ECLAC은 2013년-2016년 남미 국가들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변화 분석을 통해 몇몇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표 1 참고).

〈표 1〉

남미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지수 연간 변화 비교
(2013.12-2016.05, %)

	To December 2013	To December 2014	To December 2015	To May 201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7.5	9.4	16.5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xcluding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5.0	6.3	7.9	8.9
South America	9.2	12.0	23.1	...
South America (excluding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5.5	7.5	10.6	11.7
Argentina	10.9	23.9	27.5	43.1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6.5	5.2	3.0	5.0
Brazil	5.9	6.4	10.7	9.3
Chile	3.0	4.6	4.4	4.2
Colombia	1.9	3.7	6.8	8.2
Ecuador	2.7	3.7	3.4	1.6
Paraguay	3.7	4.2	3.1	3.5
Peru	2.9	3.2	4.4	3.5
Uruguay	8.5	8.3	9.4	11.0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56.2	68.5	180.9	...

출처: ECLAC 2016, p. 50 인용함.

〈표 1〉에서 살펴보듯이, 남미 개별 국가들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다르지만 증가폭이 큰 국가들로 아르헨티나(2015년 12월 거의 28%), 베네수엘라(2015년 12월 181%)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위기를 경험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 중이다. 다만 칠레는 2013년 3%에서 2016년 5월에 다소 오른 4.2%로, 콜롬비아는 2013년 낮은 상태의 물가 관리에서 2016년 5월에는 상승폭이 커진 8.2%로 약간 불안하지만 여전히 한자리수 내에서 그리고 페루의 경우도 2013년 2.9%에서 2016년에는 3.5%에서 안정적으로 소비자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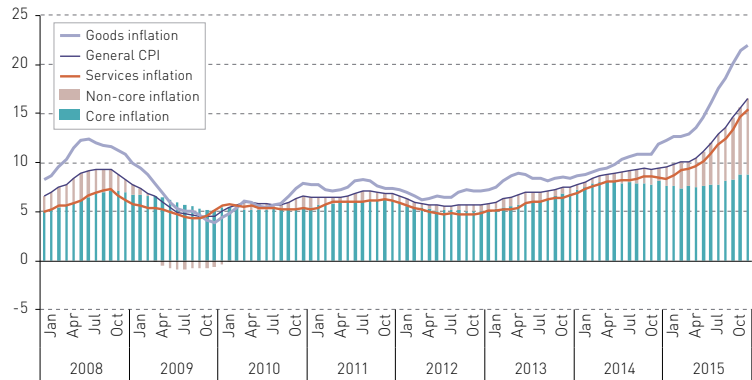
남미 전체 평균을 보면 2014년 12%에 비해 2015년에는 거의 2배가 오른 23%에 달하는 물가상승을 경험했다. 20% 이내에서 물가가 상승한 남미의 4개국(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와 20% 이상 물가가 상승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러한 대조는 이들 국가들이 거시경제 정책으로 선택한 환율정책(평가절하)이나 국내 통화량 확대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문별로 보면 교역상품(tradable goods; 자동차, 전자, 기계제품 등 제조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비-교역상품(non-tradable goods; 부동산, 서비스,

요식업, 교육 등)보다 높았으며 식품 인플레이션은 일반 물가를 훨씬 능가했다고 분석했다. 2015년 이 지역 전체 교역재에 대한 평균 인플레이션이 이전의 11.8%보다 무려 10% 더 오른 21.5%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포함된 남미 지역에서 좀 더 높아 약 31%에 달했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참여는 이 지역 평균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그림 5 참고, 베네수엘라 제외하면 연간 평균 8% 기록함).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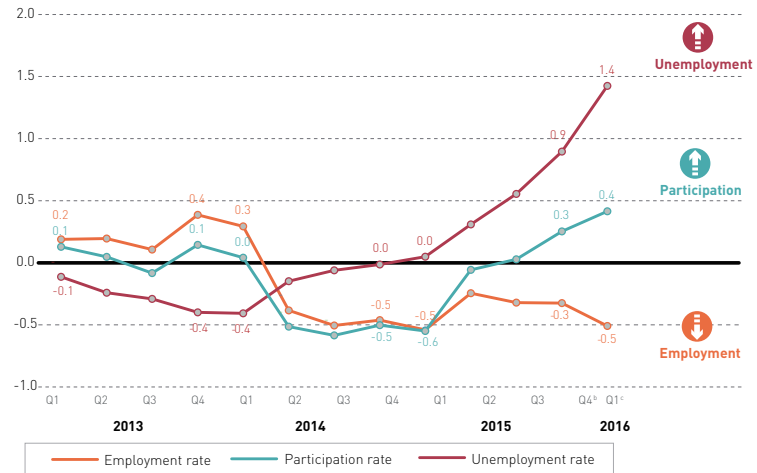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변화
(가중 평균, 2008.01-2015.12)



출처: ECLAC 2016, p. 52 인용함.

2015년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의 낮은 경제 경쟁력은 실업률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실업률 상승이 목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림 6〉
라틴아메리카/카리브 12개국 실업률/참여율/취업률 연간변화 비교
(2013.01-2016.01, %)



출처: ECLAC 2016, p. 54 인용함.

Note: 12개국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자메이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를 포함 . b 예비 자료 분석. c 예측 평가.

위의 〈그림 3〉에서 보듯이 2013년 상반기 다소 안정적인 상태로 운영되던 노동시장(실업률/참여율/취업률)이 2015년-2016년 사이에 급속하게 변화하여 노동시장 참여율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더욱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위의 12개국들 중에 특히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와 우루과이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ECLAC은 경고하고 있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 실업률의 증가는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의 양성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 부문 특히 농업 부문과 금융,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이 경기 수축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를 잃었으며(특히 브라질의 경우), 상업, 레스토랑, 호텔, 공동체 및 사회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완만하게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고 ECLAC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상반기 이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는 대부분 비정규직 취업으로 분류되며 불완전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칠레와 페루에서 이러한 불안 전고용 혹은 비정규직 직업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불안정 발전으로 남미 지역 사회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 보다 더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노동 증가와 더불어 개별 국가들 차원의 예상된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질임금 하락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2016년 현재 브라질이 대표적이며, 이보다는 덜하지만 콜롬비아가 실질임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사례분석도 추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그리고 콜롬비아(2016년)의 최근 거시경제 운영은 이웃 국가인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 비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다소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ECLAC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대외무역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 및 국내 소비자물가(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남미 3개국(여타 남미 이웃 국가들 포함)의 거시경제정책 변화와 거시정책 운영에 대한 경제적 데이터, 협상국들의 시장 동향, 특히 상품시장으로서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이들 국가의 국내소비자물가와 변화, 현지 노동시장에서 참여율, 실업율, 고용율 현황과 변화, 노동유형의 패턴 변화 등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를 통해 투자 및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1차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본 페이지의 내용은 Alicia Bárcena, Antonio Prado, Daniel Titelman, Ricardo Pérez, 2016. "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halleng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Chile: Santiago,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 에서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와 중요분석 내용을 발췌해 번역/인용했으며 향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중남미 3개국(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우수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구성되었음을 밝힌다.

02

[FTA EXPERT]

[한-콜롬비아 FTA 발효 기념] 중남미 경제환경 분석과 한-콜롬비아 FTA 시사점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수석연구원

韓-콜롬비아 FTA, 아시아에서 한국과 최초로 발효 성과

지난 7월15일, 7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을 끝내고 마침내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전세계 52번째로, 중남미 국가들 중에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콜롬비아와 FTA를 발효하였으며, 콜롬비아는 미주,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최초로 FTA를 발효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이번 FTA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 강국이며,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더 확대하려는 한국과 중남미에서 새로운 성장 축인 태평양동맹* 회원국으로서 무역 시장 확대를 통해 과거 게릴라 무장 투쟁 등으로 낮아진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해외 투자자 유치로 통해 자국 산업을 고도화(高度化)하려는 콜롬비아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그토록 고대하던 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 협상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나 국제 사회가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콜롬비아의 해외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오던 근·현대사의 가슴 아픈 유산을 뒤로 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토양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듯하다.

태평양동맹 VS 메르코수르 특징 비교



- 2012년 출범,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정식 회원국
- 親시장·親서방 성향의 경제 협력
- 태평양 연안 위치, 아시아와 교역 확대 관심
- GDP 규모: US\$ 2조 153억(전체 대비 34.5%)
- 미 소비 회복 영향 등 견고한 성장세 유지 (2015년 GDP 성장률 2.4%)

- 1991년 출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2012년 베네수엘라 추가 가입
- 反미국 성향의 폐쇄적 경제 블록
※ 최근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잇따른 우파 정권 수립으로 이념 차이에 따른 갈등 지속
- 주로 중국·유럽과 교역 (대서양 연안에 위치)
- GDP 규모: 3조 1749억 (전체 대비 54.4%)
- 유가 하락,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국내 정치 불안 등으로 경제 급락 등 고전 (2015년 GDP 성장률 -3.0%)

주 : 2010년 Constant Price 기준 Real GDP

콜롬비아의 對 한국FTA에 따른 기대 효과

콜롬비아 입장에서 본 한국과 FTA를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원자재 분야 수출 및 투자에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콜롬비아 경제는 페루, 볼리비아 등 여타 남미 국가들과 같이, 석유, 천연가스 및 광업 부문 등에 집중적으로 외국인 투자('13-'15년, 전체 49.9%, 38.7% 29.7% 차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유가 하락과 원자재 수요 감소로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주춤하는 추세여서, 아시아 신흥국의 대표(Asian Tiger)격인 한국이 먼저 FTA를 발효시킬 경우, 중국, 일본, 아세안(ASEAN) 등 권역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진출을 재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국 제조업들의 직접 진출 유도를 통해 투자 유치 및 자국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의 육성 의

지가 매우 강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에서 직접적인 손해가 예상된다.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은 중남미 자동차 시장 등에서 글로벌 자동차사들에게 진출 기회를 먼저 선점 당하고, 일본 기업 등에게 견제를 받으면서, 멕시코와 FTA 협상이 그러하듯이,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동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중남미 3위의 인구 대국인 콜롬비아와 FTA 발효를 계기로 내수 잠재력이 큰 콜롬비아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장기 관점에서 콜롬비아의 풍부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한국 기업들의 식품 가공업 분야로 진출도 예상해 본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농·수산업계의 반발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당장 한국의 양허 대상 품목에서는 대부분 제외되었으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 동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직접 진출을 통해 식품 가공 기술, 물류 서비스, 판매 채널 등에서 열위에 있는 콜롬비아 농·수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 산업별 FDI 실적

[단위:백만달러]

구분	2013	2014	2015
석유부문	5,112	4,732	3,063
광업	2,977	1,582	533
제조업	2,481	2,837	2,412
농림수산업	296	203	220
전력/가스/수도	314	523	251
건설	354	669	760
유통/요식/호텔	1,361	1,122	1,859
물류/교통/통신	1,245	1,994	668
금융/부동산	1,077	2,487	2,103
공공서비스	349	185	238
총 합계	16,209	16,325	12,108

자료:KOTRA(콜롬비아 중앙은행 재인용)

한국의 對 콜롬비아 FTA에 따른 기대 효과

다음으로 한국이 이번 콜롬비아와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먼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중남미에서 이미 지리적 입지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칠레,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물론, 이 국가들과 FTA 발효 이후를 보면, 상호간 교역 규모가 지속 확대되었고, 무역량 증가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양국간 교류 수준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발전하였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중남미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칠레와도 FTA를 발효한 지 무려 12년이나 지났음에도 양국간 그 어떤 전략적인 유대 관계도 아직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이 중남미에서 교두보로서 좋은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도 크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에게 중남미는 여전히 멀고, 잠재력만 풍부한 미래의 시장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이번 콜롬비아와 FTA 발효를 계기로 생각해 본 전략적 활용 가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롬비아만이 가진 칠레, 페루와는 다른 절묘한 지정학적 입지에 따른 교두보로서 가치이다. 콜롬비아는 남미 국가이면서도 거의 유일하게 태평양과 카리브 해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

태평양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미주 수출·입 교역의 주요한 루트이고, 카리브 해는 미 남부로 통하는 멕시코만과 유럽으로 통하는 대서양으로 직접 이어져 있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양 대해(大海)를 잇는 접점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 발생 가능한 일들로서 중남미 국가들간 교류의 중심 축 역할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크게 경제 권역과 정치 성향에 따라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로 양분되어 있으며, 이들은 현재 상호 배타적인 시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남미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는 상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그 가교 역할로서 가장 기대가 큰 국가가 바로 콜롬비아이다.

같은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 남미에 있는 칠레와 페루는 상호 끌려온 관계여서 누가 먼저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인 반면, 콜롬비아는 메르코수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배타적 성향이 강한 베네수엘라와도 역사적 유대 관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대화에 나서기 용이하다. 실제로 올해부터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양 권역간 협력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 향후 콜롬비아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국 기업들도 중남미 진출 시, 투자 목적에 따라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와 역할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잠재적인 성장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이다. 콜롬비아는 2015년 기준, GDP 규모(실질, 2010년 물가기준) 3,596억 달러, 인구 4,822만 명(추정)으로 중남미 국가 중 인구로는 3위, 경제 규모로는 4위의 큰 국가이다.

과거부터 크게 주목 받았던 브라질이나 멕시코에 비해 내수 규모나 1인당 GDP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에서 다소 밀렸지만, 안정된 물가와 낮은 임금 수준 등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먼저 투자에 따른 선점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마침 오랜 근심 거리였던 게릴라 세력과의 반목도 최근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향후 투자처로서 기대를 갖고 지켜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기반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이다.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정치를 기반으로 하여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과 기반 산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인프라는 도로, 항만 분야 등이 중심이며, 기반 산업은 석유, 광업, IT, 바이오 산업 개발 등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산업 육성을 통해 과거 반군이 장악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도 도시화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 고용과 소비 또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주요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지난 10여년간 중남미 경제 호황기에 여러 중남미 국가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쌓은 만큼, 향후 콜롬비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남미 투자시유의사항

한편, 이러한 여러 이점과 높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에서부터 이어진 경제·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경시하여, 애초에 잘못된 투자처를 찾거나 또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진행하여 종종 손실을 입어 왔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임에도 여전히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요약하면, 과거부터 중남미 국가들은 원자재 산업과 1차 상품 수출에 치우친 취약한 산업 구조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항상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대부분의 경우, 단기 성장과 장기 침체라는 흑독한 대가를 치러 왔다. 이러한 결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경제 규모가 크고, 특히 내수 소비 비중이 높은 나라도 은 더없이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중남미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로서도 최적의 투자 시점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제국의 지배를 오래 받아, 과거 식민지 경제가 낳은 독점적 산업 구조와 비효율성 등 부정적 유산이 존재하고, 근대화 과정에서는 군부의 등장과 독재에 따른 고통과 그 후유증으로 오늘날까지도 정경 유착, 불투명한 의사 결정,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관료주의 등이 남아,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 놓았다.

글을 마치며

이렇듯 한국과는 많이 다른 사업 문화와 비즈니스 정서로 인해, 자칫 현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시행 착오나 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권 박탈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소위 경제 권역을 확대하는데 주력해 왔고, 그 결과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를 보면, 첫 번째 체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번이 세번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들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다소 소홀했던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번 한-콜롬비아 FTA 발효도 기존 사례와 같이 큰 의미 없이 활용된다면, 이는 한국 입장으로서도 단순히 FTA 체결국을 또 하나 늘리는 성과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FTA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과거 일본이 택한 중남미 진출 전략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의 경우, 과거 칠레,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 진출 시, 충분한 사전 조사 외에도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포함한 현지와 고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중요한 정보 입수를 통해, 진출 분야 곳곳에 침투하여, 현지 사업 환경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마치 내수 시장과 같은 시장 구도로 만들어 갔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그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혹 진입하더라도 경쟁이 어려워 선두 자리를 쉽게 뺏기지 않게 하는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중남미 진출 역사가 짧은 한국과 우리 기업들이 아직은 낯선 중남미 시장에서 단기간에 그러한 역량을 쉽게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한-콜롬비아간 발효된 중남미 세 번째 FTA가 양 대륙간 교역 확대와 더불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의 확대로 이어져 상호 심도 있는 발전 논의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교류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03

[FTA EXPERT]

FTA를 활용한 기계산업의 중남미지역 진출확대



박성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진흥본부/통상팀 과장

1. 기계산업 현황

1.1 현황

기계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C29에 해당되며, 건설, 섬유, 냉동공조, 농기계 등 타산업에 설비를 제공하는 장비와 금형, 공작기계 등 제품 양산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를 포함한다. 기계산업은 산업고도화에 따른 자동차, 첨단의료, 항공우주, 로봇, 태양광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 경쟁력은 국가별 GDP, 국가브랜드 등 국가 경쟁력 지표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GDP 순위, 국가브랜드 순위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기계산업 수출시장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및 국가브랜드 순위는 10위권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계산업 수출, 수입, 무역수지는 세계 Top 10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기계산업 수출 Top 10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중국(3위), 일본(4위), 한국(8위) 등 3개국만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신흥 거대경제권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급속한 제조업 발전으로 2001년 기계산업 수출 10위권 진입, 2006년 5위권 진입, 2014년 세계 3위로 크게 도약하였다.

일본은 기계산업 강국으로 독일, 미국과 함께 기계산업 선도국가로서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일본은 과거 기계산업 수출 3위 국가였으나, 최근 중국의 급성장으로 2014년 3위 자리를 내어주고 세계 4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2006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2%로 10위권 진입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2014년 점유율 3.3%를 기록하며 세계 8위에 위치하였다.

우리나라 기계산업 위상과 GDP, 국가브랜드 비교

(단위 : 10억불)

순위	GDP('16년)		국가브랜드('15년)		기계 수출('14년)		기계 수입('14년)		기계 수지('14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미국	18,558	미국	19,703	독일	225.6	미국	207.6	독일	120.0
2	중국	11,383	중국	6,314	미국	172.4	중국	121.2	일본	80.9
3	일본	4,412	독일	4,166	중국	164.2	독일	105.6	이탈리아	71.1
4	독일	3,467	영국	3,010	일본	119.2	영국	60.3	중국	43.0

순위	GDP('16년)		국가브랜드('15년)		기계 수출('14년)		기계 수입('14년)		기계 수지('14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5	영국	2,761	일본	2,541	이탈리아	103.6	프랑스	56.3	네덜란드	13.5
6	프랑스	2,464	프랑스	2,158	영국	64.8	캐나다	55.6	오스트리아	10.4
7	인도	2,288	인도	2,137	프랑스	62.0	멕시코	49.2	스위스	9.9
8	이탈리아	1,848	캐나다	2,040	한국	49.0	러시아	43.6	한국	9.4
9	브라질	1,534	이탈리아	1,445	네덜란드	43.2	한국	39.5	스웨덴	7.7
10	한국(11위)	1,321	한국(12위)	1,092	멕시코	34.1	일본	38.4	프랑스	5.7

[자료] IMF, Brand Finance, UN Comtrade

[주] 무역자료는 UN Comtrade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3 기준으로
국내통계(HS Code 기준)와 다소 상이

1.2 기계산업 교역 현황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전산업 수출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6년 상반기 기준 수출 9.3%, 수입 7.1%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의 약 17%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산업이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전산업 교역에서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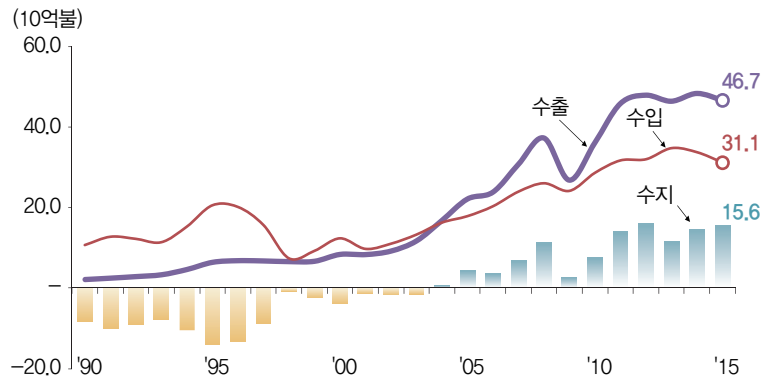
(단위 : 10억불)

구분	'05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H	
수출	전산업(A)	284.4	466.4	555.2	547.9	559.6	572.7	526.8	241.8
	기계산업(B)	22.2	36.1	45.8	47.9	46.4	48.3	46.7	22.5
	비중(B/A)	7.8	7.7	8.3	8.7	8.3	8.4	8.9	9.3
수입	전산업(A)	261.2	425.2	524.4	519.6	515.6	525.5	436.5	192.5
	기계산업(B)	17.8	28.6	31.7	32	34.7	33.7	31.1	13.8
	비중(B/A)	6.8	6.7	6.0	6.1	6.7	6.4	7.1	7.1
수지	전산업(A)	23.2	41.2	30.8	28.3	44	47.2	90.3	49.3
	기계산업(B)	4.4	7.5	14.1	15.9	11.7	14.6	15.6	8.7
	비중(B/A)	19.0	18.2	45.8	56.2	26.6	30.9	17.3	17.6

[주] MTI분류 기준,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1990년대의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산업화 초기단계로 무역수지 적자산업이었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기계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2004년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후, 무역수지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기계산업 무역수지는 156억불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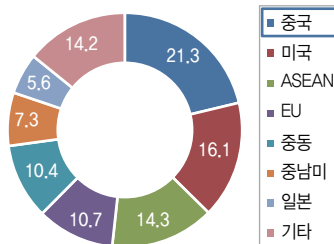
연도별 우리나라 기계산업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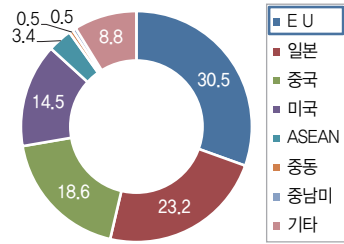
[주] MTI분류 기준, 관세무역개발원 및 무역협회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최대 수출 경제권은 중국으로 2015년 전체의 21.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16.1%), ASEAN(14.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수입 최대 경제권은 30.5%를 차지하는 EU이며, 다음으로 일본(23.2%), 중국(18.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5년 기계산업 국가별 수출 비중(%)



'15년 기계산업 국가별 수입 비중(%)



[주] MTI분류 기준,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2. 중남미 기계산업 시장현황

2.1 중남미 기계산업 시장규모

중남미지역이 글로벌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전산업은 5.5%, 기계산업은 5.0% 내외이다. 중남미지역의 기계산업 교역 비중이 전산업 대비 다소 낮은 이유는 제조업 기반이 선진국보다 다소 미흡하기 때문이다. 중남미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아직까지 산업화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로 기계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중남미지역의 기계산업 수입비중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지역의 기계산업 수입비중은 2005년에는 5.8%에서 2014년에는 7.2%로 1.4%p 증가하였다. 동기간 동안 전산업의 수입 비중이 0.8%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기계산업 수입 증가폭이 더욱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제조업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계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2010년~2014년)동안 중남미지역의 기계산업 수출·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6.5%와 20.5%로 전세계 기계산업의 수출증가율 14.4%, 수입증가율 14.4%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남미지역의 전산업 성장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는 중남미지역에서 최근 인프라 개발, 자동차 산업 육성, 플랜트 건설 등으로 기계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포드, GM, 폭스바겐 등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 국가와의 FTA 네트워크 등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아자동차도 2016년 5월부터 멕시코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공장 가동을 위한 프레스·용접로봇 등 상당량의 기계설비를 우리나라 수출로 충당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2025년까지 밸브, 농기계 등 9개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계류와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 관련 품목들의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로 기자재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글로벌시장에서 중남미지역의 전산업 및 기계산업 교역비중

[단위 : 10억불, %]

구분	'05년			'10년			'14년			CAGR('10~'14)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전 산 업	전 체 (A)	10,171	10,479	20,650	14,900	15,107	30,007	18,294	18,329	36,623	6.7	6.4
	중남미 (B)	568	502	1,070	874	845	1,719	960	1,024	1,984	6.0	8.2
	비중 (B/A)	5.6	4.8	5.2	5.9	5.6	5.7	5.2	5.6	5.4	-	-
기 계 산 업	전 체 (A)	912	904	1,816	1,249	1,255	2,504	1,562	1,547	3,109	14.4	14.4
	중남미 (B)	27	52	79	38	89	127	50	111	161	16.5	20.5
	비중 (B/A)	3.0	5.8	4.4	3.0	7.1	5.1	3.2	7.2	5.2	-	-

[주] 1. UN Comtrade SITC Rev 3 기준, '16.7월 기준 '15년 자료는 86.43% 등록되어 미반영

2. 남미(12개국), 중미(8개국), 카리브(13개국) 등 33개국 대상 자료 등록된 29개국 기준, 칠레는 SITC 미등록에 따라 HS 84류를 기계산업으로 간주하여 시장 산출(한국기계산업진흥회)

3.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증가율

2014년 기준 중남미 국가 중 기계산업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꼽을 수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지역에서 기계산업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수출은 66.4%, 수입은 41.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은 기계산업 수출의 24.9%, 수입의 2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두 개 국가가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91.3%, 수입 64.3%로 기계산업 핵심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는 한-칠레 FTA('04.4.1 발효), 한-페루 FTA('11.8.1 발효), 한-콜롬비아 FTA('16.7.15 발효) 등 3건이다. 이들 3개 국가의 중남미 기계산업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크지 않으나, 성장기 기대되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남미 진출확대를 위하여 더욱 더 많은 중남미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계산업 수입시장 세계 7위인 멕시코와 FTA 협상재개를 추진 중이며 중미(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 에콰도르와의 SECA(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국가기계산업 교역 및 지역내 국가별 비중 ('14년)

(단위 : 백만불, %)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중남미	51,376	-		중남미	119,336	-
1	멕시코	34,117	66.4	1	멕시코	49,172	41.2
2	브라질	12,787	24.9	2	브라질	27,547	23.1
3	아르헨티나	1,491	2.9	3	칠레	8,771	7.3
4	칠레	989	1.9	4	아르헨티나	8,421	7.1
5	콜롬비아	412	0.8	5	콜롬비아	5,975	5.0
6	페루	277	0.5	6	페루	5,246	4.4
7	에콰도르	111	0.2	7	에콰도르	2,736	2.3
8	과테말라	105	0.2	8	볼리비아	2,028	1.7
9	도미니카공화국	91	0.2	9	파나마	1,314	1.1
10	바하마	39	0.1	10	과테말라	1,275	1.1
	소계	51,215	99.7		소계	113,674	95.3

[주] 1. UN Comtrade SITC Rev 3 기준, '16.7월 기준 '15년 자료는 86.43% 등록되어 미반영

2. ■ 표기는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을 의미, 칠레는 UN Comtrade SITC 자료 미등록으로 HS 84류 교역 금액을 기계산업으로 간주(한국기계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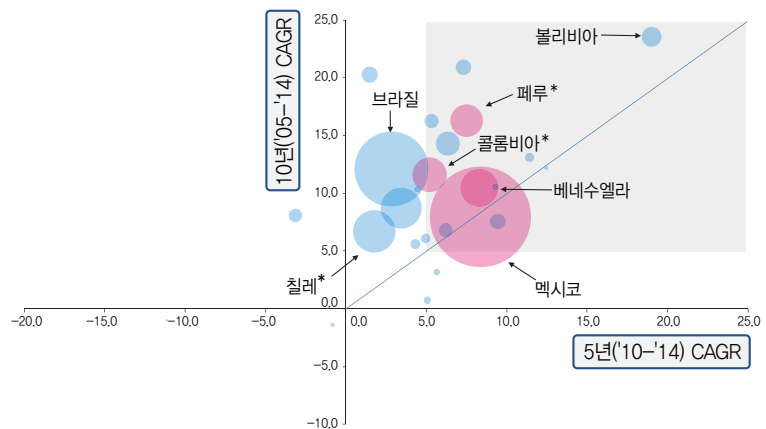
**2.2 중남미 기계산업
유망시장**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최근의 기계산업 수입연평균증가율(5년, 10년)과 2014년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한 시장분석결과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등이 기계산업 유망국가로 고려된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최대 기계산업 교역국가이며 기계산업 수입증가율이 지속적으로 8%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유망한 국가이다. 콜롬비아·페루·베네수엘라 등 3개 국가는 기계산업 수입규모가 50억불 이상이며,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계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브라질은 중남미시장에서 기계산업 수입규모 2위임에도 불구하고 유망시장에는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의 수입증가율이 12%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5년 동안의 수입증가율은 2%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경기 회복 이후에는 브라질 또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국가 중 하나이다.

볼리비아는 기계산업 수입증가율이 2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입규모가 20억불 수준으로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세가 기대되는 국가이다.

주요 중남미 국가의 성장가능성 비교



- [주] 1. UN Comtrade 자료(SITC Rev3 및 HS code)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2. x축은 최근 5년 동안의 기계산업 연평균 수입 증가율, y축은 최근 10년 동안의 기계산업 연평균 증가율, 원의 크기는 '14년 기계산업 수입 규모를 의미
 3. 음영 영역은 최근 5년 및 10년 동안의 기계산업 수입 연평균 5% 이상 구역을 의미
 4. 붉은색 빛금으로 표기된 4개국은 기계 수입 50억불 이상이며, 음영영역에 속하는 유망국가를 의미
 5.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증가율
 6. [*] 표기 국가는 우리나라와 FTA 발효한 3개 국가 의미

중남미지역의 기계산업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4년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기계산업 수입 전체의 약 36%인 422억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상당수 국가의 기계산업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최대 기계산업 수입시장인 멕시코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남미시장으로의 수출 및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최대 수입국인 미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남미로의 수출 실적은 아직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중남미지역에서 미국과의 수출경합도(ESI, Export Similarity Index)는 중남미시장에서 50 수준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제품 대량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형(mold)의 수출경합도는 80을 상회하며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중남미 진출이 가속화 될수록 더욱 더 많은 품목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지역에서의 기계산업 한-미 수출경합도(ESI)

MTI Code	품목명	2012	2013	2014
	일반기계	46.918	52.391	46.587
711	원동기 및 펌프	46.280	48.642	42.175
712	운반하역기계	58.871	60.101	63.410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61.391	56.284	56.904
714	사무기기	68.073	59.541	56.691
715	광학기기	35.700	44.749	40.566
721	섬유 및 화학기계	54.683	47.354	48.601
722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41.106	34.174	36.684
723	금속공작기계	52.881	55.059	54.490
724	식품가공포장기계	54.802	46.940	62.033
725	건설광산기계	47.282	54.825	54.531
72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57.246	51.647	57.764
727	제지인쇄기계	63.955	56.511	61.859
728	농기계	46.525	44.290	42.744
729	기타산업기계	69.414	74.463	63.327
751	기계요소	69.693	74.657	76.556
752	공구	50.045	50.428	47.707
753	금형	83.457	87.877	83.489
790	기타기계류	64.664	74.443	77.941

[주] 1. UN Comtrade 자료(HS code)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2. ESI : Export Export Similarity Index

3. 경합 수준 H / M / L = ESI 기준 70 이상 / 70-50 / 50 이하, ■ 표기는 가장높은 수준(H) 의미

2.3 우리나라와 FTA 협상 진행 중인 중남미 국가

2016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시장으로의 진출확대를 위하여 한-멕시코 FTA, 한-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FTA, 한-에콰도르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를 진행 중이다. 이는 우리 기계산업계의 중남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4월 정상외교를 통하여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멕시코는 기계산업 수입시장 규모가 세계 7위에 위치하는 국가로 중남미 최대 유망시장이다. 한-멕시코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 기계산업계의 중남미시장 진출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4월 일본은 일-멕시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발효를 통하여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EPA를 통한 멕시코 선점효과로 기계산업 수입시장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일본은 멕시코 기계산업 수입시장에서 7.2%를 점유하며 3위에 위치한 반면, 우리나라는 점유율 2.6%로 6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기계산업 수출에서 멕시코의 비중은 4% 수준으로 아직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한-멕시코 FTA가 발효된다면 멕시코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기계산업 교역에서의 멕시코 비중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對세계(A)	36,103	45,817	47,914	46,415	48,345	46,707
	對멕시코(B)	664	726	942	998	1,110	1,948
	비중(B/A)	1.8	1.6	2.0	2.2	2.3	4.2
수입	對세계(A)	28,591	31,667	31,951	34,715	33,699	31,148
	對멕시코(B)	76	100	86	113	124	127
	비중(B/A)	0.3	0.3	0.3	0.3	0.4	0.4

[주] MTI분류 기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리

한-중미 FTA는 2010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8월 서울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과의 기계산업 교역은 아직까지 활발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남미 진출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對중미 6개국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미 6개국	83.9	1.8	85.8	2.2	109.5	1.9	136.0	2.9	105.5	2.0
파나마	46.0	0.1	44.4	0.3	67.0	0.2	75.0	0.2	52.5	0.1
과테말라	17.9	0.1	18.5	0.0	22.7	0.1	31.6	0.7	24.0	0.1
온두라스	3.5	0.2	4.4	0.4	3.8	0.0	4.1	0.3	10.6	0.0
니카라과	6.9	0.0	7.3	0.0	6.7	0.0	11.9	0.0	8.3	0.0
코스타리카	6.6	1.5	8.6	1.5	5.7	1.6	10.2	1.6	5.2	1.7
엘살바도르	3.1	0.0	2.5	0.0	3.7	0.0	3.2	0.0	4.9	0.0

[주] MTI 분류 기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리

한-에콰도르 SECA는 2012년 4월 타당성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3월 서울에서 2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2014년 에콰도르의 기계산업 수입규모는 약 27억불 수준이나, 제조업 육성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함에 따라 기계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對에콰도르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에콰도르	102.6	0.6	105.3	0.1	84.4	0.4	90.0	2.4	52.3	0.5

[주] MTI분류 기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리

3. 우리나라와 중남미 3개 국가와 FTA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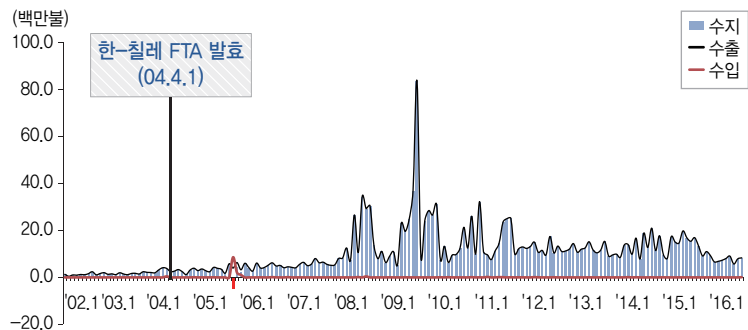
3.1 칠레

우리나라는 2004년 중남미 국가인 칠레와 첫번째 FTA를 발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FTA 체결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진출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칠레는 광업, 농업,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업 분야의 발전수준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 기계산업은 제조업 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약한 칠레의 기계류 수요는 높지 않다. 그러나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경제영토 확장의 시발점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와 칠레 기계산업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칠레 수출은 1.5억불, 수입 0.1백만불, 수지 1.5억불을 기록하였다.

한-칠레 FTA 전후 우리나라 기계산업 對칠레 월별 교역 추이



[주] MTI분류 기준,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한-칠레 FTA 결과 우리나라는 기계산업에 해당되는 HS 1,172 품목(HS 2004 기준)에 대하여 관세를 즉시철폐하였다.

한-칠레 FTA 기계산업 양허 결과(한국측)

MTI code	품목명	관세율		즉시철폐	
		무관세 제외	무관세 포함	HS 품목수	비중
	일반기계	7.9	6.8	1,172	100.0
711	원동기 및 펌프	7.7	7.4	99	8.4
712	운반하역기계	0.0	0.0	44	3.8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8.0	8.0	70	6.0
714	사무기기	8.0	6.9	15	1.3
715	광학기기	8.0	7.6	81	6.9
721	섬유 및 화학기계	7.5	7.5	180	15.4
722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8.0	7.2	39	3.3
723	금속공작기계	8.0	7.4	99	8.4
724	식품가공포장기계	8.0	8.0	37	3.2
725	건설광산기계	8.0	0.8	49	4.2
72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8.0	7.3	56	4.8
727	제지인쇄기계	8.0	8.0	56	4.8
728	농기계	8.0	2.9	57	4.9
729	기타산업기계	8.0	7.6	36	3.1
751	기계요소	8.0	8.0	57	4.9
752	공구	8.0	7.9	125	10.7
753	금형	8.0	8.0	14	1.2
790	기타기계류	8.2	7.8	58	4.9

[주] MTI 분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 등록된 협정문을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반면, 칠레측은 기계산업의 15.9%에 해당하는 HS 126품목에 대해서만 즉시 철폐하였으며, 기계산업 전체 품목 중 70.4%인 558품목은 5년을 철폐하였다. 칠레는 우리나라에 비해 기계산업 분야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유함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특히, 기계산업 793품목 중 2품목은 양허제외로 선정하여 2016년 현재까지 관세율 6%를 유지하고 있다.

한-칠레 FTA 기계산업 양허 결과(칠레측)

MTI code	품목명	관세율		즉시		5년		7년		10년		13년		제외		합계	
		무관세 제외	무관세 포함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일반기계	6.0	6.0	126	15.9	558	70.4	3	0.4	91	11.5	13	1.6	2	0.3	793	100.0
711	원동기 및 펌프	6.0	6.0	20	28.6	47	67.1			3	4.3					70	100.0
712	운반하역기계	6.0	6.0	3	7.7	26	66.7			10	25.6					39	100.0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6.0	6.0	1	1.8	40	71.4			13	23.2	1	1.8	1	1.8	56	100.0
714	사무기기	6.0	6.0	13	56.5	10	43.5									23	100.0
715	광학기기	6.0	6.0	44	100											44	100.0
721	섬유 및 화학기계	6.0	6.0			76	97.4					1	1.3	1	1.3	78	100.0
722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6.0	6.0			20	95.2					1	4.8			21	100.0
723	금속공작기계	6.0	6.0			77	100									77	100.0
724	식품가공포장기계	6.0	6.0			19	90.5			2	9.5					21	100.0
725	건설광산기계	6.0	6.0	14	23.7	34	57.6			11	18.6					59	100.0
72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6.0	6.0			25	100									25	100.0
727	제지인쇄기계	6.0	6.0			34	100									34	100.0
728	농기계	6.0	6.0	1	2.7	27	73			9	24.3					37	100.0
729	기타산업기계	6.0	6.0			10	41.7	3	12.5	6	25	5	20.8			24	100.0
751	기계요소	6.0	6.0	14	19.7	33	46.5			19	26.8	5	7			71	100.0
752	공구	6.0	6.0	14	17.7	49	62			16	20.3					79	100.0
753	금형	6.0	6.0			9	81.8			2	18.2					11	100.0
790	기타기계류	6.0	6.0	2	8.3	22	91.7									24	100.0

[주] MTI 분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 등록된 협정문을 활용하여 기계산업진흥회 산출

2016년 8월 기준, 한-칠레 FTA 발효 13년차로 칠레의 기계산업 품목은 양허 제외 2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양허제외로 2016년 현재까지 관세율 부과대상 품목은 HS 84185000(냉장고), HS 84502000(10 kg 초과 세탁기)이다. 이중 냉장고는 우리나라와 칠레 교역이 미미한 품목으로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세탁기는 우리나라가 매년 약 12백만불을 수출하는 품목으로 관세철폐 시 가격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한-칠레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세탁기 품목(HS 84502000)의 관세인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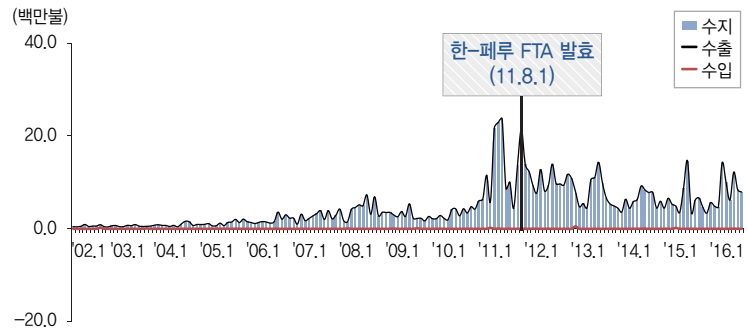
한-칠레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기계산업계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은 “4단위 세번변경(CTH)”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와 “세번변경(4단위, 6단위)”과 “역내부가가치(RVC(30/45))”모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이 가장 많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로서 국내기업의 수출확대 및 중소기업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소 까다롭게 설정되었다.

3.2 페루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이후, 2011년에 페루와 두 번째 중남미 국가와의 FTA를 체결하였다. 페루는 자원부국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이다. 페루는 은(1위), 구리(2위), 동(2위), 주석(3위), 아연(4위), 몰리브덴(4위), 금(9위) 등 주요 광물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에 위치하는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페루 FTA를 활용하여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 확대, 전략적 자원협력 등이 기대된다.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와 페루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페루 기계산업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당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가들간의 교역 자체가 크게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페루 수출은 66.5백만불, 수입 0.05백만불, 수지 66.5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한-페루 FTA 전후 우리나라 기계산업 對페루 월별 교역현황



[주] MTI분류 기준,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특히 한-페루 FTA 결과 우리나라는 기계산업에 해당되는 HS 1,220 품목(HS 2011 기준)에 대하여 관세를 즉시철폐하였다.

한-페루 FTA 기계산업 양허 결과(한국측)

MTI code	품목명	관세율		즉시철폐	
		무관세 제외	무관세 포함	HS 품목수	비중
	일반기계	7.9	6.9	1,220	100.0
711	원동기 및 펌프	7.7	7.3	102	8.4
712	운반하역기계	8.0	0.4	43	3.5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7.9	7.9	70	5.7
714	사무기기	8.0	5.1	25	2.0
715	광학기기	8.0	7.6	90	7.4
721	섬유 및 화학기계	7.5	7.5	187	15.3
722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8.0	8.0	35	2.9
723	금속공작기계	8.0	8.0	93	7.6
724	식품가공포장기계	8.0	8.0	37	3.0
725	건설광산기계	8.0	0.8	50	4.1
72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8.0	7.7	55	4.5
727	제지인쇄기계	8.0	8.0	62	5.1

MTI code	품목명	관세율		즉시철폐	
		무관세 제외	무관세 포함	HS 품목수	비중
728	농기계	8.0	3.0	58	4.8
729	기타산업기계	8.0	8.0	33	2.7
751	기계요소	8.1	8.1	67	5.5
752	공구	8.0	7.9	136	11.1
753	금형	8.0	8.0	15	1.2
790	기타기계류	8.1	7.7	62	5.1

[주] MTI 분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 등록된 협정문을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페루는 기계산업에 해당하는 HS 871품목 중 93.7%인 816품목을 즉시철폐 하였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 10년 철폐로 시장개방을 하였다. 페루는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품목에서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8월 기준, 한-페루 FTA는 6년차로 페루의 5년 철폐 품목까지 관세철폐 폐되어 기계산업 전체의 96.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7년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FTA 특혜관세 1.3% 수준으로 관세인하 되었으며, 8년 철폐품목은 2.3%, 10년 철폐 품목은 3.6%~6.8% 수준으로 관세인하 되었다. 202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페루 기계산업 전품목이 관세철폐 예정이다.

한-페루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기계산업계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은 “4단위세번변경(CTH)”과 “역내부가가치(RVC(30/45/50))”중 취사선택할 수 있는 선택기준이 가장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원산지기준을 간소화한 것으로 우리 기업들은 제품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과 역내부가

한-페루 FTA 기계산업 양허 결과(페루측)

MTI code	품목명	관세율		즉시		3년		5년		8년		10년		13년		합계	
		무관세 제외	무관세 포함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일반기계	10.0	1.0	816	93.7	2	0.2	25	2.9	2	0.2	1	0.1	25	2.9	871	100.0
711	원동기 및 펌프	0.0	0.0	95	100.0											95	100.0
712	운반하역기계	0.0	0.0	41	100.0											41	100.0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0.5	2.6	48	75			2	3.1					14	21.9	64	100.0
714	사무기기	0.0	0.0	16	100.0											16	100.0
715	광학기기	9.0	3.4	48	90.6			5	9.4							53	100.0
721	섬유 및 화학기계	14.3	1.0	86	96.6									3	3.4	89	100.0
722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0.0	0.0	26	100.0											26	100.0
723	금속공작기계	0.0	0.0	69	100.0											69	100.0
724	식품가공포장기계	9.0	0.7	24	92.3			2	7.7							26	100.0
725	건설광산기계	0.0	0.0	43	100.0											43	100.0
72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0.0	0.0	23	100.0											23	100.0
727	제지인쇄기계	0.0	0.0	31	100.0											31	100.0
728	농기계	14.3	0.8	55	96.5	2	3.5									57	100.0
729	기타산업기계	9.0	0.4	24	96.0									1	4.0	25	100.0
751	기계요소	9.4	4.7	53	70.7			14	18.7	2	2.7	1	1.3	5	6.7	75	100.0
752	공구	9.0	0.2	91	97.8			2	2.2							93	100.0
753	금형	0.0	0.0	12	100											12	100.0
790	기타기계류	9.0	0.8	31	93.9									2	6.1	33	100.0

[주] MTI 분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 등록된 협정문을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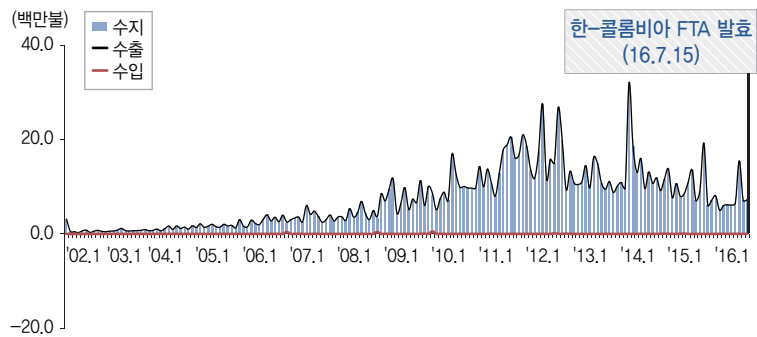
3.3 콜롬비아

가치기준 중 하나를 취사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

콜롬비아는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2016년 7월 15일 기점으로 FTA가 발효되었다. 콜롬비아는 신흥국으로 성장 기대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11년 영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콜롬비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을 시베츠(CIVETS)로 명명하며 Post-BRICs로 주목하였다. 콜롬비아는 풍부한 천연 자원과 젊은 노동인구를 보유한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최근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발효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한-콜롬비아 FTA가 우리나라 기계산업계의 중남미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2015년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콜롬비아 수출은 108.4백만불, 수입은 0.1백만불, 수지는 108.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한-콜롬비아 FTA 전후 우리나라 기계산업 對페루 월별 교역현황



[주] MTI분류 기준,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한-콜롬비아 FTA에서 우리나라는 기계산업에 해당되는 HS 1,220 품목(HS 2016 기준)에 관세를 즉시철폐하였다.

한-콜롬비아 FTA 기계산업 양허 결과(한국측)

MTI code	품목명	관세율		즉시철폐	
		무관세 제외	무관세 포함	HS 품목수	비중
	일반기계	7.9	6.9	1,220	100.0
711	원동기 및 펌프	7.7	7.3	102	8.4
712	운반하역기계	8.0	0.4	43	3.5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7.9	7.9	70	5.7
714	사무기기	8.0	5.1	25	2.0
715	광학기기	8.0	7.6	90	7.4
721	섬유 및 화학기계	7.5	7.5	187	15.3
722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8.0	8.0	35	2.9
723	금속공작기계	8.0	8.0	93	7.6
724	식품가공포장기계	8.0	8.0	37	3.0
725	건설광산기계	8.0	0.8	50	4.1
72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8.0	7.7	55	4.5
727	제지인쇄기계	8.0	8.0	62	5.1
728	농기계	8.0	3.0	58	4.8
729	기타산업기계	8.0	8.0	33	2.7
751	기계요소	8.1	8.1	67	5.5
752	공구	8.0	7.9	136	11.1
753	금형	8.0	8.0	15	1.2
790	기타기계류	8.0	7.6	62	5.1

[주] MTI 분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 등록된 협정문을 활용하여 기계산업진흥회 산출

콜롬비아는 기계산업에 해당하는 HS 888품목 중 75.6%에 해당하는 671 품목을 즉시철폐하였으며, 17.2%인 153품목은 5년, 5.2%인 46품목은 7년, 1.7%인 15품목은 10년, 0.3%인 3품목은 12년 철폐 예정이다.

기계산업계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은 “6단위세번변경(CTSH)”만 충족시키면 되는 경우와 “4단위세번변경(CTH)”과 “역내부가가치(RVC(35/45))”중 취사선택 가능한 선택기준이 가장 많다. 우리 기업들은 제품 특성에 따라 세 번변경과 역내부가가치를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용이하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특혜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콜롬비아 FTA 기계산업 양허 결과(콜롬비아측)

MTI code	품목명	관세율		즉시		5년		7년		10년		12년		합계	
		무관세 제외	무관세 포함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일반기계	5.8	5.7	671	75.6	153	17.2	46	5.2	15	1.7	3	0.3	888	100.0
711	원동기 및 펌프	5.2	5.2	85	85.9	12	12.1	2	2.0					99	100.0
712	운반하역기계	5.7	5.7	29	69.0	12	28.6	1	2.4					42	100.0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8.8	8.7	29	45.3	16	25.0	7	10.9	10	15.6	2	3.1	64	100.0
714	사무기기	5.3	5.3	18	94.7			1	5.3					19	100.0
715	광학기기	5.0	5.0	47	100.0									47	100.0
721	섬유 및 화학기계	6.0	5.9	72	79.1	13	14.3	2	2.2	3	3.3	1	1.1	91	100.0
722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5.4	3.9	34	94.4	2	5.6							36	100.0
723	금속공작기계	5.0	5.0	67	95.7	3	4.3							70	100.0
724	식품가공포장기계	6.3	5.9	17	58.6	7	24.1	5	17.2					29	100.0
725	건설광산기계	5.0	4.4	41	93.2	3	6.8							44	100.0
72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5.0	5.0	22	95.7	1	4.3							23	100.0
727	제지인쇄기계	5.0	5.0	31	100.0									31	100.0
728	농기계	5.8	5.5	34	59.6	20	35.1	2	3.5	1	1.8			57	100.0
729	기타산업기계	6.2	6.0	12	46.2	10	38.5	4	15.4					26	100.0
751	기계요소	6.0	5.9	34	47.2	30	41.7	7	9.7	1	1.4			72	100.0
752	공구	6.1	6.1	71	76.3	10	10.8	12	12.9					93	100.0
753	금형	5.4	5.4	7	58.3	4	33.3	1	8.3					12	100.0
790	기타기계류	6.2	6.2	21	63.6	10	30.3	2	6.1					33	100.0

[주] MTI 분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 등록된 협정문을 활용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출

4. 시사점

우리나라는 최근 발효된 콜롬비아(16.7월)를 포함하여 2016년 8월 기준 52 개국과 FTA를 발효하여 경제영토 세계 3위인 FTA Hub 국가로의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였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과 중국, ASEAN, 중남미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발효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FTA 지역(16.8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www.fta.go.kr))

이제 우리나라의 통상협상 추진방향은 양적인 FTA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였다. 발효된 FTA의 활용 제고 및 유망지역과의 신규 FTA 추진, TPP, RCEP 등 메가 FTA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트렌드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중남미 국가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기계산업에 있어서도 중남미시장은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지역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기계산업과 제조인프라의 발전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인 경제개발, 제조업 성장에 따라 기계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남미 지역은 지리적인 이유로 미국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우리나라 기계산업계의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기계산업 수출 2위, 수입 1위인 기계산업 강대국 중 하나이다.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관세장벽 완화, 정책지원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기계산업계에서는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통하여 특혜관세 적용, 비관세장벽 해소, 산업협력기반 마련으로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확대를 기대한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루빨리 한-멕시코 FTA 체결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멕시코 수출 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중미 6개국 FTA, 에콰도르 SECA 체결을 통해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협상 준비 중인 한-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르과이, 베네수엘라)와의 조속한 FTA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1980년대 기술자립 기반확보, 1990년대 수출산업화 추진, 2000년대 수출국으로 도약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중국, 미국, ASEAN 등 주요 경제권으로의 수출편중도가 높다는 약점이 있다.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출다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활용 및 확대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세계 Global Top 5 진입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와 품목분류

HS 2017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육수진 사무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임교수

[FTA와 품목분류]

HS 2017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육수진 사무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임교수

2017년 1월 1일 HS 제6차 개정(HS 2017)이 발효된다. HS는 국제공통의 상품분류체계로서 품목 분류표의 최신성과 품목분류의 명확성·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기술발전에 의한 상품의 변화·무역패턴과 거래량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약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HS는 전세계 200여 개 국가가 사용하는 국제공통의 물품 분류체계로서 HS의 개정은 각 나라의 관세율표와 통계품목분류표 뿐만아니라 FTA 협정세율표, 품목별원산지기준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HS의 개정 내용은 관세 및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이번 호에서는 HS 제6차 개정의 방향과 특징,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HS 개정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머리말

가. HS협약의 의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①은 세계관세기구(WCO)^②가 국제무역의 촉진, 무역통계의 용이한 수집·비교·분석, 국가간 상이한 분류체계에 의해 야기되는 비용의 절감, 무역서류의 표준화 등을 위해 1983년 제정하여 1988년에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HS 협약에는 상품분류체계인 'HS 품목분류표'가 부속서로 들어가 있다.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무역량 기준으로 98% 이상의 물품이 HS에 따라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HS는 국제공통의 상품분류체계라 할 수 있으며, '만국공통의 무역언어'라고도 불린다.

HS는 무역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통계를 수집하는 목적 외에도 수출입 통관시 갖추어야 하는 법적 요건의 확인, 관세의 감면과 환급, 운송·보험 효율의 책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서도 특혜관세의 부과와 원산지결정의 중요한 도구이다.

①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②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법적 명칭이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로, 전 세계 관세행정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이며 2016년 9월 현재 150여개 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HS협약의 개정

교역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무역통계수집 등 HS의 제정목적은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상품의 등장, 교역패턴의 변화, 교역량의 증감 등 환경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분류체계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HS의 개정은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신상품과 교역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며, 국가간 이동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물품의 분류코드 부여 등을 목적으로 기존 분류체계의 주(Notes), 호(Headings), 소호(Sub-headings)를 신설·삭제·수정·통합^④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HS 협약에서는 HS 개정을 위한 관세협력이사회^⑤(이하 '이사회'라 한다)와 HS 위원회(Harmonized System Committee, 이하 'HSC'라 한다)의 역할 및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작성은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HSC가 수행한다.^⑥ HSC는 체약당사국, WCO 사무국, 다른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개정 의견을 제출받아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개정안의 세부적인 검토를 HS 검토소위원회(Review Sub-committee)와 과학소위원회(Scientific Sub-Committee)에 요청한다. 소위원회에서 검토결과를 제출하면 HSC는 최종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이를 심의한 후 체약당사국에 개정을 권고한다.^⑦

개정안 권고 후 6개월의 반대통고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체약당사국의 반대가 없으면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락된 개정안은 각 체약당사국이 개정을 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통상 개정안 통지일로부터 제3차 년도의 1월 1일부터 발효된다.^⑧

④ WCO는 HS 개정시 호나 소호를 신설하거나 삭제할 경우 국제거래량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단위 호는 연간 미화 1억불, 6단위 소호는 연간 미화 5천만불을 기준으로 신설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

⑤ WCO 회원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관세청장 등)로 구성되며, WC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⑥ HS 협약 제7조 제1호에서는 HS위원회가 수행하는 직무로서 'HS개정의 제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⑦ HS 협약 제8조 제1호 참조

⑧ HS 협약 제16조 제4호에서 수락된 개정안의 발효일자를 규정하고 있다. 즉, 권고된 개정안이 4월 1일 전에 통지되면 통지일 이후의 제2차년도 1월 1일에 발효하고, 4월 1일 이후에 통지되면 제3차년도 1월 1일에 발효한다. 현재 HS개정 권고문의 통지는 통상 매년 6~7월에 개최되는 이사회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후자인 제3차년도 1월 1일에 발효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제6차 HS 개정은 2014년 6월 27일에 통지되어 제3차년도인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것이다.

HS 개정안이 통지되면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 등을 협약에서 정한 날부터 개정된 HS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HS 협약의 개정 내용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협약에서 정한 날에 개정된 관세율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발효한다.

다. HS협약의 개정 연혁

HS협약은 1988년 발효된 이후로 약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제6차 개정이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HS의 개정 연혁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HS 개정 연혁

차수	발효연도	4단위(호)	6단위(소호)	주요 개정 내용
제정	1988	1,241	5,019	• HS품목분류표 시행
1차 개정	1992	1,241	5,018	• HS작업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보완에 중점
2차 개정	1996	1,241	5,113	• UN에서 요청한 마약원료물질, 오존층 파괴 물질 특계 • 신상품 특계(영상전화기, 팩시밀리, 휴대용 컴퓨터 등)
3차 개정	2002	1,244	5,224	• 환경 및 사회적 관심품목 특계(CITES 품목, 특정 폐기물 등) • 마약류 통제를 위한 특계(암페타민, 아편농축물 등) • 신상품 특계(스마트카드, 디지털카메라 등)
4차 개정	2007	1,221	5,052	• 첨단기술발전 반영(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설비 특계, 기준신설 등) • 환경관련 물품 특계(수은화합물, 석면 함유 제품 등) • 국제무역량 증감에 따른 신설·삭제

차수	발효연도	4단위(호)	6단위(소호)	주요 개정 내용
5차 개정	2012	1,224	5,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식량기구(FAO)의 요청에 따른 농수산물 분류체계 강화(제3류, 제16류 등) • 바이오디젤 호(제3826호) 신설 및 유기화합물 분류체계 개편 • 위생용품 호(제9619호) 신설
6차 개정	2017	1,222	5,367 + 20 ^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 요청에 따른 농수산물 등 분류체계 정비 • 환경·사회적 관심품목 특계(말라리아 퇴치용 물품, 화학무기제조원료,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소호주·소호 신설 • 첨단기술발전 반영(LED 램프 소호신설, 전자집적회로 범위확대, 전기자동차 소호 신설, 모니터 분류체계 수정 등) •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호(제9620호) 신설

2. HS 2017 개정의 주요내용

가. HS 2017 개정 개괄

제6차 HS개정 과정에서는 여러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관심 물품의 모니터링과 무역통계수집 등을 위해 HS 코드 신설을 요청한 물품, 첨단기술 분야의 신상품과 무역거래패턴이 변화된 물품, 품목분류의 명확화가 필요한 물품, 무역거래량이 증감된 물품 등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이사회가 2014년 및 2015년에 통지한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4단위 호는 신설 1개, 삭제 3개로 전체적으로 2개 호가 감소했으며, 6단위 소호는 신설 264개, 삭제 82개로 전체적으로 182개의 소호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HS 2017은 1222개 호, 5387개 소호 구조를 갖게 되었다. <표 2>에 HS 2017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다.

㉓ 이사회는 HS 협약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2017.1.1.에 발효되는 제6차 개정안을 2014.6.27.에 통지(1222개 호, 5367개 소호)하였으나, 이후 통지된 개정안에 일부 누락된 내용과 오류 사항*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추가 개정안(소호 20개 증가)을 2015.6.11.에 통지하였다.

* 제3류의 일부 소호, 제6류 소호주와 소호 제6304.20호의 용어상의 오류 및 제44류 일부 소호에 대한 개정안 누락 추가 개정안은 HS 협약 제16조에 따라 통지일 이후 제3차년도인 2018.1.1.에 발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회는 체약당사국이 가능하다면 2017년 개정안에 함께 반영할 것을 권장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1.1. 발효될 개정 관세율표와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추가 개정안까지 모두 반영할 예정이다.

[표 2] HS 2017 개정 총괄표

구분	HS 2012(현행)	HS 2017(개정)	비고
4단위(호)	1,224	1,222	신설(1개 : 제9620호) 삭제(3개 : 제2848호, 제6908호, 제8469호)
6단위(소호)	5,205	5,387	신설(264개) 삭제(82개)

총 242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86 • 화학품 45 • 목재 21 • 섬유 15 • 금속 6 • 기계류 35 • 수송기기 8 • 기타 26 	
Chapter 1 : 4	Chapter 28 : 5	Chapter 54 : 4	Section XVI : 2
Chapter 2 : 4	Chapter 29 : 25	Chapter 55 : 2	Chapter 84 : 24
Chapter 3 : 60	Chapter 30 : 4	Chapter 56 : 2	Chapter 85 : 9
Chapter 4 : 2	Chapter 31 : 1	Chapter 57 : 2	Section XVI, total : 35
Chapter 5 : 1	Chapter 37 : 1	Chapter 59 : 1	Section XVII : 1
Section I, total : 70	Chapter 38 : 7	Chapter 60 : 2	Chapter 87 : 7
	Section VI, total : 43	Chapter 63 : 2	Section XVII, total : 8
Chapter 7 : 1	Chapter 39 : 5	Section XI, total : 15	Chapter 90 : 3
Chapter 8 : 1	Chapter 40 : 1	Chapter 68 : 1	Chapter 92 : 1
Chapter 9 : 1	Section VII, total : 6	Chapter 69 : 2	Section XVIII, total : 4
Chapter 12 : 2	Chapter 42 : 3	Section XIII, total : 3	Chapter 94 : 5
Chapter 13 : 1	Section VIII, total : 3	Chapter 73 : 2	Chapter 95 : 2
Section II, total : 6	Chapter 44 : 21	Chapter 74 : 1	Chapter 96 : 1
Chapter 16 : 3	Section IX, total : 21	Chapter 82 : 1	Section XX, total : 8
Chapter 19 : 1	Chapter 48 : 2	Chapter 83 : 1	
Chapter 20 : 2	Section X, total : 2	Section XV, total : 6	
Chapter 21 : 1			
Chapter 22 : 3			
Section IV, total : 10			
Chapter 27 : 2			
Section V, total : 2			

나. 주요 개정 내용

제6차 HS 개정 내용은 크게 ① 환경 및 사회 관심품목 반영 ②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 반영 ③ 무역패턴과 무역거래량 변화의 반영 ④ 분류의 명확화 등 네 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환경 및 사회 관심품목 반영

HS는 교역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와 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수집과 국가간 이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따라서 환경, 안전, 보건 등 국

제적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의 국제기구나 협약에서는 관심 품목에 대해 HS 코드를 신설해 줄 것을 WCO에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간의 개정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마약류, 멸종위기 동식물, 수은화합물, 수산물 등을 새로운 호나 소호에 특계하거나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개정이 있었으며, 제6차 개정에서도 환경·사회 관심품목에 대한 개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개정으로는 세계식량기구(FAO)의 요청에 따라 수산물, 농업용 기계 등의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비롯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 화학무기제조용 원료물질, 말라리아 퇴치용 물품 등을 새로운 소호 등에 특계하는 개정과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등이 있다.

가) FAO 요청에 따른 수산물 및 농업용 기계 분류체계 개편

2012년 개정에 이어 2017년 HS 개정에서도 제3류의 수산물 부문에서 가장 많은 개정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잉어(carp)'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제0301.93호 등 제3류의 여러 소호에 특계된 '잉어'는 HS 2012에서는 사이프리너스카르피오(Cyprinus carpio) 등 6종의 어류만 포함되었으나, HS 2017에는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등 5종의 어류가 추가되었다.

어류의 식용 설육을 분류할 수 있도록 제0302.9호와 제0303.9호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들 소호는 HS 2012에서는 어류의 '간과 어란'만을 포함하지만, HS 2017에서는 '어백,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설육'도 포함하도록 소호의 용어가 개정되었다.

또한 '갑오징어와 오징어'의 범위도 넓어졌다. HS 2012에서 갑오징어와 오징어가 해당하는 제0307.4호의 용어는 7종의 학명만을 열거하고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어종은 일반적으로 오징어로 상거래되더라도 품목분류는 '기타' 소호인 제0307.9호로 분류되는 체계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품목분류에 혼동과 오류가 다수 발생하였다. HS 2017

에서는 제0307.4호의 용어에 열거된 학명을 삭제하고 ‘갑오징어와 오징어’만으로 표기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어종의 제한 없이 모든 갑오징어와 오징어가 같은 소호에 분류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아울러 일부 농업용·원예용 기계의 소호 체계를 세분화하는 개정이 있었다. 제8424호와 제8432호에서 방제기와 파종기, 퇴비·비료 살포기 등을 기계 종류별로 소호 단위에서 세분화하였다.

[표 3] 수산물 분야 주요 개정 내용

HS	HS 2012	HS 2017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카르피오(Cyprinus carpio) · · 마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 종 · · 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카틀라(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0302.9	간과 어란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脬肉)
0307.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로시아마크로스마(Rossiamacrosoma) · 세피올라(Sepioidae)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트토타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갑오징어와 오징어

나) 유해 화학물질·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소호 특개

HS 2017에서는 로테르담 협약과 스톡홀름 협약⁹⁾의 통제·관리물질인 농약, 특정 유해 화학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¹⁰⁾ 등이 제29류와 제38류의 해당 소호에 특개되었다.

[표 4] 유해 화학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주요 개정

신설되는 소호	해당 품목
2903.83, 2903.93, 2903.94, 2904.31-2904.36, 2910.50, 2914.71, 2920.2, 2923.30, 2923.40, 2935.10-2935.90, 3824.84-3824.88	Mirex, Pentachlorobenzene, Hexabromobiphenyls, Perfluorooctanesulphonic acid, its salts and perfluorooctanesulphonyl fluoride, Perfluorooctanesulphonic acid, Ammonium perfluorooctanesulphonate, Lithium perfluorooctanesulphonate, Other salts of perfluorooctanesulphonic acid, Perfluorooctanesulphonyl fluoride, Endrin, Chlordecone, Dimethylphosphite, Diethyl phosphite, Trimethylphosphite, Triethylphosphite, Endosulfan, Perfluorooctanesulphonates,

다) 화학무기 제조용 원료물질 소호 특개

화학무기금지기구¹¹⁾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으로 가장 교역이 많이 되는 화학 무기 제조용 원료물질 33종이 제28류, 제29류 및 제38류의 특정 소호에 특개되었다.

⁹⁾ '로테르담 협약'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 통보와 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협약이며,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국제적인 생산·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협약이다.

¹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을 말한다.

¹¹⁾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OPCW). 화학무기 금지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평화적 연구목적은 제외한 화학무기의 사용, 개발, 생산, 보유 및 이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표 5] 화학무기 제조용 원료물질 관련 주요 개정

HS	신설되는 소호	해당 품목
28류	2811.12, 2812.11~2812.17, 2853.10	Hydrogen cyanide, Carbonyl dichloride (phosgene), Cyanogen chloride(chlorcyan) 등
29류	2904.91, 2918.17, 2920.21~2920.29, 2921.12~2921.14, 2922.15~2922.18, 2930.60, 2930.70, 2931.31~2931.39	Trichloronitromethane, 2,2-Diphenyl-2-hydroxyacetic acid, Dimethyl phosphite, 2-(N,N-Dimethylamino)ethylchloride hydrochloride, Triethanolamine, 2-(N,N-Diethylamino)ethanethiol, Bis(2-hydroxyethyl)sulfide, Dimethyl methylphosphonate 등
38류	3824.91	Mixtures and preparations consisting mainly of [5-ethyl-2-methyl-2-oxido-1,3,2-dioxaphosphinan-5-yl)methyl methyl methylphosphonate and bis[[5-ethyl-2-methyl-2-oxido-1,3,2-dioxaphosphinan-5-yl)methyl] methylphosphonate

라) 말라리아 퇴치용 물품 분류를 위한 소호 및 소호주 신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아프리카 등 빈곤 국가에서는 여전히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2분당 1명일 정도로 목숨을 위협하는 제1의 질병이므로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WCO는 말라리아로 고통 받는 국가 등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물품들을 공급할 때 일관된 품목분류를 통해 통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말라리아 퇴치용 모기장, 의약품, 진단용 약품 등을 분류하는 소호 및 관련 소호주를 신설하였다.

[표 6] 말라리아 퇴치용 물품 관련 주요 개정



신설되는 소호주·소호	주요 개정 내용
30류 소호주 2	말라리아 치료용 의약품(활성성분) 명시
3002.11	말라리아 진단시험용 키트
3003.60, 3004.60	말라리아 치료용 활성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
38류 소호주2	말라리아 퇴치용 살충제 성분 명시
63류 소호주1	말라리아 퇴치용 살충제를 침투·도포한 베드네트 명시
6304.20	말라리아 퇴치용 베드네트

마 열대산 목재(제44류)의 범위 확대

세계식량기구(FA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은 임업자원의 교역 모니터링과 무역통계 수집을 위해 제44류에서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WCO에 요청하였다. 현행 HS에서는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서 열대산 목재를 '아부라(abura)'를 포함한 총 88종의 나무로 한정하고 있으나 ITTO 등은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462종의 나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WCO는 이 개정안을 수용하여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한정하는 제44류 소호주 제2호를 삭제하고, HS 해설서 제44류의 마지막 부분에 열거된 열대산 목재를 모두 열대산 목재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7] 열대산 목재 관련 주요 개정

HS	HS 2012	HS 2017
제44류 소호주 2	소호 제4403.41호...에서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	< 삭제 >
4403.4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기타(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2)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 반영

정보통신(IT), 바이오산업(BT)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이 원활히 교역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품목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WCO는 HS에 주요 신상품의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분류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6차 HS 개정에서도 교역규모와 중요도가 높은 신상품을 HS에 반영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전자집적회로(IC), 전기자동차 등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분류를 위한 제8539호 용어개정 및 소호신설

LED 램프는 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램프로서,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어 교역규모가 증가하는 신상품이다. 그러나 현행 HS에는 LED 램프를 명확히 규정하는 호가 없어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 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6차 HS 개정에서는 LED 램프를 제8539호의 용어에 포함시키고, 'LED 램프'를 특계하는 소호(제8539.50호)를 신설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8] LED 관련 주요 개정

HS	HS 2012	HS 2017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LED)램프
8539.50	< 신설 >	발광다이오드(LED)램프



나) 전자집적회로(IC) 범위 확대를 위한 제85류 주 개정

전자집적회로(Electronic integrated circuit)는 많은 소자를 하나의 기판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 전자소자로서 메모리, 컨트롤러, 제어회로, 논리회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행 HS에서 전자집적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되며, 제85류 주 제8호나목에서는 전자집적회로의 범위를 '모노리식·하이브리드·복합구조칩 집적회로'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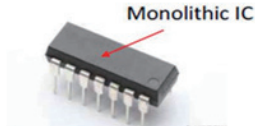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집적회로가 개발됨에 따라, 제8542호의 범위에 보다 광범위한 전자집적회로를 분류할 수 있도록 HS를 개정하였다. 즉, 제8542호의 범위를 규정하는 제85류 주 제9호나목^㉒에 새로운 형태의 집적회로인 '복합부품 집적회로(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 MCOs)'를 추가함으로써 제8542호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MCO는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하나 이상의 '실리콘기반 센서·액추에이터(actuators)·오실레이터(oscillators)·공진기(resonators) 등을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한 것으로, 현행 HS에서는 제8542호가 아닌 해당 기계의 부분품 등으로 분류되나 2017년부터는 모노리식·하이브리드·복합구조칩 집적회로와 함께 제8542호에 포함된다.^㉓

㉒ 현행 HS(HS 2012버전)의 제85류 주 제8호나목은 HS 2017에서 제9호나목으로 번호가 변경되었다. 이는 HS 2017 개정에서 제85류에 새로운 주 제3호(제8507호의 '축전기'관련)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㉓ 다만, 우리나라는 관세율표 개정시 6단위 소호 아래의 국내 분류에서 MCO의 기존 관세율 체계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고 종전의 관세율을 유지하는 형태로 수용하였다.

[표 9] 전자집적회로 관련 주요 개정



모노리식 집적회로
※ HS 2012 & 2017 - 제8542호 분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
※ HS 2012 - 제8542호 제외
※ HS 2017 - 제8542호 분류

HS 2012	HS 2017
제85류 주 8(나)	제85류 주 9(나)
<p>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p> <p>1)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p> <p>2)하이브리드 집적회로</p> <p>3)복합구조칩 집적회로</p>	<p>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p> <p>1)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p> <p>2)하이브리드 집적회로</p> <p>3)복합구조칩 집적회로</p> <p>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u>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u> <u>실리콘 기반 센서 · 액추에이터(actuators) · 오실레이터(oscillators) · 공진기(resonators)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 · 제8533호 · 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u> <u>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 리드, 볼, 랜드, 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u></p>

다) 전기자동차분류를 위한 소호 신설

환경오염과 화석연료 고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많은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신상품의 교역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솔린·디젤 자동차의 대체물품으로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국제교역이 증가하면서 자동차가 분류되는 제87류의 분류체계에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즉, 현행 HS의 제8702호와 제8703호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엔진 중심으로 소호가 구분되어 있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분된 무역통계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HS 2017 개정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기술발전, 반영하고자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분하여 별도의 소호에 분류하는 체계로 바뀐다.

[표 10] 전기자동차관련 주요 개정

HS 2012	HS 2017
8703.10 -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8703.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8.3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2 - 그 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	8703.5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21-24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3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7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90 - 기타	8703.8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8703.90 - 기타

3) 무역패턴과 무역거래량 변화 반영

상품의 무역패턴과 무역거래량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HS 품목분류표의 호나 소호에 특계된 물품의 무역패턴과 무역거래량이 특계될 당시와는 크게 달라지는 경우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HS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6차 HS 개정에서 이런 맥락으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제4011호) 분류체계 개편

현행 HS 제4011호에서 고무타이어는 헤링본 트레드(tread)가 있는 것인지 여부와 림(rim)의 지름을 기준으로 6단위 소호가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고무타이어는 교역시 사용되는 차량이나 기계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거래되고 있어 이런 무역패턴을 제4011호의 분류체계에 반영하였다.

[표 11] 고무타이어 관련 주요 개정

HS 2012	HS 2017
40.11 -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 -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 (station wagon) 과 경주 자동차 용을 포함한다]	4011.70 - 농경용 ·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011.20 - 버스용·화물차용	4011.80 - 건설용 · 광산용 ·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011.30 - 항공기용	4011.90 - 기타
4011.40 - 모터사이클용	
4011.50 - 자건거용	
4011.60 - 기타(헤링본이난 이와 유사한 트레드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제48류에서 '신문용지'의 범위 확대

현행 HS 제48류의 주 제4호와 제8호는 '신문용지'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용지의 크기가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현재의 규격기준보다 작은 물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주 규정을 개정하였다.

[표 12] '신문용지'관련 주요 개정

HS 2012	HS 2017
4. 이 류에서 "신문용지"란 40그램 이상 65그램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종이를 말한다.	4. 이 류에서 "신문용지"란40그램 이상 65그램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종이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종이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 (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다) 제6907호와 제6908호의 도자제 타일 분류체계 개편

현행 HS에서 도자제의 타일은 유약처리 여부에 따라 제6907호와 제6908호로 구분되며, 이들 두 호 내에서는 타일의 크기에 따라 소호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도자제 타일의 교역시에는 타일을 유약처리 여부나 크기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타일의 품질지표인 수분흡수계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HS 2017에서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제6908호를 제6907호에 병합시키고, 통합된 제6907호는 수분흡수계수에 따라 소호가 구분되는 분류체계로 개정하였다.

[표 13] '도자제 타일'관련 주요 개정

HS 2012	HS 2017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소호 제6907.30호 및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
6907.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6907.21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6907.90 기타	6907.22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를 초과하고 100분의 10 이하인 것 6907.23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6907.30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소호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 6907.40 피니싱 세라믹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9.08] (삭제)

라) 무역거래량이 미미한 품목의 특계 호 삭제

HS의 특정 호에 계기된 물품이 대체상품 등장, 수요감소 등으로 국제 무역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면 해당 호를 삭제하고 다른 호에 병합하는 개정이 이루어진다. 제6차 HS 개정에서는 무역거래량 감소로 제2848호(인화물)과 제8469호(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머신)가 삭제되었다.

[표 14] 무역거래량 감소로 삭제된 호

HS 2012	HS 2017
28.48 인화물	[삭제] ▶ 2848호의 물품은 제2853호(그 밖의 무기화합물)에 통합
84.69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머신	[삭제] ▶ 8469호의 물품은 제8472호(그 밖의 사무용 기계)에 통합

4) 분류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

제6차 HS 개정에서는 특정 물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 '유아(infant)용'식품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주 및 소호 용어 개정

현행 HS의 제16류, 제19류, 제20류, 제21류에는 '유아(infant)용'식품을 특별히 규정하는 주(Notes)와 소호가 다수 있다. 그런데 '유아(infant)'라는 용어의 정의가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되어 품목분류의 불일치 문제로 이어졌다. 즉, 유아(infant)의 범위를 1세 이하로 해석할 것인지 3세 이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섭취하는 연령에 따라 제품이 구분되는 조제분유에 대해 품목분류 쟁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제6차 HS 개정에서는 명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연관된 주와 소호의 용어에서 '유아(infant)용'어를 '영유아·어린이(infant and young children)'로 개정하여 통상 3세 이하의 어린이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표 15] '유아용'식품 관련 주요 개정

HS	HS 2012	HS 2017
제16류 소호주 제1호 제1901.10호 제20류 소호주 제1, 2호 제21류 주 제3호	유아(infant)	영유아·어린이 (infant and young children)

나)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용 모니터와 프로젝터의 범위 명확화

현행 HS 제8528호에서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소호가 구분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도 큰 차이가 있다. 기술발달로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가능한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등장하면서 자동자료처리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국가별로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다.

우리나라는 모니터와 프로젝터에 대해 자동자료처리기계용과 기타의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당 소호의 용어를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표현 대신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사용가능한(capable of being used in conjunction with)"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WCO가 이를 제6차 HS 개정에 반영하였다.

[표 16]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모니터와 프로젝터 관련 주요 개정

HS 2012		HS 2017	
8528.41 8528.51 8528.6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8528.42 8528.52 8528.62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계에 <u>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u>

다) '일각대·양각대·삼각대'의 품목분류 통일을 위한 제9620호 신설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정밀기기 등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삼각대 등은 현행 HS에서 특정한 호나 소호에 특계되어 있지 않으며, 구성재료에 따라 제39류(플라스틱제품), 제44류(목제품), 제76류(알루미늄제품) 등으로 분류되거나 제90류의 기기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서 기기와 같은 호에 분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분류체계로 인해 나라마다 삼각대 등을 서로 다르게 분류하는 문제가 있어 제6차 HS 개정에서는 명확하고 통일된 분류를 위해 제9620호를 신설하여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등을 구성재료에 상관없이 신설된 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7] '일각대·양각대·삼각대' 관련 주요개정

HS	HS 2012	HS 2017
9620	< 신설 >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HS 2017 개정의 시사점

2017년 발효되는 제6차 HS 개정에서는 품목분류의 명확성과 통일성 확보, 다양한 HS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 반영, 무역패턴과 무역거래량의 변화 반영 등의 측면에서 많은 개정이 있었다. 농업산품, 화학품, 목재, 섬유, 기계류 등 HS 전반에 걸쳐 호와 소호, 부·류·소호의 주(Notes)가 신설·삭제되거나 범위가 변경되는 개정이 있었다. 그 결과 HS 2017 개정은 6단위 소호가 5387개로서 그간의 제정·개정안 중 가장 많은 HS 코드로 구성된 품목분류표가 되었다.

HS 2017의 주요 개정내용을 토대로 향후 HS 개정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과 사회적 관심 품목의 HS 특계가 확대되고 있다.

HS는 관세·무역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관심물품의 무역통계 수집과 국가간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에 의한 HS 개정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안전·보건 등의 분야는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WCO도 이들 분야에 대한 개정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S 2017 개정이 현행 HS 2012 개정보다 소호가 182개나 증가한 것은 환경과 사회적 관심 품목의 HS 특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는 향후의 HS 개정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WCO에서 현재 논의 중인 HS 제7차 개정(HS 2022) 안건 중에도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 전락물자, 테러물품, 지카바이러스용 의약품 등 환경·사회적 관심품목의 HS 특계 개정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HS 특개 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국내외 동향과 관련 부처·업계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나 테러물품 등 HS 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개정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제적인 품목분류 통일화를 위해 통합 호를 신설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나 명확한 분류기준의 부재로 인해 유사한 물품이 여러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국제적으로 품목분류의 불일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HS 개정시 새로운 호를 신설하여 연관 물품을 하나의 호로 통합함으로써 간소하고 명확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HS 2007 개정에서는 기능·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호에 분류되던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신설된 제8486호에 통합하였으며, HS 2012 개정시에는 구성재료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던 유아용 기저귀·위생용품 등을 신설된 제9619호에 통합하였다. 이번 HS 2017에서는 구성재료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던 '일각대·이각대·삼각대 등'을 신설된 제9620호에 통합하는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HS 2022 개정논의에는 적용되는 기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제8524호에 통합하는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합호의 무분별한 신설은 HS의 분류체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지만, 유사물품을 구성재료나 요소에 따라 서로 다른 호로 분류하는 것이 분류의 합리성과 통일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에는 통합호를 만드는 것이 명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분류체계에서 기능, 용도, 구성요소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3D 프린터나 로봇, 드론 등에 대해 향후 통합호의 신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HS 개정에 우리나라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HS 2017 개정의 특징은 우리나라가 직접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개정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어 반영된 내용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HS 2017 개정에서 제8528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용의 모니터와 프로젝터의 기술발전 동향을 반영한 소호 용어 개정을 직접 제안하여 우리나라 개정안을 반영시켰으며, 제8539호에 LED 램프를 특개하는 개정도 우리나라가 HS 위원회에 질의한 'LED 어셈블리' 품목분류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향료용·의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제1211호에 '냉장·냉동한 것'이 포함되도록 호의 용어를 개정하는 제안도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등 많은 부문에서 적극적인 개정 의견 개진과 선진화된 분류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HS의 개정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높은 품목분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WCO에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의 개정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나 해외통관애로 발생품목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HS는 주기적인 개정을 통해 무역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분류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상품과 무역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5년 주기의 개정은 다소 느리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모든 체약당사국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합의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하는 측면으로 보면 HS 개정이 결코 쉽지 않은 많은 일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WCO는 현재의 개정 시스템에 안주하지 말고 HS가 국제공통의 다목적 상품분류체계로서의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신화 되고 진보된 품목분류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HS의 개정에 발맞추어 관세율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 해설서 등에 개정내용을 적절히 잘 반영하고, 국민들이 개정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물품들이 HS에 반영되어 품목분류가 명확해지고, 해외 통관애로나 국제품목분류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의 HS 개정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선진화된 분류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활용 성공사례

누적기준 활용 모델

한-중 FTA 활용 모델 I

한-중 FTA 활용 모델 II

2016 FTA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01

[FTA 활용 성공사례]

누적기준 활용 모델



추진배경

- 수출자가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계약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수입 원재료를 역내 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

누적기준 :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계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비즈니스 모델 I (체계도)

- (재료누적)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판정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며 모든 FTA협정에서 인정
- (공정누적)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페루 FTA에서는 인정되나, 한-인도, 한-아세안, 한-EU, 한-EFTA FTA에서는 불인정

누적규정 활용 모델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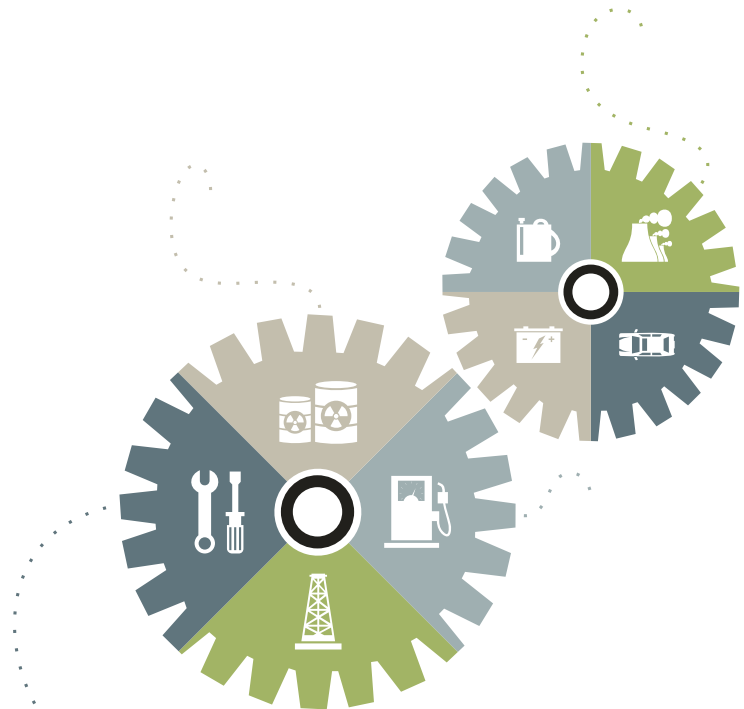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첨부이 필요하며, 협정에 공정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에서 누적을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정누적 인정가능

누적규정 활용 모델

구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인도	아세안	EFTA/ EU/터키
재료누적	○	○	○	○	○	○	○
공정누적	○	○	○	○	×	×	×
근거규정	제4.5조	제4.9조	제6.6조	제6.5조	제3.7조	제7조	3조

활용 효과 I

-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고,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체약국간 교역촉진)



비즈니스 모델 II (체계도)

-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산지 판정시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완제품의 원산지자격 취득이 용이해져 FTA활용 가능성 및 편의성 증대

누적규정 활용 모델

누적미적용



누적적용



※ 유의사항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하며, 한-중 FTA와 같이 협정에 공정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에서 누적을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정누적 인정가능

활용 효과 II

-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고,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체약국간 교역촉진)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 누적규정 적용 현황

구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인도	아세안	EFTA/ EU/터키
재료누적	○	○	○	○	○	○	○
공정누적	○	○	○	○	×	×	×
근거규정	제4.5조	제4.9조	제6.6조	제6.5조	제3.7조	제7조	3조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2015년

FTA, 수출전선에 무지개를 띄우다.



기업 및 제품소개

- E사는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코팅 도료(Paint) 전문제조업체로 국내 자동차회사에 내수판매와 미국, EU, 인도, 중국 등 해외로 수출
 ※ 2009년도 500만불 수출의 탑, 2010년도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수출물품(Paint, HS 3208)은 자동차 내·외부의 범퍼, 핸들, 휠커버, 라디에이터 그릴, 섀시프, 센터 콘솔, 글로브 박스, 오디오판넬, 에어백,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코팅재로서 첨단 기술 적용 제품

FTA 활용전 상황

- 동사는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FTA 협상 및 발효국인 인도, 체코, 중국, 미국 등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화 전략 추진
- 2011년 FTA 체결국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55%(850만불)를 차지하여 FTA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 FTA 협정별 현황

수출물품	적용협정	기본세율(%)	협정세율(%)
3208.10	한-미	3.7	0
	한-EU	6.5	0
	한-인도	12.5	7.8
3208.20	한-미	3.6	0
	한-EU	6.5	0
	한-인도	12.5	7.8

수출물품	적용협정	기본세율(%)	협정세율(%)
3208.90	한-미	3.2	0
	한-EU	6.5	0
	한-인도	12.5	5

- 한-미, 한-EU는 관세 즉시철폐 품목으로 3.2%~6.5% 관세 혜택
- 2012.3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한-EU, 한-인도 CEPA 등 활용

장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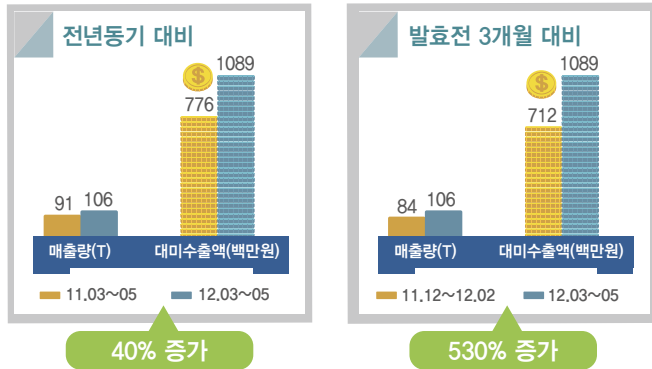
- 한-미 FTA 활용 장애요인
 -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미제출 ⇒ 원산지결정기준(CC) 미충족
 - 인적 물적 비용 발생 ⇒ 소요 원재료 전체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미확보

극복 방안

- 한-미 FTA 활용 극복과정 : FTA활용 Total Consulting 실시
 -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재료관리 단순화(인력/비용 절감)
 - 미국산 원재료를 수입하는 국내 협력업체를 설득하여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여 누적기준을 적용(세번변경기준 충족)
- 한-미 FTA 협정의 도료(Paint) 원산지 결정기준

HS	품 목	원산지 결정기준
3208.10	Based on polyester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C)
3208.20	Based on acrylic or vinylpolymer	
3208.90	other	

활용 효과



- 수출증가에 따른 2012년도 연간 관세혜택 예상액은 약 6.6억원으로 추정

시사점

- 적극적인 노력하여 협력업체와 유대관계로 외국산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변경하여 FTA 활용 수혜 사례



02

[FTA 활용 성공사례]

한-중 FTA 활용 모델 I



지역 맞춤형 상품개발 모델



개요

- 넓은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 및 복잡한 민족구성으로 인한 지역별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발로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체계도)

- 중국은 한반도의 약 44배(한국의 약 95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에 전체인구의 92%에 달하는 한족(漢族)을 포함하여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활한 영토에 따라 다양한 기후 유형이 존재하고 있어, 지역별특성에 맞춘 상품의 개발과 해당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지역맞춤형 상품 개발 한-중 FTA 활용 모델



활용효과

- 소비자 특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상품이 개발됨으로써 중국시장 진입 실패 가능성 절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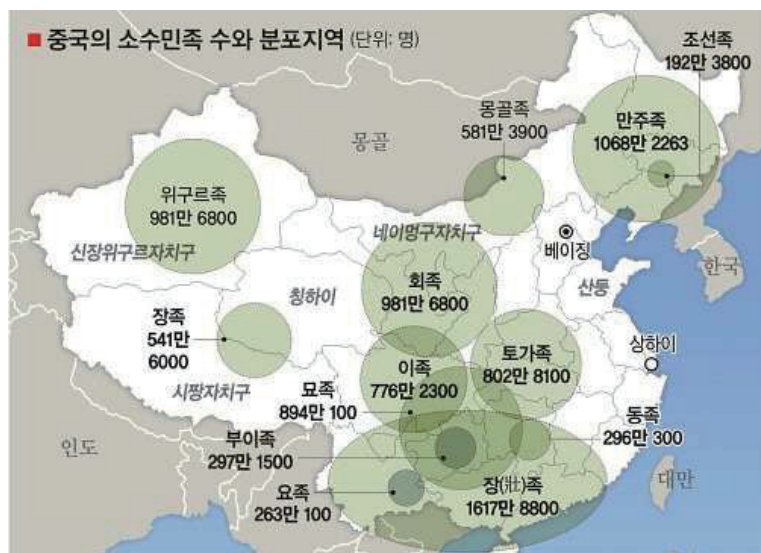
중국 주요 지역별 거주자 특성

지역	도시명	특성
화북(華北)	북 경(北京)	중국의 수도이자 고도(古都)로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고 예의를 중시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음
	천 진(天津)	비교적 인색한 편이며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가정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강함
동북(東北)	흑룡강성(黑龍江省)	성격이 호방하고 거치나 순박한 면이 있으며, 술을 좋아하고 손님을 매우 반기는 편임
	길 림 성(吉林省)	흑룡강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지님
화동(華東)	상 해(上海)	상해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며 문화와 교육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장사에 매우 능함
	북 건 성(福建省)	산을 사이에 두고 연해지역 사람들은 개방·진취적이고 모험심도 강한 반면, 내지 거주자들의 경우 보수적이며 배타적임

지역	도시명	특성
화중(華中) 화남(華南)	하남성(河南省)	고대 문화의 중흥지였던 만큼 보수적이며 봉건적으로 진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배타적
	광둥성(廣東省)	서로 다른 많은 민족들이 혼재해 있어 민족적인 활력이 넘쳐나며, 모험을 좋아하고 성질이 급한 편임
서남(西南)	사천(四川)	순박하고 질서와 예의를 존중하며 소박한 생활 방식을 선호
	서장(西藏)	주로 장족(藏族)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문화와 풍습 등이 모두 티베트 불교(라마교)와 밀접
서북(西北)	감숙성(甘肅省)	소박하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강한 편임
	청해성(青海省)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으며 장족(藏族)이 많아 라마교와 연관된 문화가 보편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함

중국의 지역별 민족분포와 기후특징

주요 소수민족 분포



자료 :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

소비자 선호형 브랜드 구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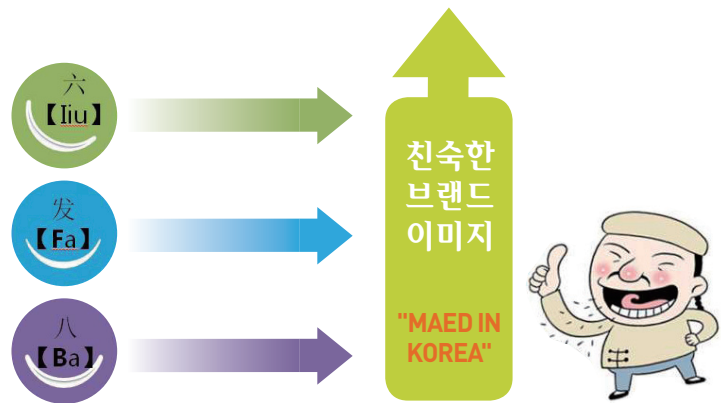
개요

- 중국시장에 투자하거나 자사제품을 중국 시장에 출시할 때 브랜드에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체계도)

- 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상호나 상품명 속에 소비자의 선호를 자극할 수 있는 발음과 뜻을 담아 작명함으로써 중국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

중국 소비자 선호형 브랜드 구축 모델



활용효과

- 중국 소비자에게 친숙한 의미전달로 소비자 선호도 향상이 가능하여 중국 내수시장 공략 가능
- 브랜드 가치상승으로 인한 제품인지도 향상과 고급화 전략으로 전환 가능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해음현상**

- 중국어는 표의문자(表意文字)로 글자마다 의미와 발음이 존재하여, 서로 다른 글자가 같거나 비슷한 발음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현상을 해음현상이라 함
- 따라서 중국인들은 좋아하는 의미를 가진 글자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글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활용하여 브랜드명이나 상호를 정할 경우 친숙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숫자 '6'을 뜻하는 '육(六)'은 "리우(Liu)"로 발음되어 선호하는데 이는 "순조롭다"는 뜻의 '유리(流利)'의 '유(流)'가 "리우(Liu)"로 발음되기 때문이며, 숫자 '8'을 뜻하는 '팔(八)'은 "빠(Ba)"로 발음되는데 이는 "돈을 벌다"는 뜻의 '발재(發財)'가 "파차이(Fa Cai)"로 발음되어 "벌다"는 뜻의 '발(發)'과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임

중국내 브랜드 네이밍 성공사례

구분	브랜 드		의 미	비고
	원 명 칭	중국시장		
상호	까르푸 (Carrefour)	지아러푸 (家樂福)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복)이 가득	대형마트
	이마트 (E-Mart)	이마이더 (易買得)	쉽게 살 수 있는 곳	대형마트
	KFC	컨더지 (肯德基)	좋은 닭을 즐긴다	패스트푸드
	이케아 (IKEA)	이지아 (宜家)	싸고 편리한 집	가구매장
	오리온 (ORION)	하오리요 (好麗友)	좋은 친구	제과업체
상표	코카콜라 (Coca Cola)	커코우커러 (可口可樂)	입을 즐겁게 한다	청량음료
	처음처럼	추인추러 (初飲初樂)	처음 마시는 첫 즐거움	주류
	락앤락 (Lock & Lock)	락구락구 (樂扣樂扣)	즐겁게 덩다	주방용품

기활용 FTA 즉시 적용 모델

개요

- 다양한 협정 활용을 위한 원부자재 구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특화된 생산라인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체계도)

-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특화하여 중국산 원재료 사용 등 對중국 특화형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한-중 FTA 활용 수출에 집중함으로써 활용성과 극대화

對중국 구매선 전환 모델



활용효과

- 중국산 원재료 사용으로 원가절감과 원산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절감 등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한-중 FTA 활용 강화
- 중국 소비자 기호에 특화된 제품 생산으로 시장확장이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 실현

03

[FTA 활용 성공사례]

한-중 FTA 활용 모델 II



「YES FTA 차이나센터」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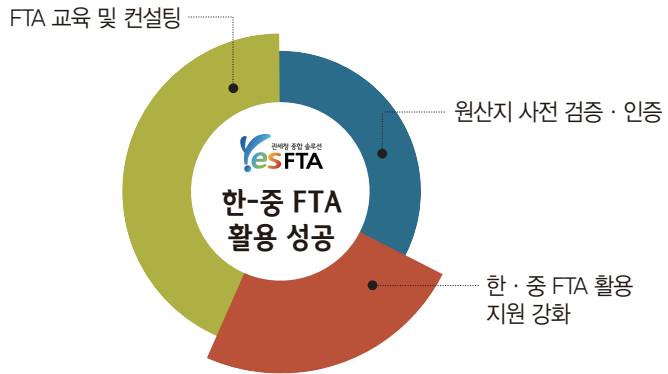
개요

- 한-중 FTA 활용 정보 및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도적인 지원(컨설팅 등)이 필요한 수출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체계도)

- 기업의 한-중 FTA 활용수준 및 단계에 맞춰「YES FTA 차이나센터」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 * FTA전문가로부터 교육 및 컨설팅은 물론 피드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對중 수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YES FTA 차이나센터」활용 모델



#1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률 증대를 위해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30개 지역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한-중 FTA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 본 센터는 원산지관리 및 증명, 해외통관, 사후검증대응 등 기업들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을 일선세관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고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 상담 제공
- 관세청은 또한 FTA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이동버스)』를 도입하여 전국지역을 순회 투어 컨설팅 수행
- FTA 전문 컨설턴트 200여명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APTA를 활용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수출기업의 9% 수준, 약 3,000개사)의 한-중 FTA 활용체제 신속 전환 지원

#2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회와 협업으로 공익관세사를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YES FTA 차이나센터 배치

-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되어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 수행
 - 차이나인포(china-info.customs.go.kr)에서 온라인 상담 지원
- 특히, 상반기에는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경인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운영에 참여하여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 진행

활용효과

- 세관의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민간 컨설팅 비용 절감
- 한-중 FTA 활용방법 조기 숙지로 안정적인 중국시장 선점효과 거양
- 「YES FTA 차이나센터」를 활용하여 對중 수출이 활발한 기업은 물론 잠재적 활용기업들까지 한-중 FTA 활용 성공 가능성 극대화

여기서 잠깐!!! 관세청 2배 활용 tip

- 원산지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원산지사전검증제도 활용
- 예산적 어려움으로 FTA활용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기업
☞ YES FTA 컨설팅 사업 활용
- 신규 채용 원산지관리 전담직원 능력배양 필요기업
☞ YES FTA 아카데미 수강
- 한-중 FTA 활용정보 부족 중소기업
☞ YES FTA 차이나센터 문의
☞ 차이나인포에서 온라인 상담(china-info.customs.go.kr)
-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기준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설치 등 FTA 활용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
☞ 4종 진단 지원세트' 활용
* 품목분류사전심사, 원산지결정 관련 품목분류 서비스 제공
☞ 관세평가분류원 'Quick-HS 차이나센터'활용

농수산가공식품 활용 모델

개요

-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원산지 기초농축산물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생산 후 한-중 FTA 특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체계도)

- 세계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국내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對중 수출에서 비교우위 차지

농수산가공식품 활용 모델



여기서 잠깐!!! 가공식품 한-중 FTA로 판로를 연다

- 한-중 FTA의 가공식품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생산공정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면 FTA특혜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라면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한-중 FTA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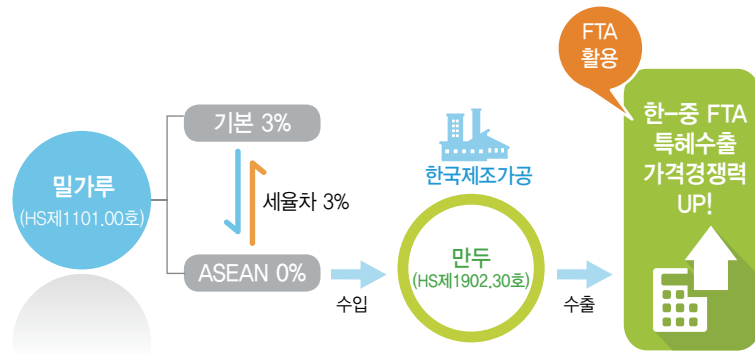
예시) 김치, 조제 분유, 라면, 소시지, 햄, 참치캔, 소주, 베이커리 제품, 믹스커피, 잼 등

활용효과

- 저렴한 기초농축산물을 수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 원재료비 절감 효과와 국내생산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발생
- 한류 확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산(MADE IN KOREA)'이라는 이점을 통해 수출 확대

활용예시

- 만두(HS 제1902.30호)



여기서 잠깐!!! 원재료 수입선 변경으로 한-중 FTA 2배 활용 tip

- 원재료를 FTA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출입 쌍방향 FTA특혜 활용이 가능해져 추가적인 경쟁력 확보 가능
- 특히, 중국산 기초농축산물을 수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누적기준*'의 적용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 원천 제거 가능
 - * '누적기준(Accumulation)'이란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 (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수출입 쌍방향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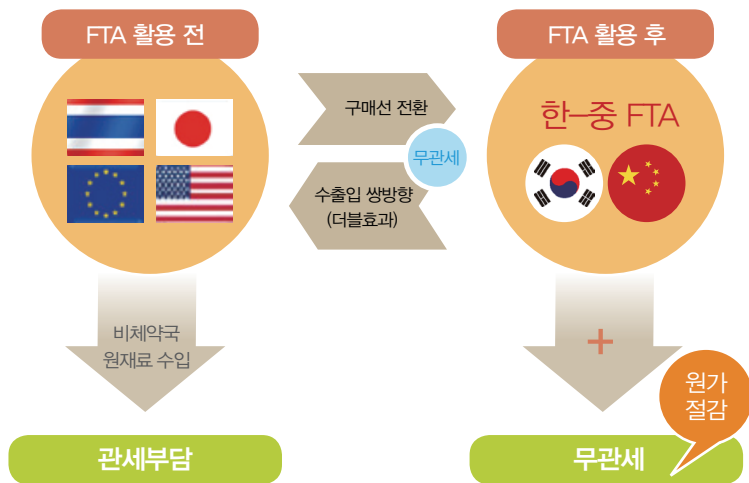
개요

-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수출기업 중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선 전환이 용이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체계도)

- FTA 비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원자재를 중국으로 전환하여 수입 시 관세혜택 적용 → 원가절감 → 제품 가격경쟁력 상승
- FTA 비체약국으로만 수출하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여 수출시 관세혜택 적용

수출입 쌍방향 한-중 FTA 활용 모델



비즈니스 모델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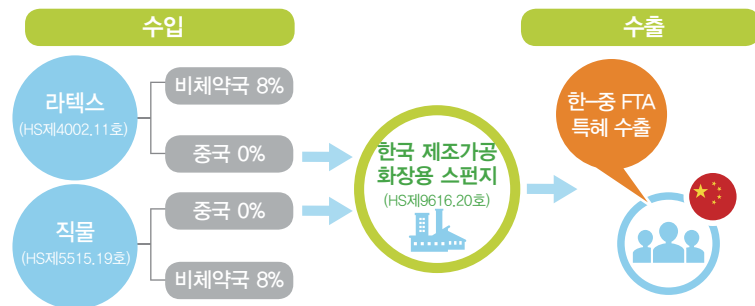
-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 완화와 더불어 기업의 이익 손실 없이 원가절감이 가능해져 가격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증대 및 수출다변화 가능
- 수출입 쌍방향 관세혜택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 창출 가능

활용예시

- 화장용 스펀지(HS 제9616.20호)

HS CODE	협정	기준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발효 1년	16.2%	
9616.20	한·중 FTA	18%	발효 2년	14.4%	CTH or RVC 40%
			발효 3년	12.6%	
			발효 4년	10.8%	
			발효 5년	9.0%	
			발효 6년	7.2%	
			발효 7년	5.4%	
			발효 8년	3.6%	
			발효 9년	1.8%	
			발효 10년	0.0%	

활용효과



- 원재료 수입시 관세 8% 절감 및 수출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매년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라 가격경쟁력 UP ↑

* 자료:

한-중 FTA 비즈니스는 모델 I, II는 관세청에서 보급한 한-중 FTA 10대 비즈니스 모델 발췌자료임

2016년 FTA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국제원산지정보원



지난 7월 22일 관세청은 「FTA 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서울세관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번 FTA 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수출입 기업 임직원, 관세사, 유관협회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중 FTA 활용, 세관의 FTA 컨설팅 지원활용, 미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에 요구에 대응한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된 사례 81편 중 엄선된 8편의 성공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FTA 활용 성공사례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자신만의 노하우로 체화시키면 기업에게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8개 기업중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오나노캠,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보령메디앙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기업들의 FTA 활용 전략 및 대응방안을 들어본다.



대상

내수기업의 한계를 벗고 수출기업의 날개를 달다

(주)이오나노켄



대상을 받은 (주)이오나노켄은 LCD TV, 휴대폰에 사용되는 도료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근래 들어 중국 가전업체의 LCD TV 생산 확대와 가격인하로 국내 LCD TV 생산업체의 경쟁력 하락과 함께 40%이상의 매출이 급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

기업의 존폐위기에 놓인 동사는 중국에서의 원산지명세서 발급을 조건으로 수출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를 소개받아 한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동사는 이러한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전에 FTA 컨설팅을 통해 한-중 FTA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FTA 컨설팅 결과, (주)이오나노켄은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인해 FTA를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진단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수출물품(완제품)과 역외산 원재료의 HS 4단위가 같아 동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아 수출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이오나노켄은 대전세관의 문을 두드렸다. 동기업은 대전세관으로부터의 FTA 컨설팅을 통해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대전세관 공익관세사¹⁾가 동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다시 검토하였다. 특히, 동기업은 대전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물품

1) FTA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관세사를 지칭함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였고, 수출물품과 원재료의 HS 4단위가 다른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오나노켄은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주)이오나노켄은 한-중, 한-EU, 한-아세안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FTA 원산지관리역량 강화 및 타 협정에 대한 수출기반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수출계약 6만불 달성과 '16년에는 100만불 수출달성이라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동사는 자동 간이정액 환급업체 등록 수출과 환급으로 재정기반을 건설화할 수 있었다.

(주)이오나노켄은 관세사, 대전세관, 수출업체가 FTA 활용을 위해 상호 약점을 보완하고 최상의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FTA 활용 모델을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FTA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여 한-중 FTA 활용에 성공하였다.

최우수상

한-미 FTA ‘수출자 직접 검증’ 까다로운 화학검증, 원산지 보충기준으로 극복하다

(주)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1987년 설립된 기업으로 자본금 126억원, 매출액 2,900억원, 인원수 245명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동사는 폴리아세탈 및 Nylon, PBT Compounding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동 기업은 전체 매출의 65% 이상을 중국,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FTA 체결 이후에는 FTA 대상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대되었다.

그러던 중 동사는 2016년 1월 미국세관으로부터 수출품에 대한 사후검증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게 되었다. 해당기업은 기한 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불충족 예비판정(1차 대응실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수입자와의 거래 단절과 회사 측에 큰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검증결과 수출품목의 특혜관세 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20일 내에 추가적인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혜관세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해당사실을 서울세관에 문의하였고 서울세관의 적극적인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강구하였다. 상담을 통해 기한 내에 2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Chemical Reaction' 및 'CTH with Minimus Rule'을 적용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후 동기업은 미국의 CBP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충족 최종결정 결과를 통보 받게 되었고, 무사히 검증을 대응하여 대미 주요 거래처에 안정적인 수출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동기업은 세관 또는 관세사 등의 자문·조력을 1차적으로 받고 대응방향을 확립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대응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대륙의 동심을 사로잡다

(주)보령메디앙스

(주)보령메디앙스는 1979년 설립 이래로 수유 젖병, 젖병 세제 등 유아생활용품 생산 업체로 유아생활 부문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동 기업은 매출액의 89%를 내수시장에 의존하였기에 급작스런 내수 경기 악화는 동 기업에 국내매출 급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주)보령메디앙스에 나타난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인 중국 산아제한 정책 폐지와 한국산 유아용품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매출 상승이 기대되고 있었다.

다만, 동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한-중 FTA 활용을 위한 몇 가지 난관에 직면하였다. 우선, FTA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해 무지하였고, 수유 젖병의 한국과 중국의 다른 HS(한국:3924.90, 중국:3924.10)해석으로 세율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OEM 생산 반제품이 완제품과 동일세번으로 세번변경기준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세관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였다. 확인결과, HS 해석이 다를 경우 체약상대국의 공식적인 입증가능 서류로 C/O 발급이 가능하였다. 또한, 중국 천진 법인에서 수입시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으로 중국 세번의 추가 인증이 가능하였다. 특히, 인천세관과의 원산지 관리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주)보령메디앙스는 FTA활용을 통해 관세절감 뿐 아니라 기업의 대중적인 이미지 상승이라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었다.

중국 판매법인으로의 수출로 자사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관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특히, 타 경쟁업체 대비 원가 경쟁력이 상승하였고, 체약상대국의 공식 입증가능서류로 C/O 발급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반제품 OEM 생산 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제출로 C/O 발급 또한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동 기업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자격 획득으로 한국산 상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었다.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전문가, 원산지 관리사

자동차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원산지 관리사
정익근 제17회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FTA 전문가로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 원산지 관리사
이창엽 울산세관 관세행정관

새벽과 주말시간을 활용해 합격한 원산지 관리사
김덕종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통관팀장

01

[FTA 전문가, 원산지 관리자]

자동차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원산지 관리자



정의근

제17회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저는 올해 8월부터 자동차 벤더업체 구매팀에서 근무하게 된 정의근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OJT 기간이라 구체적인 업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자동차 시트 프레임 등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조달, 협력사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기회를 제공해준 인연

저는 2015년에 머니투데이에서 주관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국제통상수출 입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 직원분의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처음으로 원산지관리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산지 관리사가 생소했지만, 함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지인이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원산지 관리자 자격증을 따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지인이 빌려준 원산지 관리자 책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간한 기출문제집으로 약 6주간 준비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학습

원산지 관리자 공부를 시작하는데 먼저 든 생각은 “합격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학교에서의 전공이 국제통상 관련 분야가 아니었기에, 관세법이나 품목분류와 같은 과목들은 제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학습 방법을 고민하던 중, 기출문제집을 먼저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부터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기출문제집을 통해 출제빈도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기본서를 학습하니 시험 준비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시간 절약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처럼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원산지 관리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유용한 학습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분야의 FTA 전문가를 꿈꾸다

원산지관리사를 준비하면서 현대자동차 고용디딤돌 과정을 지원하여 벤더 회사 인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중 원산지관리사를 준비 중이고 FTA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면접관계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인턴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타 벤더회사 정규직에 지원하고 결국 구매팀 신입으로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직 실무 경험은 부족하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에서 면접을 자주 보면서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구매팀으로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원산지관리사가 분명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저에게 자동차 부품 구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실무와 지식을 겸비하여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원산지관리사를 바탕으로 회계지식, 외국어 실력 등을 더욱 더 겸비하여 구매 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자동차 분야의 FTA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02

[FTA 전문가, 원산지 관리사]

FTA 전문가로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 원산지 관리사





이창엽

울산세관 관세행정관

저는 울산세관 통관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창엽 관세행정관입니다. 2000년에 관세청에 입사해서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대구세관을 거쳐 현재 울산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업무는 울산세관에서 수출입통관 및 FTA 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조금 더 FTA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공부한 방법은 교재를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풀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에 합격한 것은 업무를 하다보니 조금 더 FTA쪽에 대한 실무와 용어들에 대해 다른분들보다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여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업무와 밀접한 FTA 및 수출입통관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FTA 전문가로서의 공신력도 확보할 수 있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FTA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FTA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자격증 취득을 권유해드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여 FTA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03

[FTA 전문가, 원산지 관리사]

새벽과 주말시간을 활용해 합격한 원산지 관리사



김덕종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
회 조직위원회 통관팀장

저는 이전에는 관세청 소속 세관에서 통관업무, 심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통관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덕종입니다.

제가 시험을 보게된 계기는 우연히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취득하게 되면 추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공부할 때에는 초창기라 3일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하계휴가를 3일 내서 원산지 관리사 교육을 이수하였고, 아무래도 업무와 병행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시험은 당해 연도와 다음해는 떨어졌습니다.

이후 다음해는 사내에 원산지관리사 시험대비반을 편성하여 사내 강사를 통해 새벽과 주말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시 시험에 응시하였고, 결국 3년 만에 드디어 합격하였습니다.

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원산지관리분야를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FTA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부딪치는 부분적인 사안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중 원산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원산지 판정 실무지식을 겸비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통관팀장을 수행하는데 있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집중해서 공부했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끔 주위에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의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FTA 체결은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원산지관리가 상식이고 기본으로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 또한 갖추어서 인생의 플랜비로 삼는 것은 어떨지, 그 기회를 이번엔 잡으시길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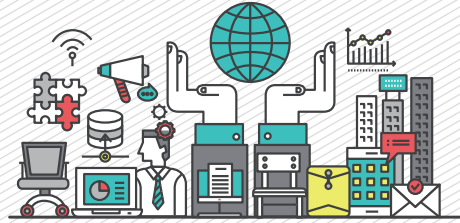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활용하기 쉬운 FTA-P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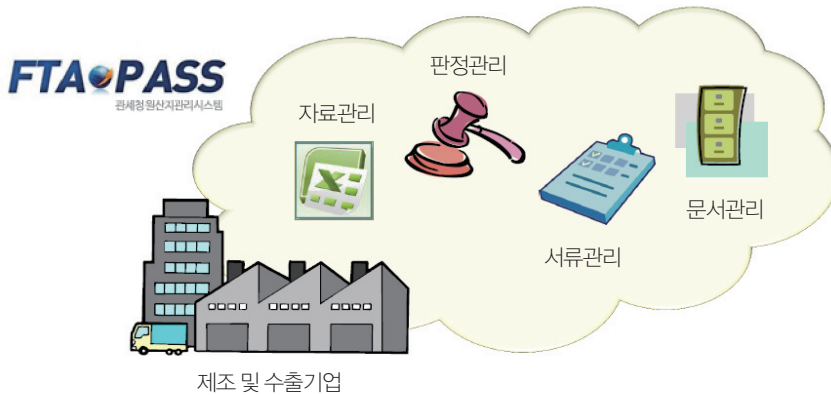
FTA-PASS 둘러보기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둘러보기



국제원산지정보원



자체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중소 제조 기업을 위하여 관세청 지원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다. 특히 제품의 재료·판정·서류관리 뿐 아니라 문서보관 등 종합적인 FTA 원산지 관리가 가능한 무료 프로그램이다.

FTA-PASS는 협정에 맞게 신규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새로운 기능은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전환된 것이다. 참고로 원산지증명 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을 달리한다.

특히, 한-페루 FTA의 경우 발효 5년간('11년 8월 1일~'16년 7월 31일)은 기관발급 방식을, 발효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FTA-PASS에서는 한-페루 FTA가 발효 6년차('16년 8월 1일-)에 접어들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자율발급으로 전환하였다.

FTA-PASS 신규기능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반수출자	발급방식: 기관발급 증명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자율발급 증명서식: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미화2천불 이하수출자포함)	발급방식: 자율발급 증명서식: 원산지신고서	

해당 자료는 서류관리 > FTA 증명서(자율) > 우측하단의 작성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적용협정 중 한-페루를 클릭한 후 수입자 정보와 수출물품정보를 등록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른다. 서명사용 여부중에서는 아니오를 선택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한-페루 FTA 자율발급이 완료된다.

한편, 국제원산지정보원 사후관리팀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기업의 원산지관리능력을 강화하고자 '16년 하반기 FTA-PASS 사용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서울, 부산, 대구 3곳에서 정기교육이 있을 예정이며, 7 월에는 3곳에서 사용자 교육이 있었다.

교육과정은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원산지관리시스템 이해 → 데이터 작성이론 → 자료등록 원산지 판정 → 실습 예제 풀이를 통해 FTA-PASS를 직접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FTA-PASS 홈페이지 기업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FTA-PASS 교육 일시 및 장소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장소
서울	25(월)	22(월)	26(월)	24(월)	21(월)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78길 8 한국빌딩
부산	6(수)			18(화)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 인재개발원
대구	13(수)			19(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랑로 301 정부대구지방 합동청사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100% 활용하기

콜롬비아 통상환경

- 개정된 관세법을 중심으로 -

Sandra Mora Pardo&Associates(Colombia) 개인 컨설턴트

[FTA 100% 활용하기]

콜롬비아 통상환경

- 개정된 관세법을 중심으로 -



Sandra Mora Pardo&Associates(Colombia) 개인 컨설턴트



콜롬비아국가개요

지난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하였다. 콜롬비아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국가이나, 광물 자원 부국으로 알려져 있다. 콜롬비아의 정식국명은 콜롬비아 공화국(Republic of Colombia)이며, 중남미에서는 대표적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행정구역은 32개주이며 1개 수도주로 되어 있다.

콜롬비아와의 주요 교역국은 수출의 경우 미국, 중국, 파나마, 스페인, 에콰도르 등이며, 수입국은 미국, 중국, 멕시코, 독일, 프랑스 등이다. 교역품목은 수출의 경우 1차산품인 석유, 석탄, 보석, 커피, 금, 광물 등이며, 수입품목은 컴퓨터, 자동차, 플라스틱 등의 완성품을 수입한다.

콜롬비아 관세제도

우선 콜롬비아는 안데안 공동시장 (Comunidad Andina)의 일원으로서 안데안 대외 공통 관세에 준하는 4단계 관세율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관세산정 방식은 종가세 (AD-VALORE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다. 콜롬비아의 품목군 별 관세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관세율	대상 품목
기본 체제	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20%	최종 소비자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예외	35%	승용 승용차
	15%	화물 승용차
변동관세		농산물

자료: 코트라 콜롬비아 무역관

한편 관세의 종류에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고,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상기 4단계 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특혜 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 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한 주요 경제협정 및 이에 따른 특혜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협정명	해당국가
Comunidad Andina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PAR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쿠바, 파라과이, 우루과이
FTA AELC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FTA Canada	캐나다
FTA Chile	칠레
FTA USA	미국
FTA Mexico	멕시코

자료: 코트라 콜롬비아 무역관

한편 콜롬비아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관세율 책자를 구입하거나 발간업체 홈페이지 유료 가입을 통해 알 수 있다.❶



❶ 코트라 자료

개정된 콜롬비아 관세법

개요

콜롬비아 수출입 통관환경은 최근 개정된 콜롬비아 규정(Decree 390 March 2016)을 통해 설명된다.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와 맺은 국제 무역 협정들(그 중에서도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및 대한민국),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위한 국제협정(교토협약)과 WTO의 '무역 원활화 조약'에서 파생된 국제 약속들을 반영하여 최근 그들의 세법을 개정했다.

지난 2016년 3월 7일 법령 제390호가 제정 되었고, 이 법령은 국가법으로 통합하려는 신규세관법령이다. 본 문서에서는, 새로운 법령에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관점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일단 발효가 되거나 시행이 된다면, 세관 이용자들에게 전보다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법령은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며, 통합 및 표준화가 된 디지털 세관 시스템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법령에는 새로운 법적 가이드라인의 점진적인 적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세관 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하고, 대·내외 사용자들에게 트레이닝 과정을 제공한다. 이를 계기로, 지난 3월 22일부터 원산지 사전 심사, 관세청의 선택적 사용 그리고 관세청의 보증분야는 해당시스템이 시행 되었다.

신규 법령 제정의 목적

이 신규 법령의 제정은 최근 15년간, 앞에서 언급했던 나라들과의 무역 협정의 발효에 대한 회신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관세 조례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관세 분야의 신규 국제 약속들과 협정 준수란의 조화가 개정의 필요성 이었다.

실제로, 새로운 콜롬비아의 관세에 관한 법령은 세관 수속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 협약 (교토 협약)에서 착안 한 것이다. 이 협약에서처럼, 위험 관리시스템에 기초하여, 상품과 서류의 통관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와 세관이 실행하는 일들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는 최소한의 필요한 세관 통제만 실시하고, 세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발리에서 합의된 '무역 원활화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들인 원산지사전심사 시행, 특송 화물, 위험 관리 모델의 채택, 전자적 지급, 세관 대리인들의 선택적 사용,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 상품의 반출 및 통과 등도 반영되었다.

2016년 법령 390조는 대외 무역을 시행할 때 물류관리 라인에서의 안정성과 용이성,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세관 당국의 능력과 실질적인 이용 등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도 반영되었다.

이렇게, 수·출입, 통관 측면에서 관세절차의 실행 뿐만 아니라, 이전에 맺어진 협약 가이드 라인에 의해 세관보세창고 및 상호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상품 입,출고 관련 특별 절차들이 생성 되었다. 또한, 검역이 이루어지는 도착 지점에서 관세청과는 다른, 통제 당국의 검역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역 동시 검역소'가 설립되었다.

AEO제도 근거하여 신뢰도가 있는 수출업자에 쉽게 통관 수속 가능

2016년 법령390조의 세관 수속은 전 협약들을 기반으로 하고, 2014년 콜롬비아에서 수출업자들과, 혹은 다른 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조건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세관 통관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근거하여,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 쉽게 통관 수속을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법적 효과를 위해서,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사용자들 즉, 세관 당국에서 판단했을 때, 경제적인 지불능력을 가졌고, 그들의 채무 의무를 이행한 상태이며, 무역 사업자인 사람들을 식별하는 위험 관리시스템 설립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규칙에는 -앞에서 언급한 사용자들을 위한- 생략된 통관 절차, 수입세의 통합결제 및 후불결제, 간소화된 통관신고 절차가 포함된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의 논란 혹은 특혜관세를 요구하는 행동과 같은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서의 요구가 없어진다.

위험정도와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초한 사용자들의 선발은 무역 촉진에 기여하고, 상품과 사업자들을 관리하며 모든 세관 절차가 동일하고 표준화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2016년 법령 제390호의 가장 핵심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분류된 사업자 혹은 관리 시스템에서 낮은 위험 수준을 가진 신뢰가 있는 사업자들의 최소한의 정보와 서류로 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선택적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하는 것이다.

관세청을 통해야 하는 의무절차들이 그들의 창고에서 어떤 보증서를 보여 줄 필요 없이, 콜롬비아에 도착 후 48시간 내에 통관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거되었다. 이는 통관 절차를 위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이고, 도착지에서 상품들의 픽업이 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관세평가기준, 원산지 법규 적용, 관세평가, 관세의 면제와 환급 유예, 원산지 표시 등을 알기 위하여 관세품목분류에 한정되어 있었던 사항들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원산지 사전 심사로 영역과 범위를 늘렸다.

이런 경우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행과 채택을 위한 확정조건이 정해졌고, 원산지 사전 심사를 무기한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발행을 위한 조건들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렇듯,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특혜 관세를 사용 한다면, 관세청의 주도 하에 정확하고 광범위한 사전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2016년 법령 제390호의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각각의 무역협정은 준비된 메커니즘이 우위에 있다.

2016년 법령 제390항의 신규 관세 규정 중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예 방책으로 채택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부패성 상품 경우까지도 포함하며, 다른 통제 당국이 실행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메 커니즘을 사용한다. 또한, 콜롬비아와 이웃한 나라들 간 상품 이동 시 국경 교통을 쉽게 하는 절차의 설립과 이민국과 위생 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

게다가 최대 미화 200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서류 및 샘플을 포함한 상품의 반입을 위해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을 조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위 종류의 상품 반입을 용이하게 하는 특송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행자의 경우 위에 서 언급한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는 상품 반입 한도 금액 역시 높아졌다.

수입권과 수입세, 수입보세가공제도에 관한 내용 포함

2016년 법령 제390호에는 산업 재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재 및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상품의 반입을 위해 수입권과 수입세, 수입보세가공제도 및 역 외가공제도의 가동관(임시통관)을 중단하는 제도 하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범으로 분류되는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수출입업자들에게 더욱 엄격히 제재를 가하게 될 새로운 관세 제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새로운 관세 절차의 수령자에 게 간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엔 경고와 같은 제재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책임 면제, 과세 절감의 가능성 그리고 행정 처벌 절차 에 대한 독립된 두개의 결정기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정할 예정이다.

관세법의 올바른 적용과 의무, 세금 및 세금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유용 한 정보의 제공과 교환을 위해 2016년 법령 제 390호는 관세청 및 민간 기 업과의 기술 지원 및 협력 협정 체결 또한 예상하고있다.

② 해당 내용은 스페인어 원문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준비사항은 최대 2년내에 시행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이 기간은 실시간으로 새로운 관세 절차를 허가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②

맺음말

국내총생산 3,596억달러, 인구 4,822(추정)만명에 달하는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의 핵심 소비시장으로 손꼽히는 국가이다. 특히, 한-콜롬비아 FTA의 체결로 인해 콜롬비아는 이제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 콜롬비아로 수출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콜롬비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 협정을 체결한 첫번째 국가로써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개정된 관세법 내용을 잘 확인하여 FTA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 FTA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Pardo&Associates(Colombia)의 개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Sandra Mora가 기고하였으며,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스페인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은 저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콜롬비아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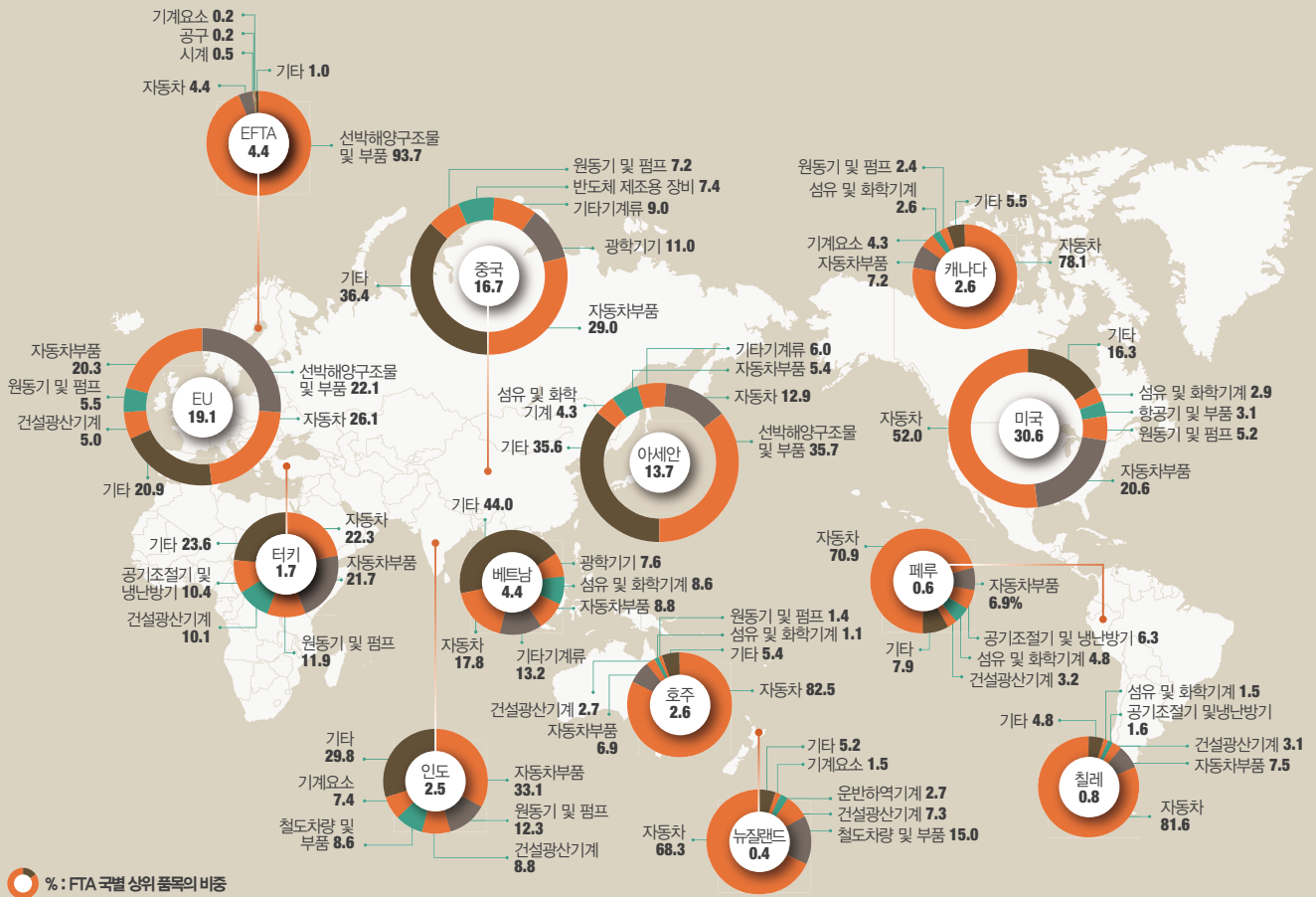
지도로 보는 2016 상반기 일반수출입실적(1~6월)

※ 품목별 세분화(MTI 3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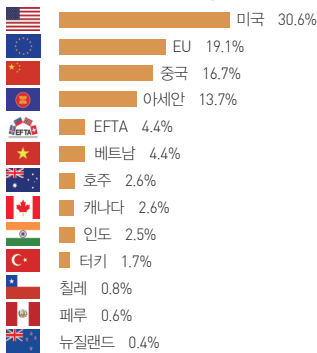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분류는 HS 품목분류 체계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품목분류 체계로 이번호에서는 FTA국가에서의 산업변화(MTI 1단위)와 상위 품목(MTI 3단위)의 단위품목에 대하여 FTA 협정별 품목의 일반 수출입비중을 알아보았다.

※ MTI 1단위(수출 상위순) :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광산물, 석유류,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수출 기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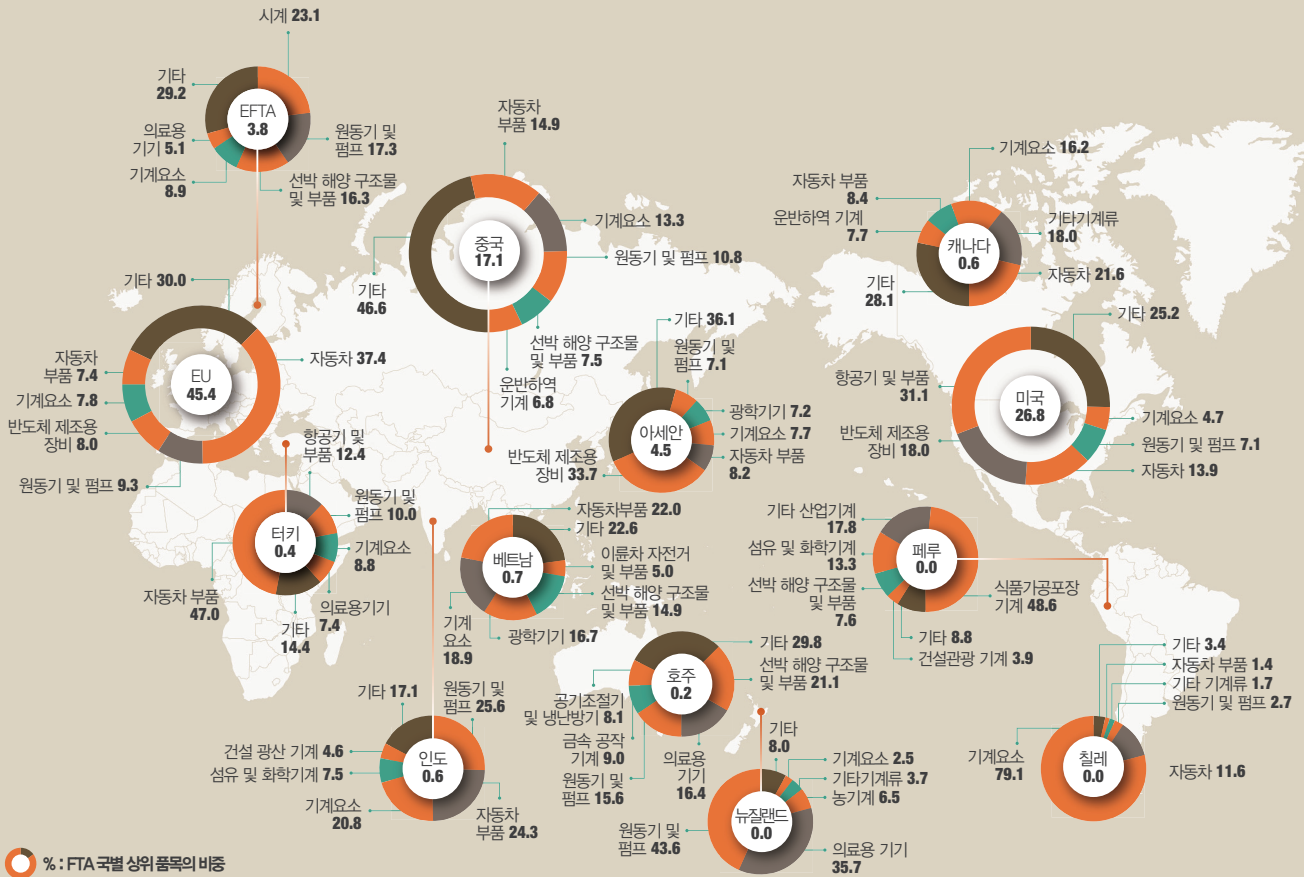
협정별 기계류 일반수출비중 (총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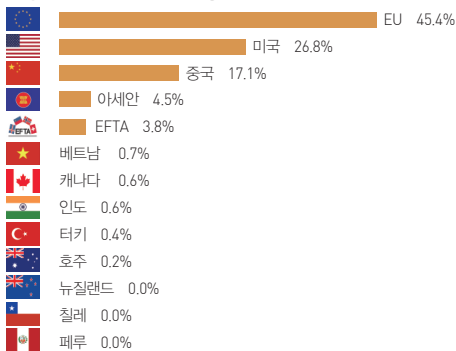
기계류 일반수출 상위 품목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자율차	29.6
2	자율차부품	17.8
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4.3
4	원동기 및 펌프	5.1
5	기타기계류	3.6
6	기계요소	3.6
7	광학기기	3.1
8	건설광산기계	3.0
9	섬유 및 화학기계	2.7
10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3

수입 기계류



협정별 기계류 일반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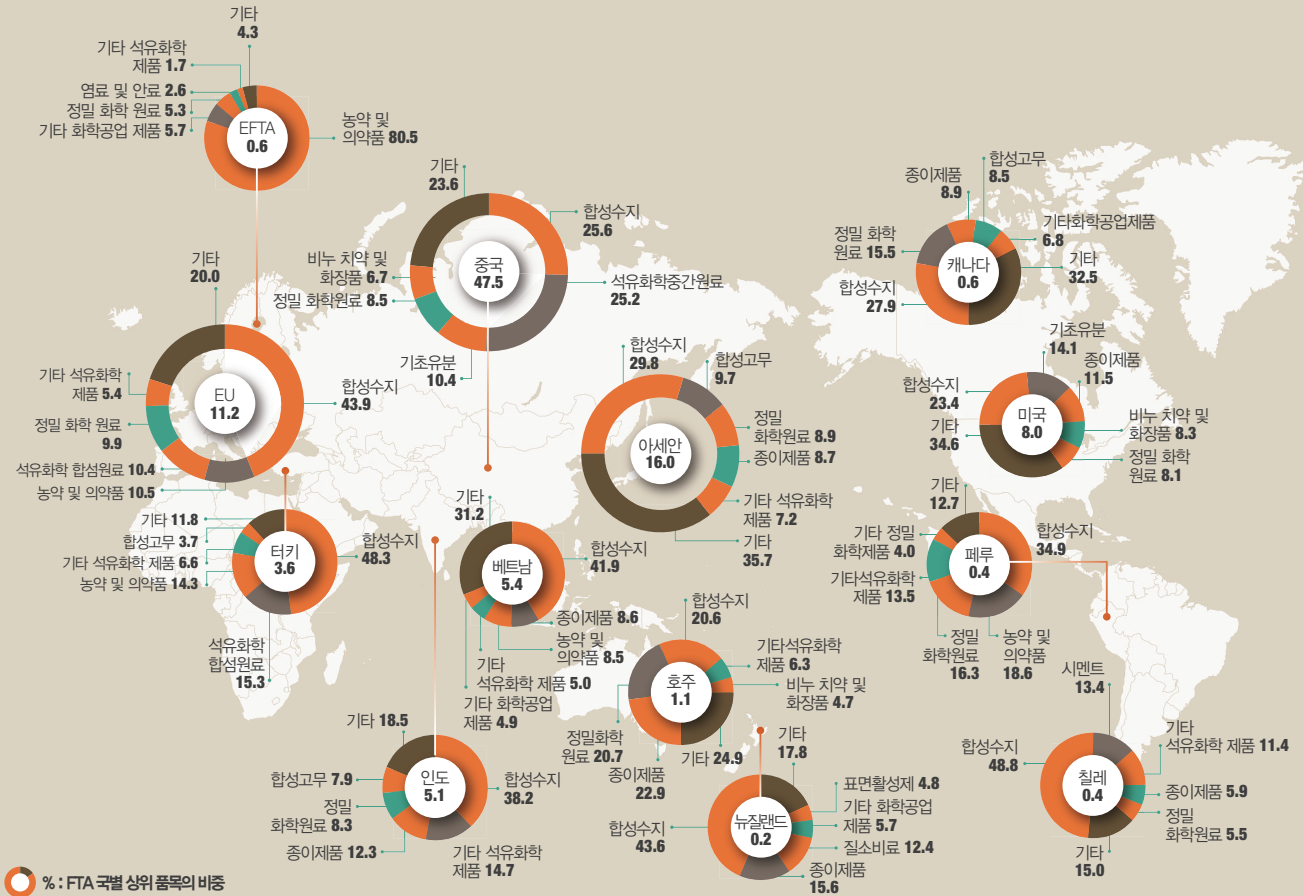


기계류 일반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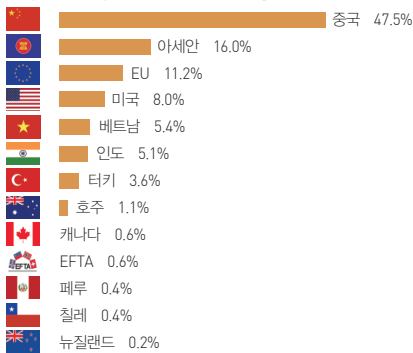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21.0
2	반도체제조용장비	10.2
3	항공기 및 부품	9.6
4	원동기 및 펌프	9.2
5	기계요소	8.1
6	자동차부품	7.7
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4.7
8	기타기계류	3.4
9	광학기기	3.4
10	의료용기기	2.6

수출 화학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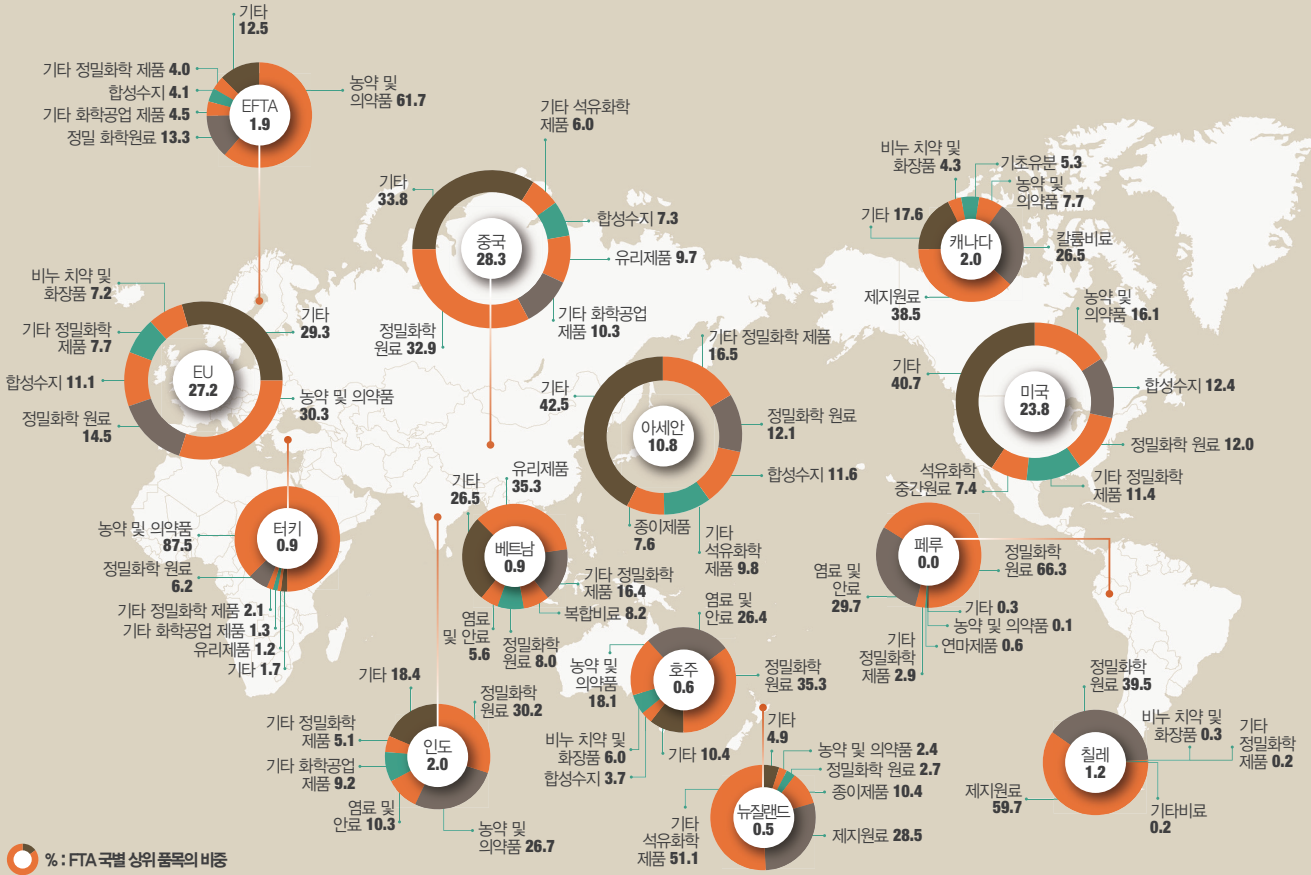
합정별 화학공업제품 일반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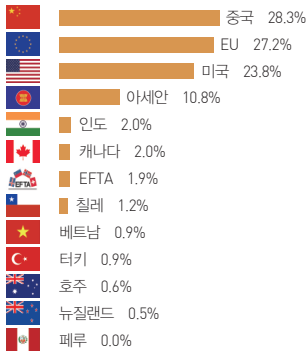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일반수출 상위 품목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합성수지	30.5
2	석유화학중간원료	12.3
3	정밀화학원료	8.4
4	기초유분	6.5
5	기타석유화학제품	5.5
6	비누치약 및 화장품	5.1
7	종이제품	4.6
8	농약 및 의약품	4.6
9	합성고무	4.0
10	석유화학합성원료	3.3

수입 화학공업제품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일반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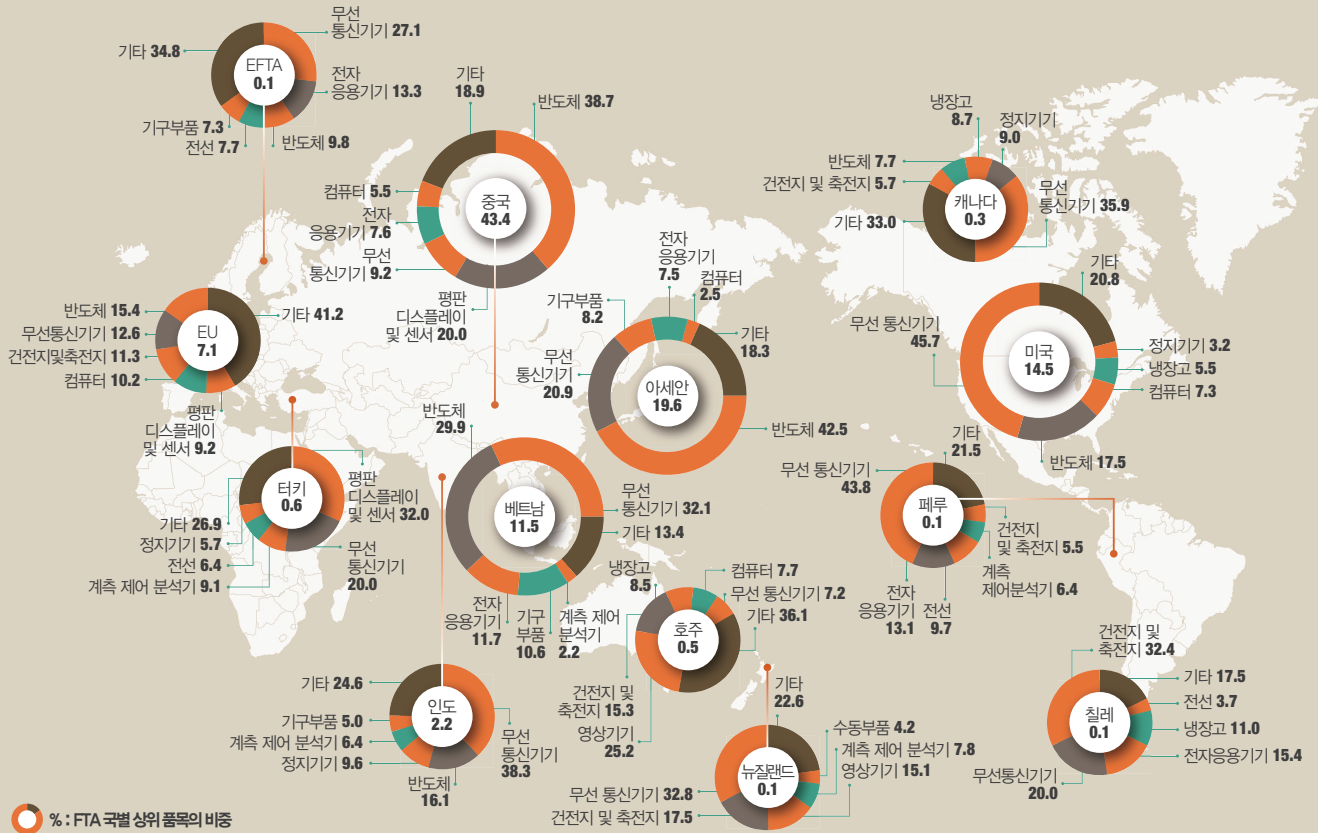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일반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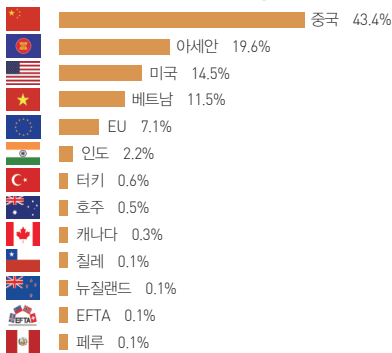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정밀화학원료	19.2
2	농약 및 의약품	16.9
3	합성수지	9.5
4	기타정밀화학제품	7.6
5	기타화학공업제품	6.5
6	기타석유화학제품	5.8
7	유리제품	4.9
8	종이제품	4.2
9	비누치약 및 화장품	4.2
10	제지원료	3.8

수출 전자전기제품



협정별 전자전기제품 일반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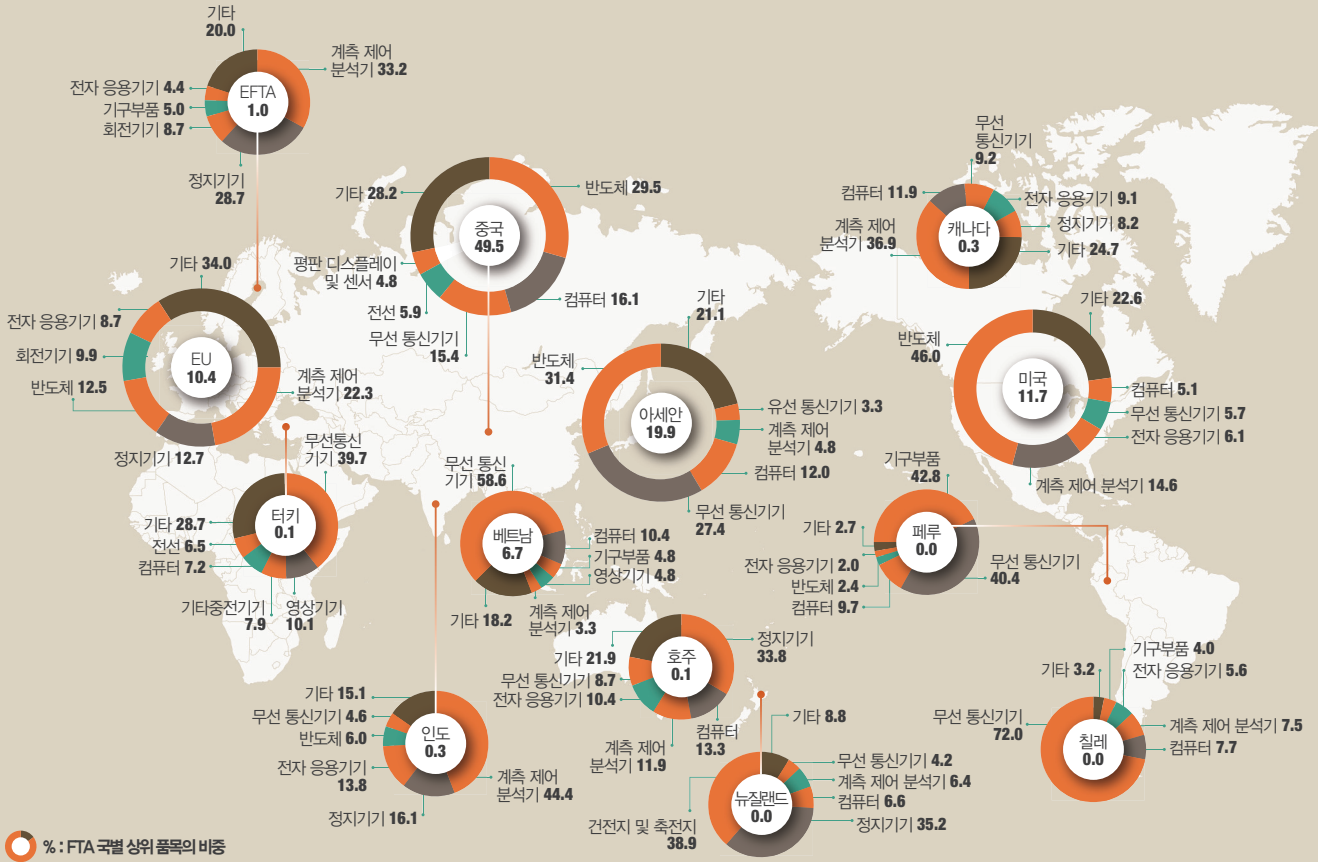


전자전기제품 일반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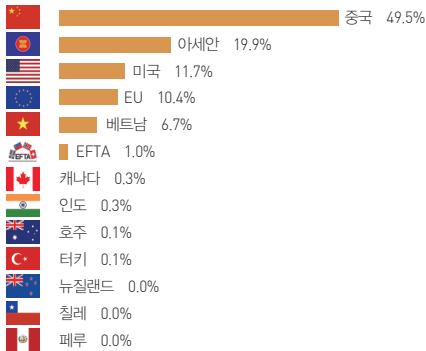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반도체	32.6
2	무선통신기기	20.5
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2
4	전자응용기기	7.0
5	기구부품	5.2
6	컴퓨터	4.9
7	건전지및축전지	2.8
8	계측제어분석기	2.7
9	정지기기	2.3
10	기타중전기	1.8

수입 전자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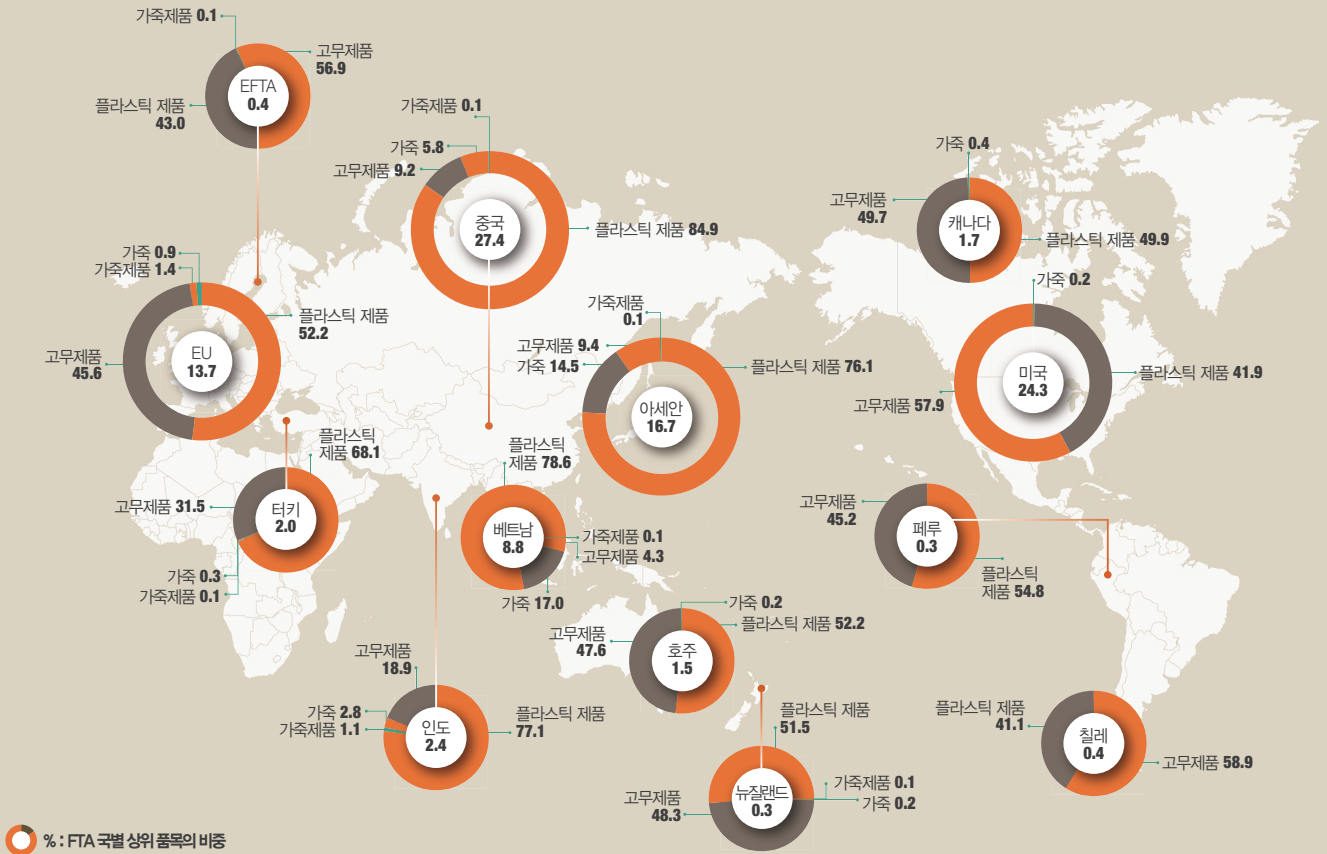
협정별 전자전기제품 일반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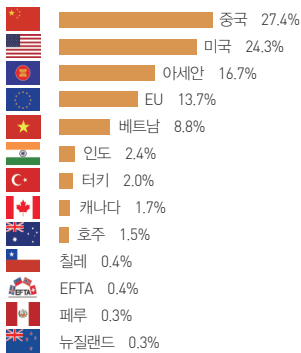
전자전기제품 일반수입 상위 품목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반도체	27.8
2	무선통신기기	18.5
3	컴퓨터	12.5
4	계측제어분석기	6.9
5	정지기기	4.5
6	전선	3.8
7	기구부품	3.7
8	회전기기	3.0
9	전자응용기기	2.8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6

수출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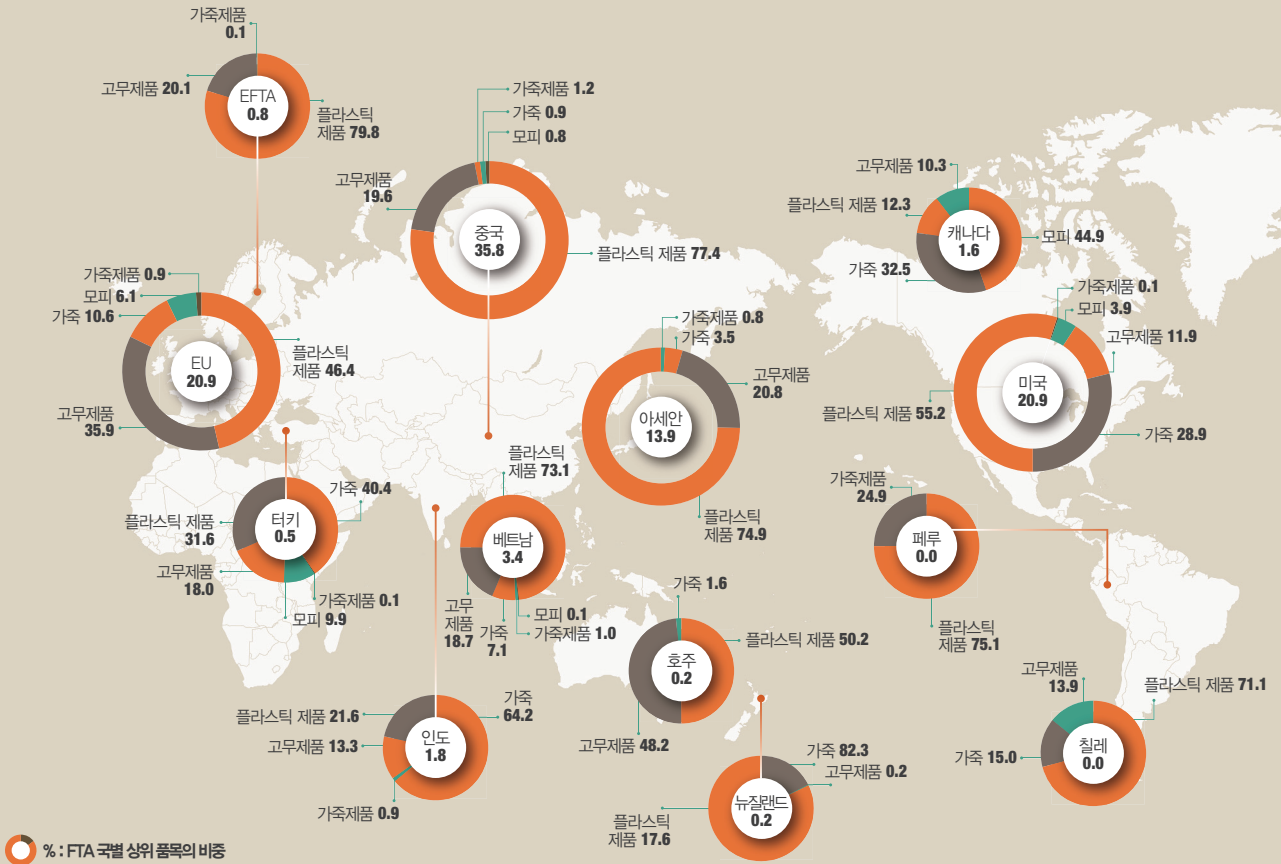
협정별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일반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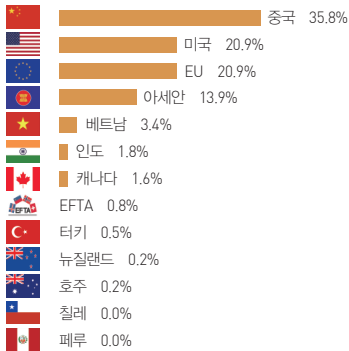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일반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65.8
2	고무제품	28.2
3	가죽	5.8
4	가죽제품	0.3
5	모피	0.0

수입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협정별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일반수입비중 (총계 : 100%)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일반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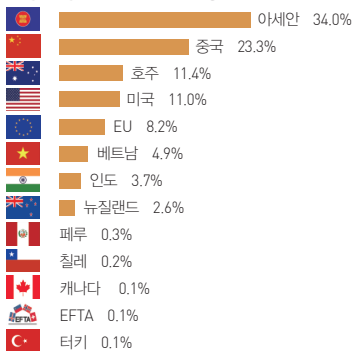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63.4
2	고무제품	21.3
3	가죽	11.4
4	모피	3.2
5	가죽제품	0.8

수출 광산물



협정별 광산물 일반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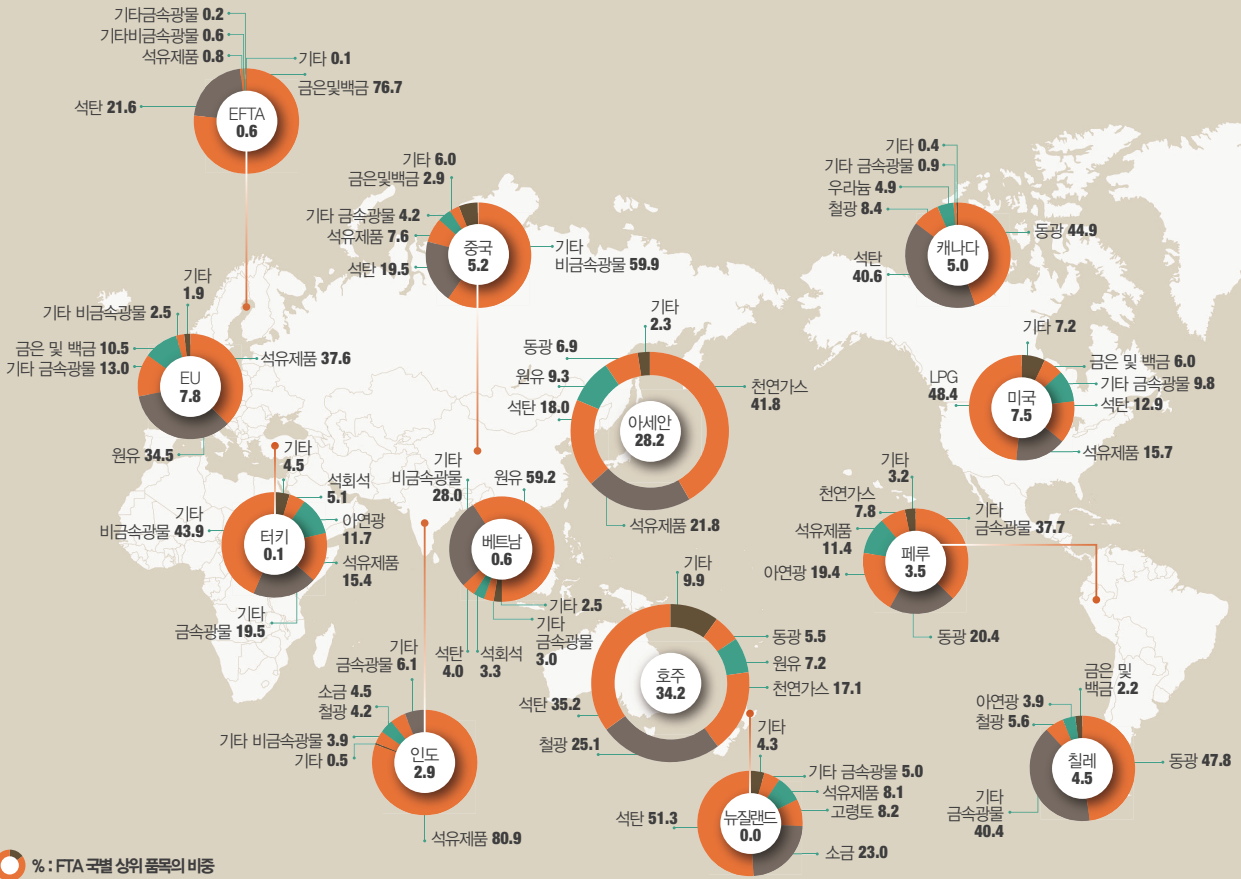


광산물 일반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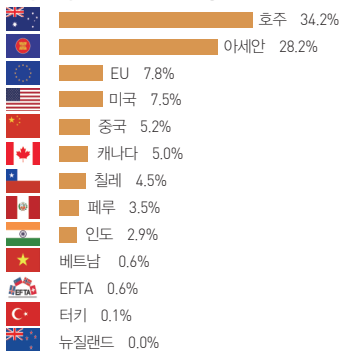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석유제품	93.0
2	금은 및 백금	4.8
3	기타비금속광물	0.8
4	LPG	0.6
5	기타금속광물	0.6
6	동광	0.2
7	소금	0.0
8	고령토	0.0
9	아연광	0.0
10	기타광산물	0.0

수입 광산물



협정별 광산물 일반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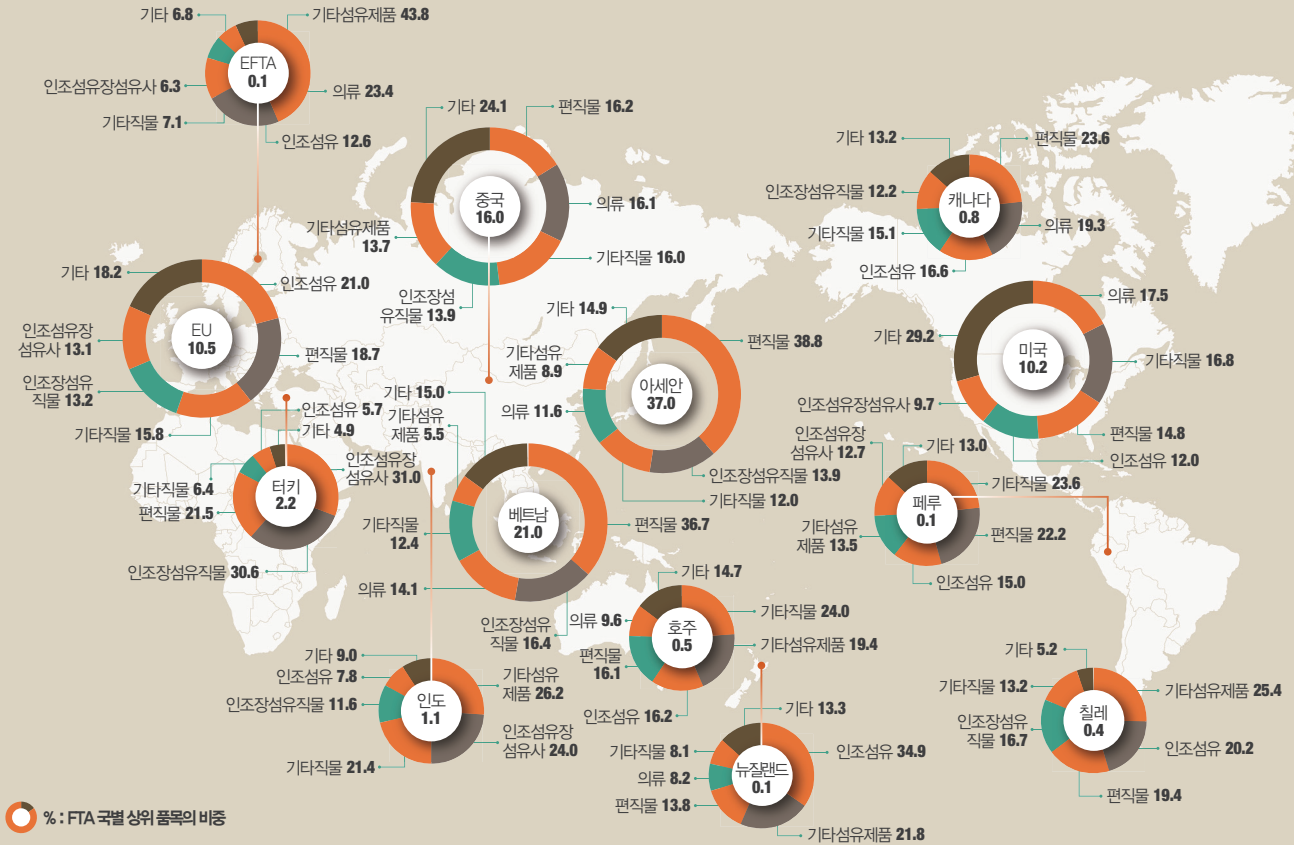


광산물 일반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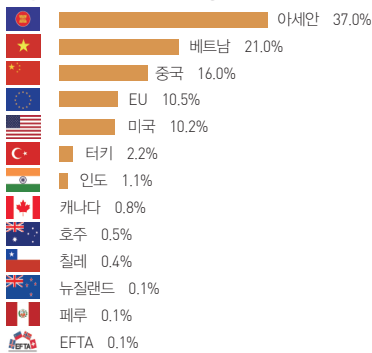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석탄	21.3
2	천연가스	17.9
3	석유제품	13.4
4	철광	9.4
5	동광	8.9
6	원유	8.2
7	기타금속광물	6.6
8	기타비금속광물	4.3
9	LPG	4.0
10	금은 및 백금	2.7

수출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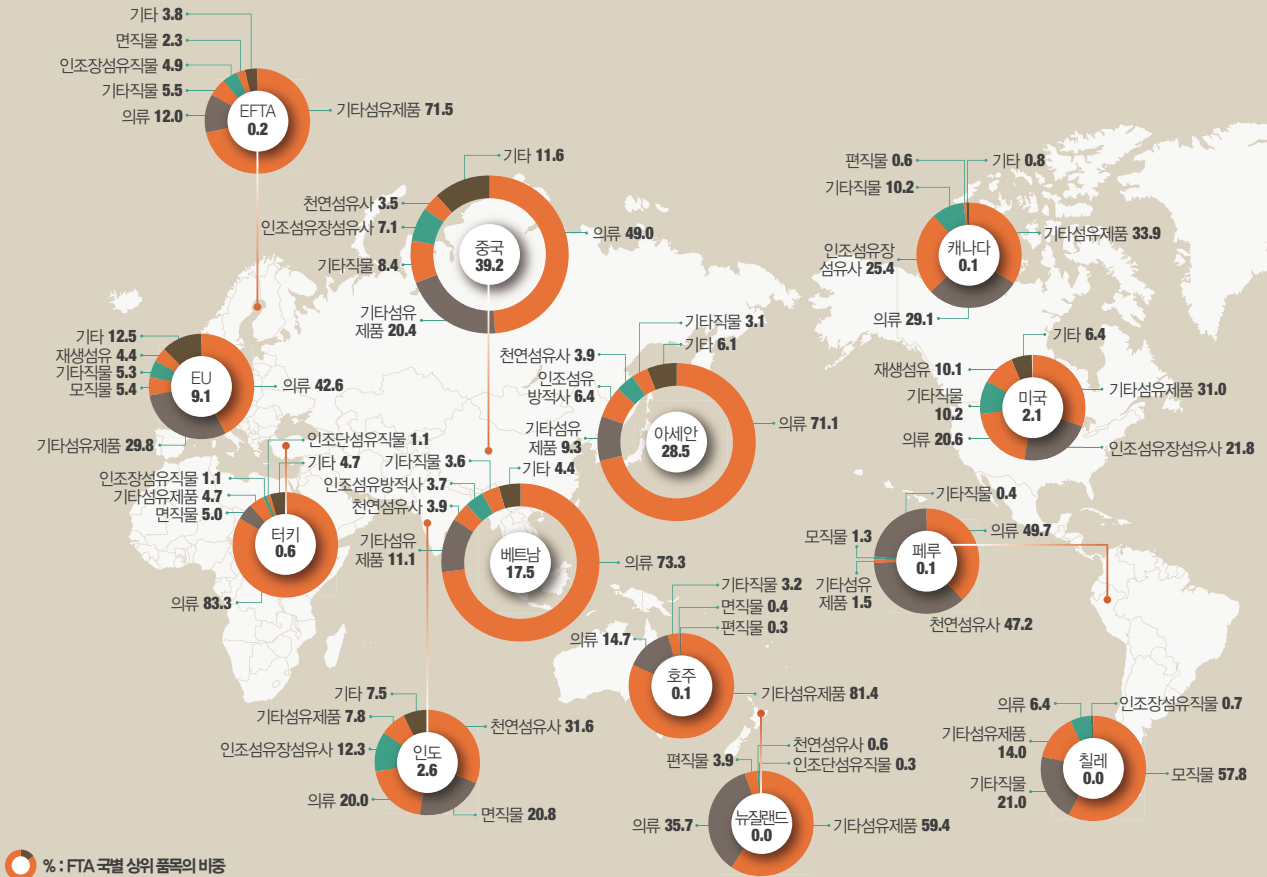
협정별 섬유류 일반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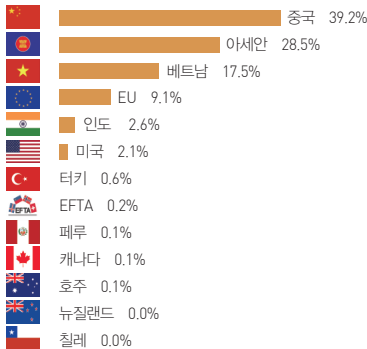
섬유류 일반수출 상위 품목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편직물	29.1
2	인조장섬유직물	13.8
3	기타직물	13.7
4	의류	12.8
5	기타섬유제품	8.9
6	인조섬유	6.3
7	인조섬유장섬유사	6.3
8	면직물	2.9
9	인조단섬유직물	2.8
10	천연섬유사	1.2

수입 섬유류



협정별 섬유류 일반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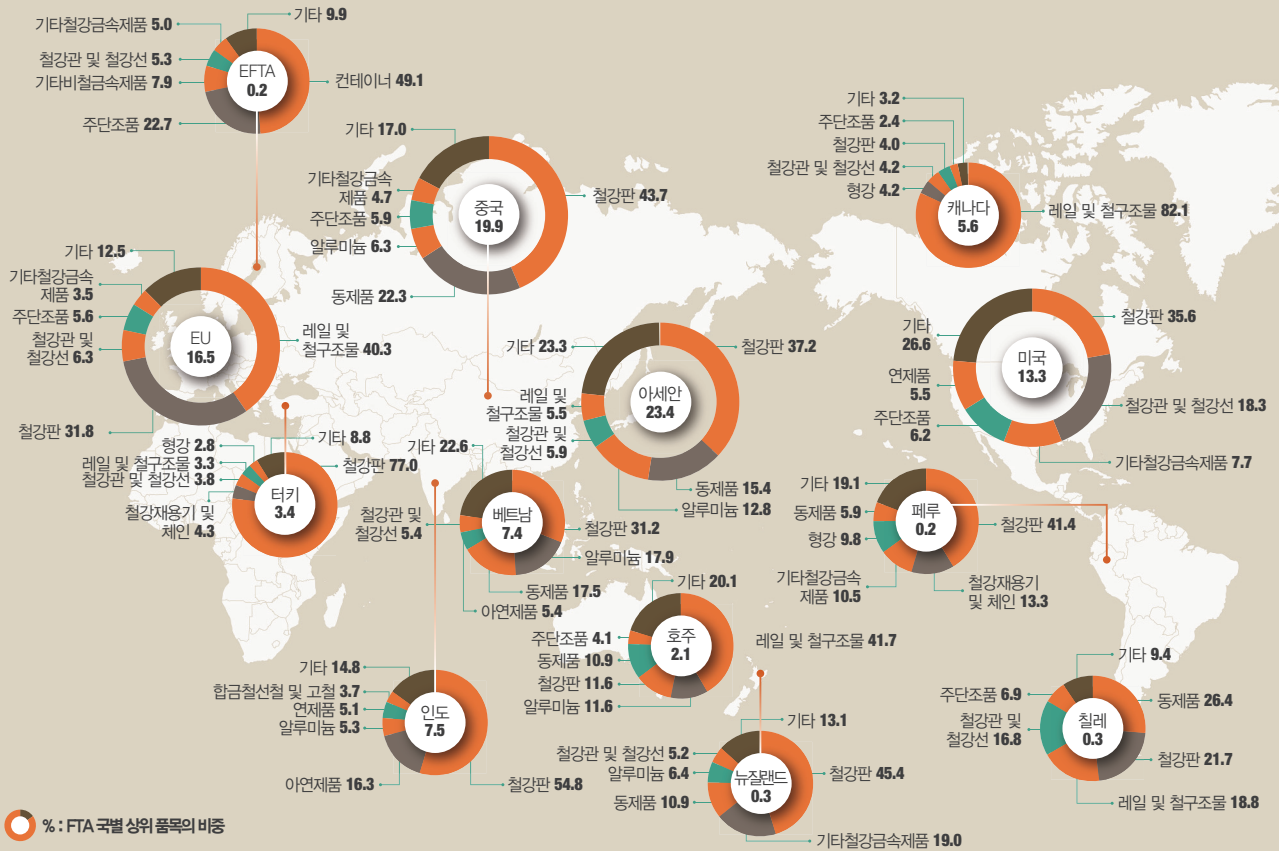


섬유류 일반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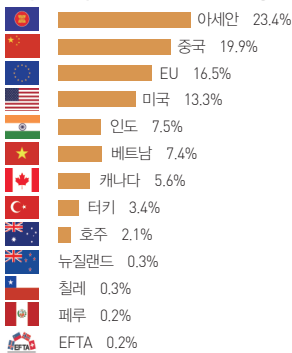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의류	57.7
2	기타섬유제품	16.4
3	기타직물	5.6
4	인조섬유장섬유사	5.2
5	천연섬유사	4.3
6	인조섬유방직사	3.5
7	면직물	2.2
8	인조단섬유직물	1.4
9	인조장섬유직물	1.1
10	재생섬유	0.7

수출 철강금속제품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일반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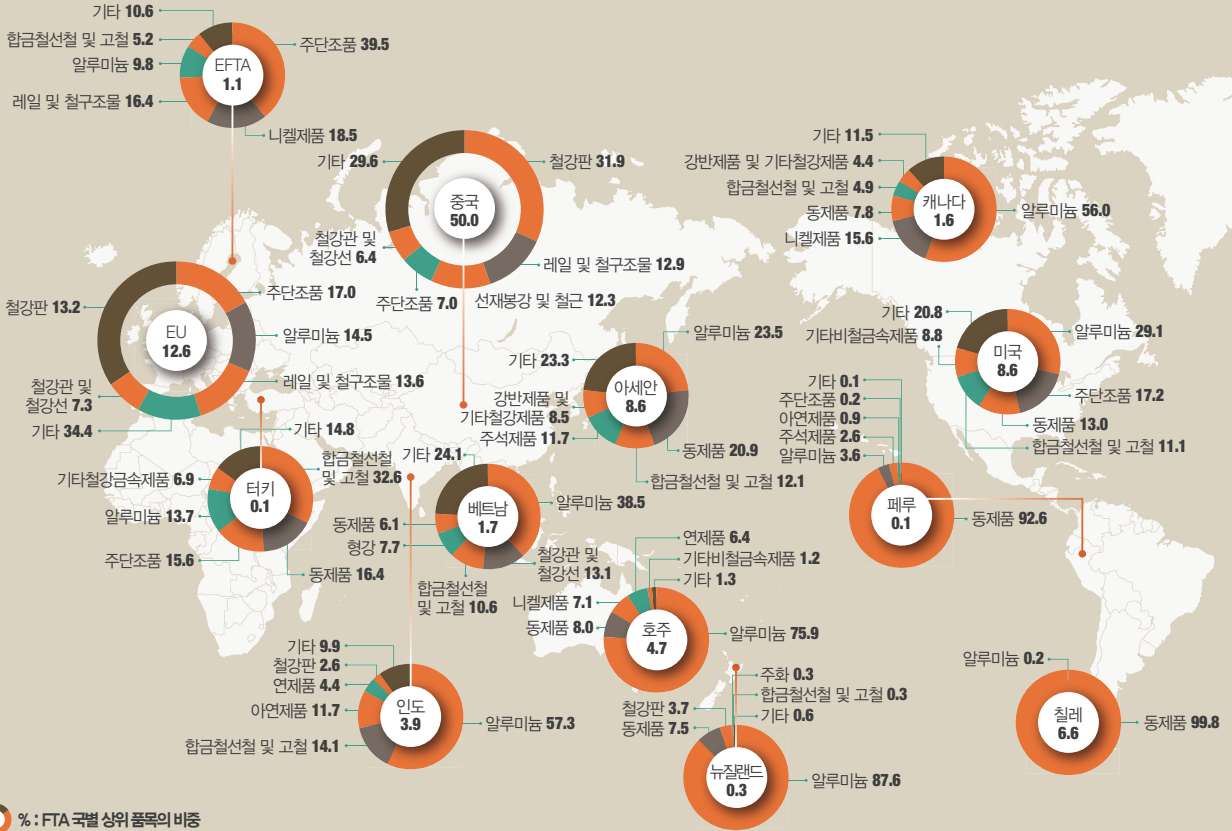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일반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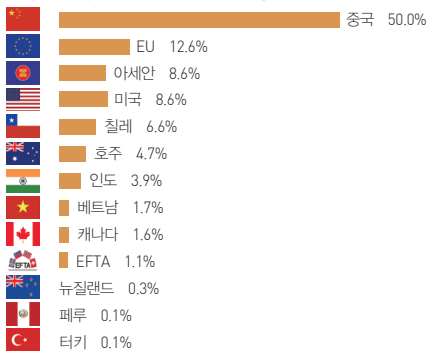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철강판	37.1
2	레일및철구조물	14.9
3	동제품	10.8
4	알루미늄	7.5
5	철강관및철강선	6.8
6	주단조품	4.9
7	기타철강금속제품	3.8
8	아연제품	3.0
9	선재봉강 및 철근	2.3
10	연제품	2.3

수입 철강금속제품



협정부별 철강금속제품 일반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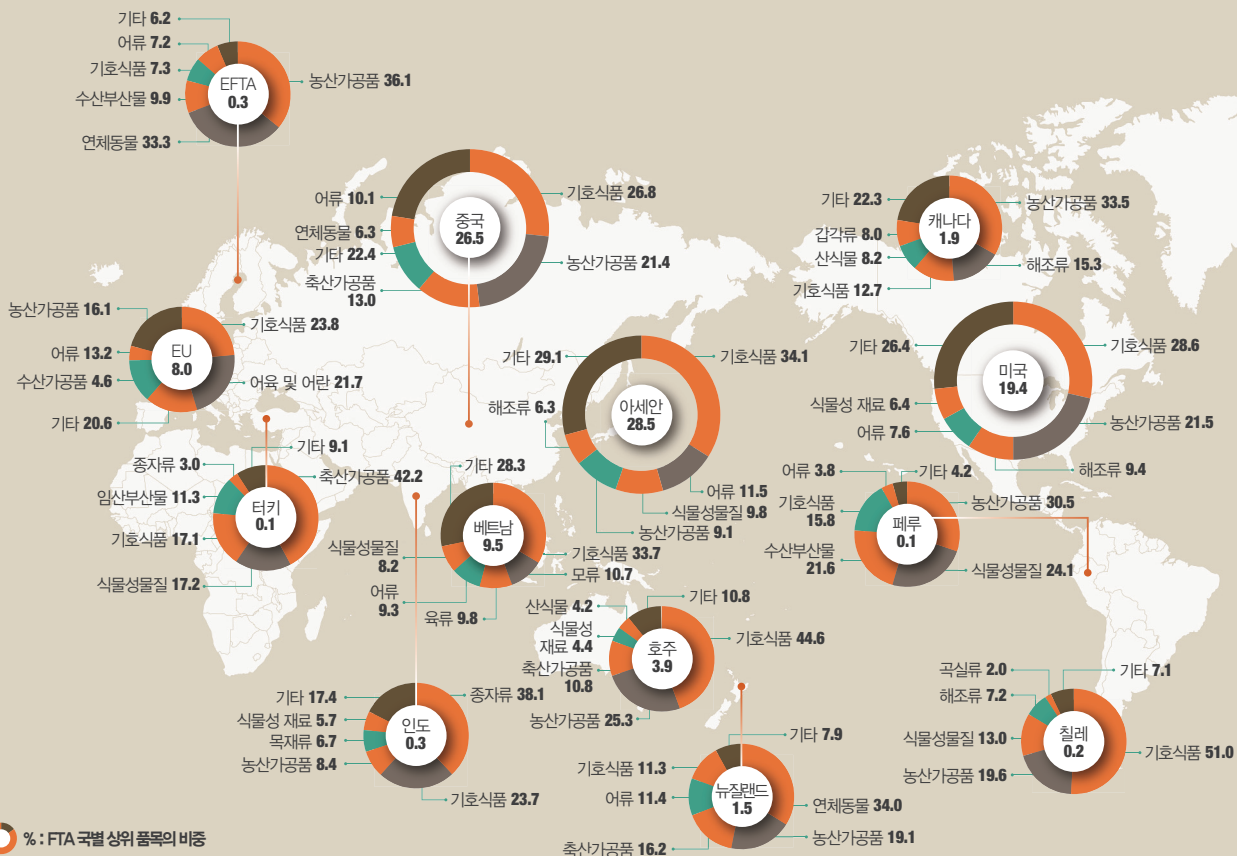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일반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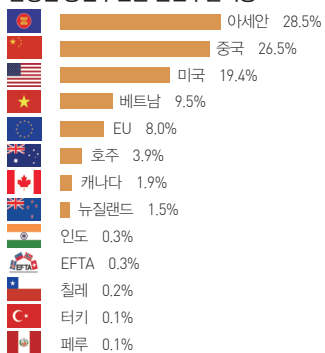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철강판	18.2
2	알루미늄	17.0
3	동제품	12.7
4	레일및철구조물	8.5
5	주단조품	8.1
6	선재봉강및철근	6.8
7	철강관및철강선	4.9
8	합금철선철및고철	4.4
9	기타철강금속제품	3.1
10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2.5

수출 농림수산물



협정별 농림수산물 일반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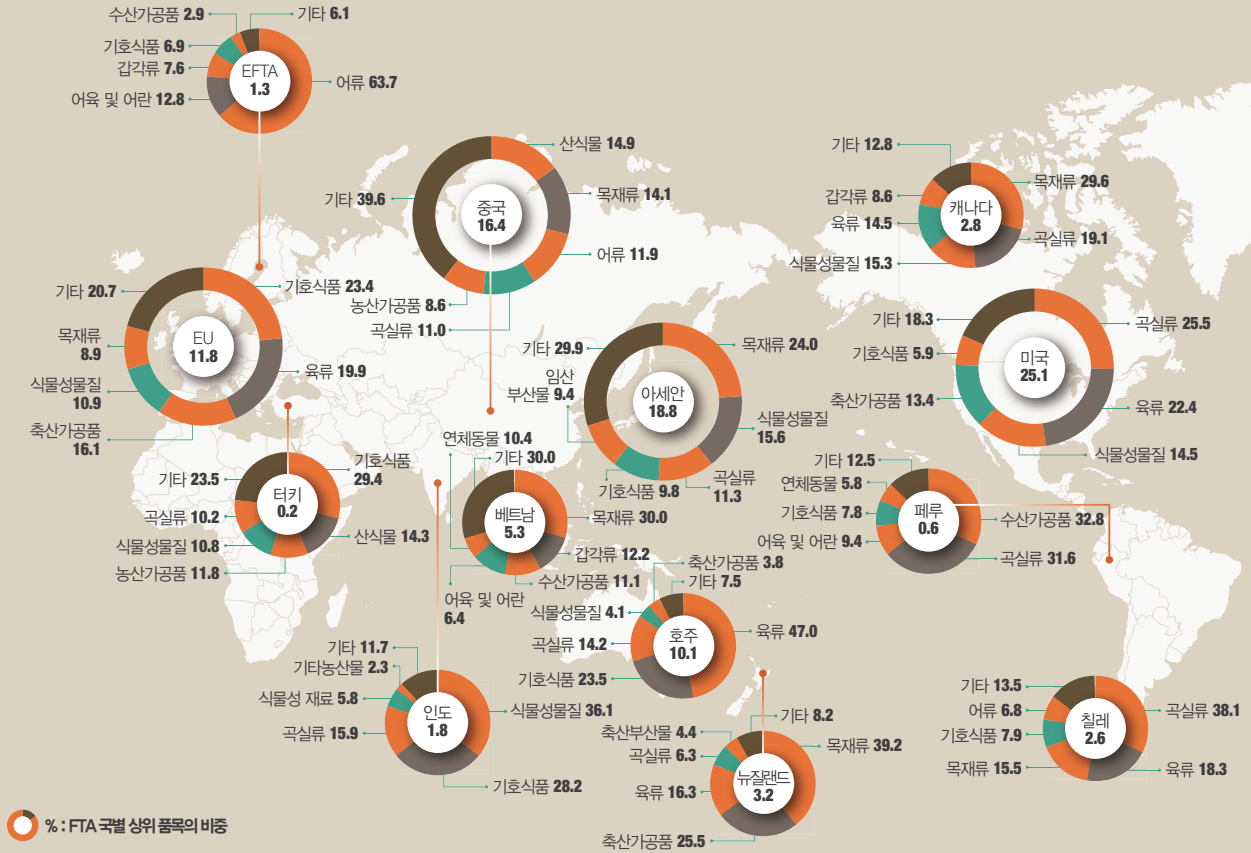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일반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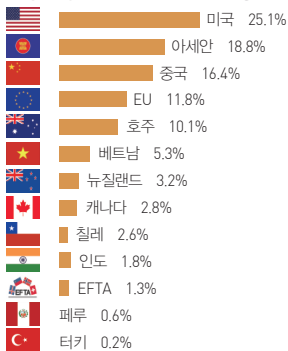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호식품	29.8
2	농산가공품	16.3
3	어류	9.6
4	축산가공품	7.3
5	해조류	6.2
6	식물성물질	4.7
7	연체동물	4.2
8	식물성 재료	3.5
9	수산물	3.4
10	어육및어란	2.9

수입 농림수산물



협정별 농림수산물 일반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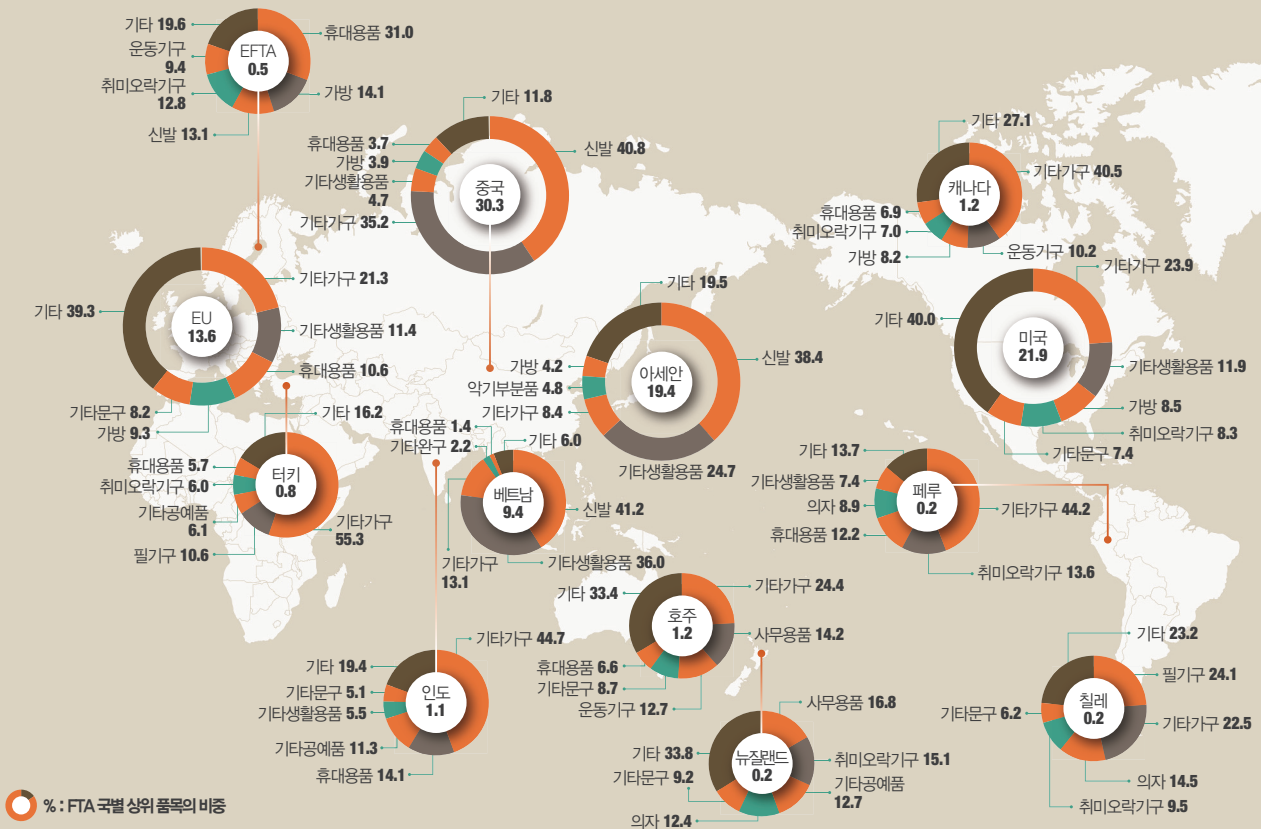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일반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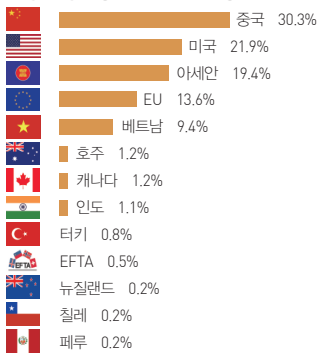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곡식류	14.7
2	육류	14.4
3	목재류	12.5
4	식물성물질	11.0
5	기호식품	10.9
6	축산가공품	7.0
7	농산가공품	4.8
8	산식물	4.7
9	어류	3.7
10	수산가공품	2.9

수출 생활용품



협정별 생활용품 일반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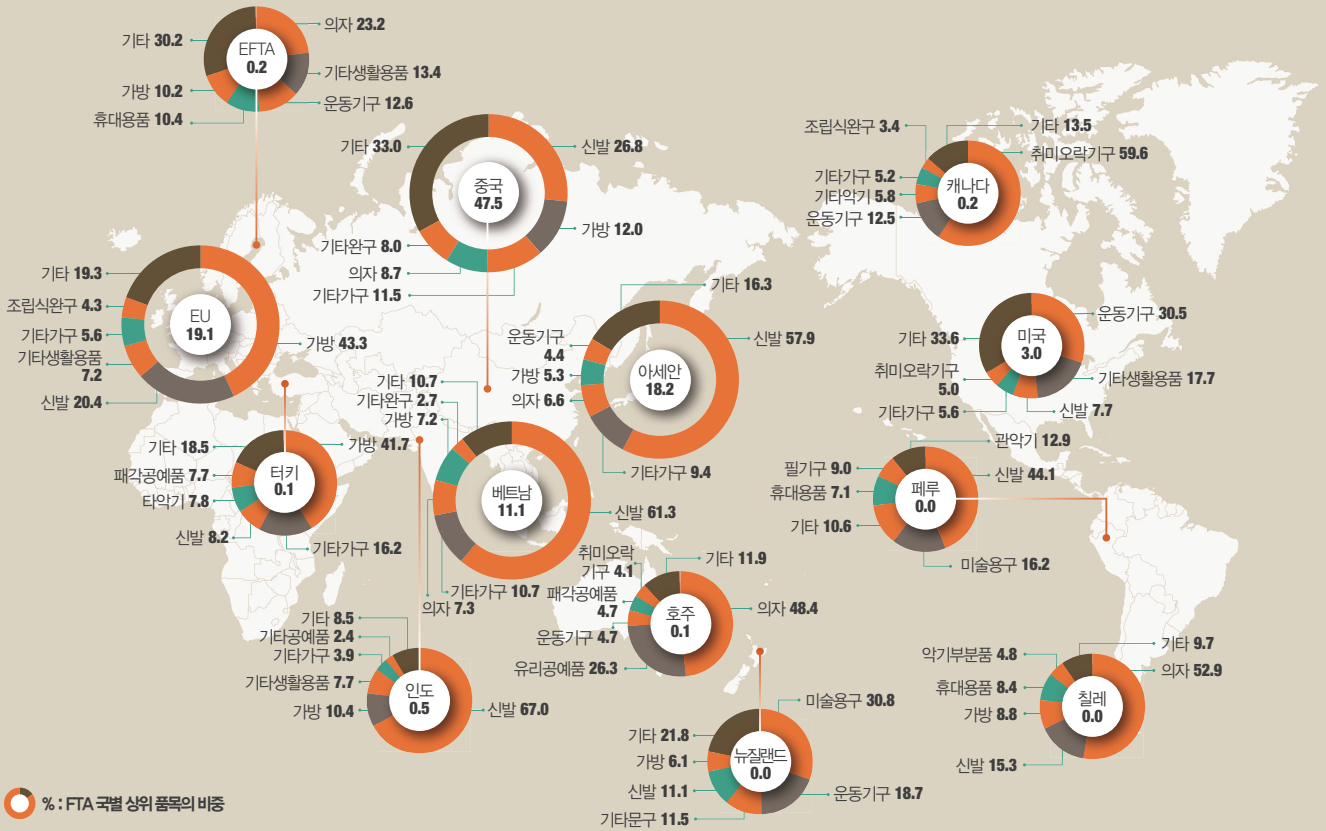


생활용품 일반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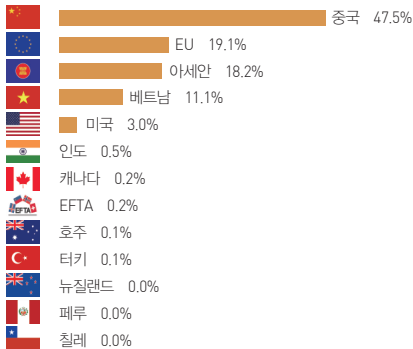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신발	25.5
2	기타가구	23.5
3	기타생활용품	13.9
4	가방	5.4
5	휴대용품	5.3
6	취미오락기구	4.2
7	기타문구	3.9
8	운동기구	3.0
9	필기구	2.9
10	약기부분품	2.0

수입 생활용품



협정별 생활용품 일반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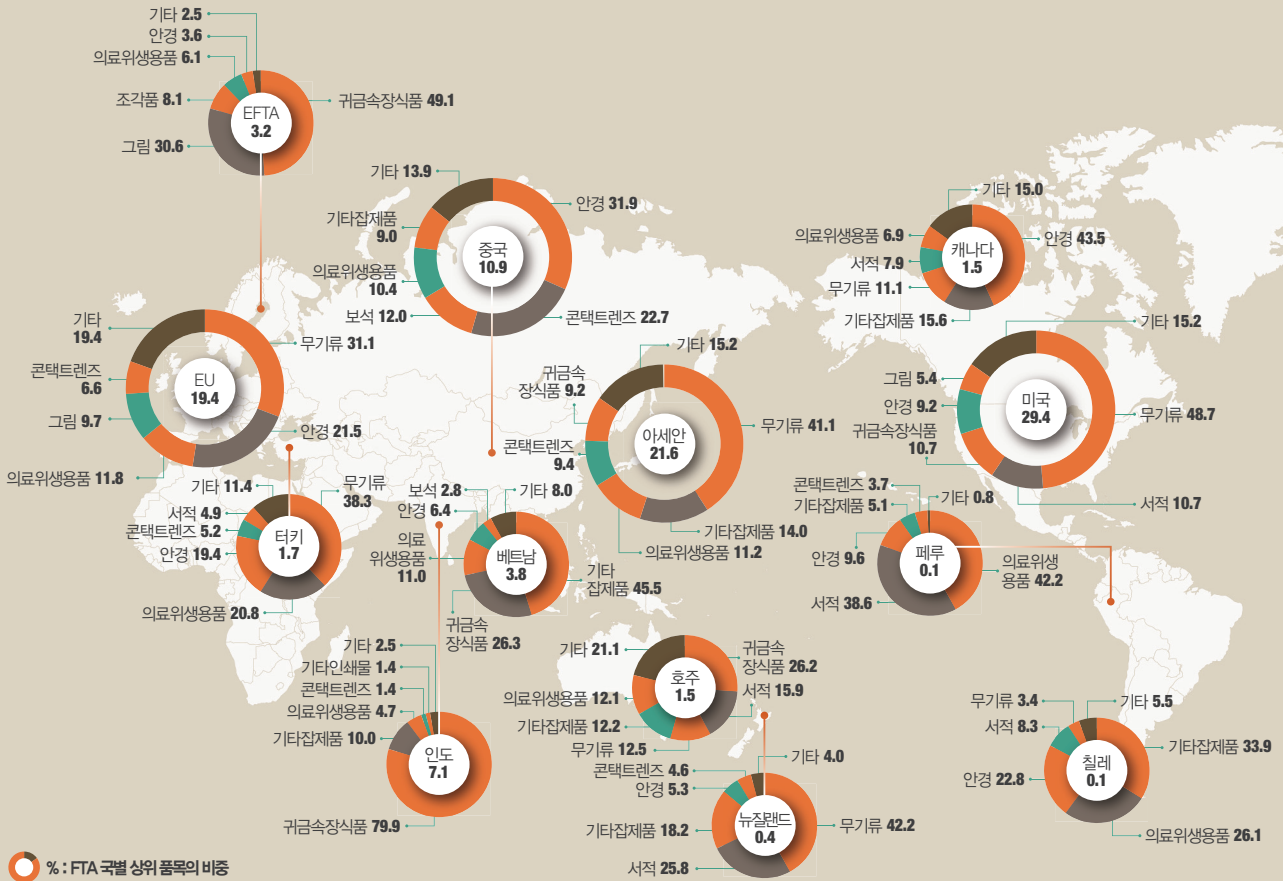


생활용품 일반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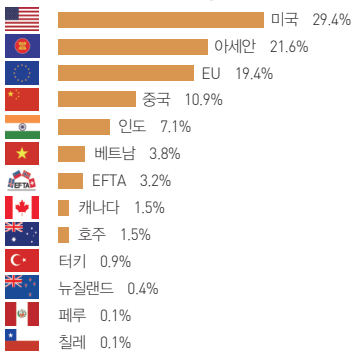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신발	34.6
2	가방	16.0
3	기타가구	9.7
4	의자	7.0
5	운동기구	5.5
6	기타완구	4.7
7	기타생활용품	4.5
8	조립식완구	2.0
9	휴대용품	1.8
10	침대	1.7

수출 잡제품



협정별 잡제품 일반수출비중 (총계 : 100%)



잡제품 일반수출 상위 품목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무기류	30.2
2	귀금속장식품	15.3
3	안경	13.6
4	기타잡제품	9.1
5	의료위생용품	8.6
6	콘택트렌즈	6.2
7	그림	4.7
8	서적	4.6
9	가발및가늌셋	2.2
10	보석	1.9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FTA 무역 리포트

Vol.03 September 2016

〈비매품〉

발 행 일 2016년 9월

발 행 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82 / FAX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6000-701~3 / FAX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디자인 · 인쇄 아미고디자인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무역리포트에 관한 독자엽서를
fta-report@origin.or.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시는 분 이름, 주소, 연락처,
엽서의 질문답변 포함)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E-mail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독자의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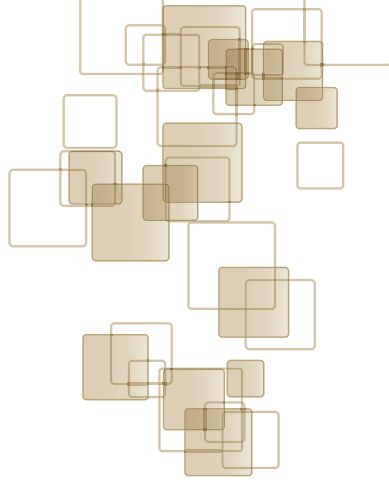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12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yes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